[UCI]I804:24011-200000234378

2007年 8月

博士學位論文

犯罪被害者에 대한 警察의 保護方案 硏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林 丙 洛

犯罪被害者에 대한 警察의 保護方案 硏究

- A Study on the Police Assistance for the Criminal Victims -

2007 年 8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林 丙 洛

犯罪被害者에 대한 警察의 保護方案 硏究

指導敎授　文　正　珉

이 論文을 法學博士學位 申請論文으로 提出함.

2007 年　4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林　丙　洛

林丙洛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大學校　敎　授

委　員　大學校　敎　授

委　員　大學校　敎　授

委　員　大學校　敎　授

委　員　大學校　敎　授

2007 年 6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目　　次

ABSTRACT

第*1*章 序　　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第*2*章 犯罪被害者保護에 대한 槪觀 ····· 5

第*1*節 被害者保護의 理論的 背景과 立法動向 ····· 5

Ⅰ. 理論的 背景 ····· 5

1. 被害者學 ····· 5

2. 被害者保護와 回復的 司法 ····· 7

3. 刑事司法機關에 의한 二次被害 ····· 10

Ⅱ. 立法動向 ····· 12

1. 被害者 關聯 基本法 ····· 13

2. 被害者 關聯 特別法 ····· 31

3. 被害者 關聯 警察法規 ····· 39

第*2*節 搜査節次上 被害者保護 ····· 54

Ⅰ. 槪念定義 ····· 54

1. 被　害 ····· 54

2. 被害者 ····· 56

3. 被害者搜査 ····· 59

Ⅱ. 搜査節次上 地位 ····· 67
1. 搜査開始 段階 ····· 67
2. 搜査進行 段階 ····· 68
3. 搜査終決 段階 ····· 68
Ⅲ. 被害者保護 實態 ····· 70
1. 犯罪被害者保護對策에 대한 弘報成果 評價 ····· 70
2. 被害者對策에 대한 平素 認識 ····· 73
3. 被害者對策에 대한 實態와 方向 認識 ····· 74

第*3*節 各國 警察의 犯罪被害者保護 動向 ····· 76

Ⅰ. 英 國 ····· 76
Ⅱ. 美 國 ····· 77
Ⅲ. 獨 逸 ····· 79
Ⅳ. 日 本 ····· 83

第*3*章 警察의 被害者保護에 대한 問題點 ····· 88

第*1*節 認識上의 問題 ····· 88
Ⅰ. 被害者에 대한 一般的 認識 ····· 89
1. 被害者의 人權에 대한 認識未洽 ····· 89
2. 被害者에 대한 否定的 視覺 ····· 90
Ⅱ. 搜査節次上 警察의 認識 ····· 91
1. 犯人檢擧를 優先하는 姿勢 ····· 91
2. 被害者의 犯罪誘發 ····· 92
3. 國民의 犯罪被害申告 忌避 ····· 94

第2節 方法論上의 問題 ····· 96
Ⅰ. 捜査節次上의 一般的 問題 ····· 97
1. 情報提供 ····· 97
2. 現場 危機對策 未洽 ····· 99
3. 被害者의 身邊 ····· 101
4. 押收 · 捜索의 濫用 ····· 103
Ⅱ. 初動捜査過程의 問題 ····· 103
Ⅲ. 證據蒐集過程의 問題 ····· 106
1. 第二次 被害者化 ····· 106
2. 陳述의 判斷 ····· 108

第3節 環境上의 問題 ····· 111
Ⅰ. 被害者保護 環境造成 未洽 ····· 111
Ⅱ. 被害者 人權保護機構의 未洽 ····· 111
Ⅲ. 警察과 關係機關의 協力不足 ····· 112
Ⅳ. 被害者對面技法의 未洽 ····· 115

第4章 警察의 被害者保護에 대한 改善方案 ····· 117
第1節 被害者의 認識에 대한 改善 ····· 120
Ⅰ. 先入見·固定觀念의 排除 ····· 121
Ⅱ. 被害者 人權保障을 위한 敎育 强化 ····· 122

第2節 捜査方法의 改善 ····· 124
Ⅰ. 一般的인 捜査方法 改善 ····· 125
1. 犯罪被害者를 相對로 한 實態調査의 必要性 ····· 125

2. 搜査警察에 대한 敎育訓練强化 ····· 126
3. 搜査節次上 犯罪被害者保護 ····· 127
Ⅱ. 初動搜査 過程의 具體的 改善 ····· 132
Ⅲ. 證據蒐集過程의 改善 ····· 135
1. 被害者 面談技法開發 ····· 135
2. 被害者陳述調書 作成方法改善 ····· 141

第*3*節 搜査環境의 改善方案 ····· 142
Ⅰ. 調査環境改善 ····· 142
Ⅱ. 被害者保護 對策室 設置 ····· 144
Ⅲ. 有關團體와의 協力體制 構築 ····· 145
Ⅳ. 搜査硏修過程에 心理學科目 開設 ····· 156

第*5*章 結 論 ····· 157

參考文獻

表 目 次

〈표 2-1〉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안과정 ····· 36
〈표 2-2〉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실적 ····· 46
〈표 2-3〉 피해 후의 심리적 경과 ····· 48
〈표 2-4〉 사건 후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 49
〈표 2-5〉 범죄피해 후 정신과 의사와 카운슬러의 상담 경험 유무 ····· 50
〈표 2-6〉 지방청·경찰서피해자지원 네트워크 ····· 50
〈표 2-7〉 폭행·상해 피해자 미신고 사유 ····· 52
〈표 2-8〉 설문조사 기준표 ····· 70
〈표 2-9〉 피해자보호관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인식 ····· 71
〈표 2-10〉 피해자보호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 72
〈표 2-11〉 피해자대책에 대한 각종 제도 인식 ····· 72
〈표 3-1〉 경찰의 피해자입장에 대한 이해 ····· 90
〈표 3-2〉 수사경찰의 의식Ⅰ ····· 91
〈표 3-3〉 수사경찰의 의식Ⅱ ····· 93
〈표 3-4〉 발생범죄의 수사단서별 현황 ····· 95
〈표 3-5〉 중요 강력범죄 피해자의 범죄신고 현황 ····· 95
〈표 3-6〉 5대 강력범죄 사건추이 ····· 100
〈표 3-7〉 112접수 도착시간 현황 ····· 104
〈표 3-8〉 허위·오인 신고 현황 ····· 105
〈표 3-9〉 폭력피해여성의 경찰에 대한 서비스평가 ····· 113
〈표 4-1〉 항목별 인권침해 유형 ····· 123

ABSTRACT

A Study on the Police Assistance for the Criminal Victims

Lim, Byoung - rak
Advisor : Prof. Moon, Jeong-min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s the concept of modern criminal procedure was inclined to protection of the criminals such as the accused, or the prisoner, and practical case of criminal procedures was inclined to treatment of the criminals, the victims have been ignored at the criminal procedures so far.

However, though the victims were damaged by crimes, their infringed right has been ignored and rather the human right of the criminals has been emphasized, which can be a huge barrier to ultimat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procedures.

Therefore, to realize justice in criminal procedures and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we need active and substantive care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by the police who directly contact them.

Of course, Korea has many institutional devices for protection of the victims by enacting and revising many special codes such as help system in the victim help act, the indemnity law in exemption law on lawsuit promotion, the exemption law on punishment of specific major crimes, law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 and the exemption law on punishment of family violence crime, but all of them are specific codes needed at individual situations, are confined to specific crimes or regulate requirements of protection and support too strictly and have limitations in human resources or budget to

support them. So as it was suggested that we need a general and basic law that covers protection policy of victims more comprehensively, the victim protection law was enacted.

Thus, institutional systems for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have been steadily expanded, networks of victim right protection was developed within jurisdictions of all the local police agencies and police offices, and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protection of victims' right. In particular, for construction of organized victim support system between private victim support associations, every police office organized victim support committees to support victims in each area such as medical care, counselling and law, and the detective in charge of the case contacts support committees such as victim supporters for support of victims. And the department of victim countermeasure was organized in the human right protection cent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supervise support of victims. It is very encouraging that a composite measure was developed for reinforcement of protection and support including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victim law and the victim protection regulation. However, they are not complete compared to police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A. and Japan.

Therefore, this study is categorized into five chapters as follows: to find out measures for balance of such ideas involved in victim protection, examine victim support measures, discuss problems and improvement of victim protection by the police, and speculate effectiveness of the victim support through examining its duality. Finally, it examines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of each country in the protection law and the possibility of its introduction into Korean system. Th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should be legislated centering on the criminal law or criminal procedures and victim protection law should be revised to incorporate institutions on victim protection, which will contribute to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Korean victim protection system.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당하게 된다면 형사사법의 대명제라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피해자의 권리 신장은 무시당한 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신장에만 얽매여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외 되어 왔던 피해자의 권리문제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은 1957년 7월 7일 영국인 페리(M. Ferri)가 '옵저버'지에 '피해자를 위한 정의'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부터이다.[1] 이를 계기로 학계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피해자보상의 문제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각 국가에서는 이 논의를 토대로 한 피해자보상제도 등을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를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쇠퇴의 시대로부터 부활 시대로 전환'이라고 칭하고 있다.[2]

197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그 논의가 더욱 성숙해 감에 따라, 그 이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측면에 치우쳐 있던 논의의 중심도,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의 개선 그리고 제2차적 또는 제3차적 피해자화[3]의 방지 노력 등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85년 제7회 국제연합 범죄방지회의에서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의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이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 관련분야가 형사사법상 또 하나의 기본원리로서 확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81년 1월 29일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69호로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상 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를 비롯하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2호

---

1) 오재환, "피해자학의 위치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2권, 1991, 28면.

2) 大谷實 "犯罪被害者對策の理念",「ジュリスト」, 1995. 7頁.

3) 범죄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제1차적 피해', 형사사법기관의 배려없는 처우로 인해 더 깊은 피해를 입는 것을 '제2차적 피해', 매스컴을 비롯한 주변환경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피해자가 자기파멸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제3차적 피해'라고 칭하고 있다.

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특별법을 제정·개정하여 피해자 권리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고 범죄피해자와 최일선 접점에 있는 경찰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면 인력·예산·법제의 미흡 및 현재 경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심리적·형사절차적으로 충분히 보호·지원하고 있는가, 피해자서포터 제도는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경찰과 상담기관 등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피해자보호 방안 모색과 더불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각종 특별법, 경찰청 훈령인 범죄피해자보호규칙, 경찰의 피해자 보호 매뉴얼 등의 분석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이원성의 검토를 통해 예산지원 등의 실효성과 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 전반을 살펴본 후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의 효율성이 담보되고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第2節 硏究 範圍와 方法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많은 수사방법이 동원된다. 경찰을 형사사법행정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gate-keepers)'에 비유할 수 있다면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정보를 알려주는 '전달자(messengers)'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4)]

본 논문에서는 많은 수사기법이나 방법 중 오로지 피해자수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뒤 이를 수사관의 의식·태도 문제, 행태적 문제, 피해자수사와 관련된 법령의 문제, 제도의 문제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분석해 보았고 각 관점별로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피해자보호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이 형사절차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형사절차

4) 김재민,「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24면.

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5] 피해자보호에 대한 일반론으로 피해자보호의 절차상의 과정, 경찰의 태도, 회복적 사법 등에 대해 논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작성하였고,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관련된 주요 이론과 입법 동향들과 피해자의 수사절차상 지위, 피해자보호의 현실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규칙(2004. 8. 17 경찰청훈령 제428호)[6]과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을 살펴보고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일반적인 피해자지원정책 및 경찰의 피해자보호체계를 소개한 뒤에 분석해 보았고 특히 우리나라 피해자보호 정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경찰의 피해자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방법상, 환경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문제점들은 크게 피해자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 경찰관의 피해자 수사의 행태, 그리고 피해자 수사와 관련되는 법령과 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경찰의 피해자수사 행태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적 측면과 증거수집 활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피해자수사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연구결과에 나타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논술하였다.

경찰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태의 개선에 있어서는 경찰에 대한 교육을 중시 하였다. 진정으로 피해자 수사의 개선을 한다면 경찰의 행태개선과 같은 미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수사 환경의 개선과 같은 거시적 접근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해자수사를 둘러싸고 있는 방법상・환경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그 동안 살펴보았던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

---

5)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서는 형벌의 근본목적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하여금 각자가 범행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데 그 기본 철학이 있으며,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시킨 피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과 사죄과정 등을 통하여 피해자나 지역공동체가 잃어버렸던 균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구조나 시스템을 적절히 구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6) 검찰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별로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 9.1부터 시행)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다.

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는데 수사경찰관의 인식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과 수사 방법상, 환경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토대로 현재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지원방안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 및 피해자수사방법과 관련된 국내의 단행본・논문・간행물을 수집한 후 분석하여 정리한 후 활용하였다. 그리고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관련 분야 연구문헌들과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보호의 문제점을 파악 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방법에 있어서는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를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第2章 犯罪被害者保護에 대한 槪觀

第1節 被害者保護의 理論的 背景과 立法動向

Ⅰ. 理論的 背景

1. 被害者學

1) 初 期

1940년대에 被害者學(victimology)의 기초를 세운 멘델존(Benjamin Mendelsohn), 폰 헨티히(Von Hentig), 볼프강(Wolfgang) 같은 학자들은 피해자학을 범죄학과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하려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범죄학의 한 분야로 이해되고 있다.[7] 슈프링고름(H.Schüler-Springorum)에 의하면 피해자학적 관점은 특별한 범죄학적 관점으로서 유익하고, 특히 범죄원인론과 관련해서 소질과 환경이라는 구분에 의한다면 피해자학은 환경요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피해자학은 원래 범죄피해자의 행동이 범죄에 미친 영향에 관한 범죄학적 이론으로 지칭된다.[8]

즉 피해자 유형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는 범죄유발에 관한 '피해자의 유책성'[9]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7) 諸澤英道, "犯罪被害者學から一般 被害者學 へ", ジユリスト991號 , 1991.12, pp.113-118頁.

8) 宮澤浩一・장규원 역,「피해자학 입문」, 길안사, 1999, 33면.

9) 피해자의 유책성 개념은 Mendelsohn의 초기 논문에서 피해자의 유형화를 논하면서 주장한 것이다. 이후 피해자학 관계문헌에서 범죄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할 때 피해자의 특징을 분류해 "동의하는 피해자", "침묵하는 피해자", "투쟁하는 피해자" 등 다양한 개념을 사용했고, 오늘날 피해자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유책성 개념을 규명한 대표적인 학자는 멘델존과 샤퍼, 미야자와 고이치 등을 들 수 있다; 안황권・김상돈,「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33면.

*2) 1950*年代

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의 증가와 양상의 심각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전통사회의 붕괴에 따른 가족과 사회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포용과 보호도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국가와 사회가 범죄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범죄자(가해자)-피해자 화해(Täter-Opfer-Ausgleich)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0)]

*3) 1960*年代

1960년대 영미를 중심으로 전개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이다. 즉 1964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같은 해 영국, 196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국가보상제도가 정착되었다[11)].

*4) 1970*年代

1960-70년대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풍미하였는데 이에 따라 형사사법영역에서는 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고 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중시되었다. 이런 상황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범죄자의 인권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보호가 초기에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 피해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학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가 펼쳐졌는데, 예를들어 피해자학적 형법이론(Viktimo-Dogmatik), 원상회복(Schadenswiedergutmachung)[12)]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

10) 민사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가해자・피해자간의 합의중재를 양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1) 김용세,「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91면

12) 1975년 독일 형소법 제153조의 a 제1항 제1호에서는, 검사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조건부 기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소중지 및 가벌성을 조각하는 조건부 기소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중지의 적용률은 낮아서(실제로 매년 1% 이하) 대개의 조건부 기소중지는 제153조의 a 제1항 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위 그리고 피해자구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전통적, 징벌적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움직임이 피해자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또한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시작된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 활동시기이다. 1974년 영국의 Victim Support (피해자보호협회: VS), 1975년 미국의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피해자보호협회: NOVA), 1976년 독일의 Weiβer Ring(백색고리) 등과 같은 민간지원단체가 등장하였다.

*5) 1980*年代 以後

1980년대에는 보수주의의 물결 하에(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강력한 범죄억지정책이 채택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피해자화 방지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범죄자를 중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해자학적 인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 시대 이후,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으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표면화되기 시작한 형사절차에서의 제2차 피해자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13] 이 시기에 유엔의 기본선언(1985), 유럽의회의 권고(1987) 등을 통하여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형사절차상의 지위 향상을 꾀하도록 요구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서 범죄피해자 등의 법적 보호와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의 정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경우는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제정으로 시작하여 국가보상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 被害者保護와 回復的 司法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은 주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와서야 광범위한 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

13) '피해자화'라는 용어는 1969년 미국의 대통령위원회보고서「자유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도전」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그 후 미연방 법무부에 설치된「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한 위원회」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피해자화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반화되었다. 宮澤浩一, "被害者學の現況",「被害者學研究」 創刊號, 日本被害者學會, 1992. 3, pp.26-27頁.

책상으로 광범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구체적인 전략제시차원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낳고 있다. 예컨대 기소유예에 있어서 피해자의 합의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하는 실무와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고려할 것을 규정한 형법규정 등은 이러한 피해자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실무와 제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형사화해를 법정화 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중요한 피해자관점의 고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실무 및 제도의 입장을 완전한 피해자중심의 형사사법체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느 정도 고려했는가 하는 점을 일련의 제재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행 기소유예, 양형 등은 여전히 기존의 제재체계 속에 있다. 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한 결과가 아니라, 강제된 피해자 참여 내지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14] 현재는 현행 사법제도 속에 회복적 사법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그 이론적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도이다.

회복적 사법모델에 대한 소개차원의 논의가 2000년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15] 구체적으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모델 프로그램을 현행 사법체계 내에서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이거나, 현행 형사사법체계 내 제재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다. 소년사법실무

14)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는 1985년 응보적 사법은 법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적 사법은 사람 및 관계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 하워드 제어(Howard Zehr)가 북아메리카에 존재하였던 피해자-가해자-화해 실무를 묘사하고 나아가 그러한 실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C. Hoyle/R. Young, *Restorative Justice, Assessing the prospects and pitfalls*, The Handbook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529 ; 그러나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이 보다 앞선 1977년의 알버트 애블래쉬(Albert Eglash)라고 하기도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보호", 피해자학연구 2000 제8호, 206면.) 하고 1977년 바아넷트(R.E. Barnett)에 의해 미국에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Barnett, R.E., *Restitution: A New Paraigm of Criminal Justice, in; Ethic*, 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Vol.87 No.1, pp.279-301: 박광섭・김용세・도중진,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1면.

15)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보호", 피해자학연구, 2006, 6. 207면

에서도 회복적 사법모델의 실천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다.

형사사법제도 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회복적 사법모델의 운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론적인 검토와 더불어, 비록 이론적인 관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원칙과의 상충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로서의 운용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16] 물론 회복적 사법모델을 아직까지는 형사사법모델이 아닌 여전히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17]

사실 회복적 사법체계를 기존의 응보적 사법이나 징벌적 사법체계에 대체하는 새로운 사법모델로 구성하기까지에는 매우 어려운 난제가 놓여 있다. 최근 형사사법의 체계 내에서의 피해자의 해방을 형사법과 형사절차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발전의 하나로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의 이념에 대신하여 또는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피해자의 권리의 도입은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인 개정노력의 하나로 고려될 뿐이라고 보아 새로운 피해자의 권리라는 적극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방법이 대립하는 것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회복적 사법의 개념 자체도 여전히 불투명한데, 나아가 이를 새로운 체계로 구성한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이념과 기능 그리고 구성을 한층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회복적 사법을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역할을 모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체계 내 활용방안을 생각할 때에도 회복적 사법을 공식 법원시스템과 연결하여 그 역할을 구성할 것을 제안, 즉 회복적 사법을 공식법원시스템과 연결하여 구성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이념을 제재체계 내에서 실현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대안으로서의 사법체계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들은 많은 사건들이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에 의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된다. 예컨대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면서 피해자와의 조정을 의뢰하거나 법원이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그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조정을 명하거나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회복적 사법모델은 완전히 현행체계와 분리 독립하여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18] 이렇게 본다면 회복적 사법은 결국 새로운 범죄통제를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

16) 이러한 입장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은 이호중, “회복적 사법”-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피해자학 연구, 2001, 51면.

17) 이백철, “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법체제로서의 이론적 정당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3호, 2002, 165면.

18) 이호중, “형법상의 원상회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41면.

3. 刑事司法機關에 의한 二次被害

'피해자화'[19]라는 용어는 일정한 원인으로부터 범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범죄화'(criminalization)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범죄 피해도 일정한 원인에 기하여 그로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다.[20]

제2차 피해자화란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피해보다는 그 사건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개인적 대응으로 인해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말한다.[21]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양하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대도시인지 아니면 작은 시골 마을인지에 따라 그 사건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진다. 제2차 피해자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 전후의 사정, 특히 피해를 받은 사실이 직접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과 같이 간접피해자도 사회적 반응에 따라서 생활에 지장을

---

19) 미국의 '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s Commi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가 제출한 '자유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도전'(The Challenge of crime in free society)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73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반화되었다.

20) 피해자화란 범죄나 불법행위, 기타 개인·단체·집단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당한 사건에 의해 피해를 받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제1차 피해자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피해자화 과정을 보다 세분하여 제2차 피해자화 및 제3차 피해자화로 나눌 수도 있다. 즉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자화를 제2차 피해자화로, 가족·친지를 비롯한 주변사람이나 지역사회 등의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 심리적 상처를 입는 과정을 제3차 피해자화로 분류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범죄사건 처리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자화현상을 형사 사법기관 또는 그 종사자로 인한 것과 피해자의 가족 친지 기타 주변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실익도 거의 없고, 또한 전자가 언제나 후자에 선행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차 또는 제3차 피해자화라는 표현은 선후관계에 따른 분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차 피해자화와 제3차 피해자화를 구별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에 부수 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화 전체를 그 요인별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김용세, 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보호의 최신동향", 피해자학연구, 2002. 14면

21) Weisaeth/Lind, "A follow-up study of a tortured Norwegian ship's crew", Lundeberg,J.E., Otto,U. and Rybeck,B. eds., Wartime Medical Services: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Stockholm Swedish Defence Research Institute, 1990), p.397-412., Handbook on Justice for Victims(15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Handbook on Justice for Victims, 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1999, p.2. 참조)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변 사람들의 책망, 호기심 또는 양비론적인 비난 등은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은 상처를 준다. 또한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또는 검찰의 형사사법기관에서의 권위적 태도나 불친절, 수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비난이나 불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요인은 매우 많다. 이처럼 범죄사건을 계기로 또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다시금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과정을 제2차 피해자화라고 한다.[22]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만 주변사람들을 의식하여 고소하지 못하거나, 가족들로부터는 자신이 부주의했던 탓이라고 비난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주인공으로 주목되어 억울한 퇴직을 강요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재차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가족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정신 심리적 상처로 인하여 술에 탐닉하거나 무위도식에 빠질 수도 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인하여 반사회적 행동양식을 나타내거나, 또 다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거나 노이로제에 걸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제2차 피해자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통스런 경험에 동참하기를 꺼린다.[23] 다른 사람이 겪는 끔찍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자신도 같은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 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예상하고 피해자가 당한 고통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불법적인 침해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피해자는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고문 피해자 중에서 자기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보고도 있다. 이처럼 피해에 관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침묵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심리적 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공적 범죄통제기간(경찰·검찰·형사재판)의 대응 여하에 따라, 본래의 범죄 피해에 더해서 심리적으로 더욱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질려버리는 제2차 피해자

---

22) 宮澤浩一, 被害者學の現況, 被害者學研究 創刊号(1992.3), 日本被害者學會, 28頁 참조.

23) 1980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정신장애 진단메뉴얼(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 DSM)」제3판에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추가됨으로써 PTSD는 공식적으로 질병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Handbook on Justice for Victims, 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1999, p.2.

화의 문제는 1970년대 후반 유럽 국가에서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서 주요한 주제였다. 공적 범죄통제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자화를 막는 수단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연계된다.

'제도로 인한 제2차 피해자화(institutionalized secondary victimization)'는 특히 경찰·검찰 또는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야기되기도 한다.[24] 경찰 또는 검찰의 권위적인 태도와 편견, 불친절, 피해자에 대한 불신 등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할 요인은 얼마든지 많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법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범죄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이 제2차 피해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사건에 관한 진술을 반복하면서 더욱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공개법정에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사로부터 반대신문 형식으로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추궁 당하고, 그로 인하여 방청객이라든가 아는 사람 또는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을 맞게 되거나, 증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증언을 한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실수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커다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가해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형사사법 주체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Ⅱ. 立法動向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들은 헌법, 형사소송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특별법에 산재해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특별법에 산재해 있음으로 인하여 법에 정통하지 못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조차도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보완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불리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범죄 피해자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에 통합적인 범죄피해자기

24) 宮澤浩一, 被害者學の現況, 被害者學研究 創刊号(1992.3), 日本被害者學會, 28頁

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피해자권리및원상회복법(Victims' Rights and Restitution Act of 1990)'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25] 여기에서는 피해자 관련 기본법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살펴보고, 피해자관련 특별법, 피해자 관련 경찰법규 등 범죄피해자에 관한 입법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被害者 關聯 基本法

1) 憲法 및 刑事訴訟法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함으로써 진실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가 구조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또한 당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유·무죄와 양형의 판단에 참고하자는 것 등이다.[26]

이와 같이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1987년 개정 형사소송법도 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 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이 새로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의 보호와 절차에의 참여

25)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피해자의 권리로는, 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② 기소된 범죄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 ③ 재판절차를 통지받을 권리, ④ 당해 범죄에 관한 모든 재판에 참석할 권리, ⑤ 당해 사건 담당 검사와 상담할 권리, ⑥ 원상회복을 받을 권리, ⑦ 범죄인의 평결, 양형, 수감 및 석방에 대하여 통지받을 권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314면.

26) 최근에 형사정책분야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하면서, 형사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인격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현행법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 및 고소취소권과 같은 전통적인 방안 이외에 배상명령신청권이나 피해자진술권 그리고 보석사유의 제한, 범죄신고에 따른 보호방한 등이 새롭게 규정되었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의 공개를 제한한다든가 피해자에게 공판정출석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등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606면

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는다.

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범죄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돌하게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개인적 보복 감정에 따라 형사재판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2 제1항의 단서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진술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이 증인신문절차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피해자의 진술이 가지는 소송법적 효과 등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

수사절차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는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규에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뚜렷한 명문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고, 각종 수사지침서에[27]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주변인물을 괴롭히거나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또는 '제2차 피해자화'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28], 개정 형사소송법[29]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30]

(1)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동법 제163조의2)[31]

현행 형소법은 성폭력·성매매 사건의 피해자나 노인·아동 학대 사건의 노인·아동을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신청 등에 의하여 신뢰관계

---

27) 범죄수사규칙 제10조도 "수사를 할 때에는 항상 언동을 삼가고 관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나 혐오감 기타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장규원,"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5, 20면.

29) 이하에서는 법무부,「개정 형사소송법」, 2007. 103면;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152면 이하 참조.

30)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에도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비밀엄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31) 법무부,「전게서」, 75면; 법원행정처,「전게서」, 148면.

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다.[32][33] 그러나 일반 범죄의 피해자도 법원의 증인 신문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불안감이나 긴장을 느껴 2차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법은 현저하게 불안·긴장을 느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진술을 도모하였다(동법 제163조의 2).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자를 필요적으로 동석하도록 하되, 신뢰관계자의 증언 방해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원만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였고, 동석하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범위·동석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다.[34]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 신문*(*동법 제*165*조의*2)*[35]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이 가능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 그 외, 증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증언을 위하여 증인을 신문할 때 피고인을 잠시 법정에서 퇴정시키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97조)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 피해자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36]

---

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아동복지법 제28조.

33) 일본은 증인 신문시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 피고인 등의 의견을 들어 긴장 완화에 적당한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고, 증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도 불문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2). 독일은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문의 목적이 저해되지 않는 한 그가 신뢰하는 1인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06조f 제3항).

34) 수사기관의 범죄 피해자 조사시의 신뢰관계자 동석은 제2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제163조의2 준용).

35) 법무부,「전게서」, 77면 ; 법원행정처,「전게서」, 150면.

36) 독일은 공판정에 출석한 자의 면전에서의 진술이 증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거나, 증인의 출석 불가능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외에서의 증언이 가능하고 이를

일본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피고인과 증인' 및 '증인과 방청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3). 증인 일반에 대하여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정 외의 증인을 상대로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할 수 있다(동법 제157조의4).

그러나 성폭력 범죄 이외의 범죄 피해자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할 경우 그 심리적 압박이나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격리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아동 등 일정한 범위의 피해자의 경우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이 있는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정신적 압박이라는 2차적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정 외의 별실에 증인을 있게 하고 판사, 소송관계인 등이 비디오 모니터에 비치는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법정 내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차폐장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지 않고도 증인신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165조의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차폐시설 등에 의하여 신문할 경우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대면할 기회는 다소 제한되지만 반대신문권은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큰 문제는 없다.

(3)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동법 제*259*조의*2)*[37]

현행법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게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38] 그러나, 현재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대검찰청 범죄피해자보호지침(2004.10.1. 시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39]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전담 검사 및 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형사소송법 제247조a)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은 법정증언 대체 수단으로 양방향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한 증언 방식, 아동에 대한 비디오 선서녹취서 방식을 도입하였으며(아동피해자 및 증인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한 연방 형사소송법 제3509조), 각 주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37) 법무부,「전게서」, 103면 ; 법원행정처,「전게서」, 152면.

38) 독일 형소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된 사법절차의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변호인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06조d).

39) 그동안 범죄피해자들은 사건을 접수시킨 후에 담당형사가 누구인지 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관서에 직접 전화해 보거나, 우편으로 사건진행

당관을 두고,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건 처분 결과, 공판 개시, 재판 결과, 출소 사실 등을 통지한다.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못지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따라서 형사사법이 단지 국가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권의 행사로만 인식되던 과거와는 달리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 피고인의 석방 여부 등 동향은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 피의자·피고인의 구금 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였다. 신청에 의하여서만 통지하도록 한 것은 피해 사실이나 소송 관련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피해자 등의 진술권*(*동법 *294*조의*2)*[40]

현행법은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신문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신청권자를 피해자에 한정하고, 폭넓은 신문 배제사유가 인정되고 있어 헌법상 권리인 피해자 진술권의 보장이 미흡하다.

사항을 통지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도 담당자가 없어 통화하기 어렵거나 적시에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SMS 자동통지시스템을 정비하여 사건 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범죄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SMS)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SMS 자동통지시스템은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 연계하여 사건접수·배당·수사진행·이송·종결 등 수사단계별로 사건진행상황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기관에서 일선 수사관들의 중간통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통지를 내실화하였다. 주요통지내용으로는 1. 사건이 배당된 경찰관의 성명 및 사건접수번호 2. 피의자 검거사실 등 수사과정의 변경사항 3. 타 관서 또는 타 경찰관으로 사건이송 여부 4. 사건종결 시 송치일자 및 종결사유 등이며 사건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하고 있다.

40) 법무부, 「전게서」, 214면; 법원행정처, 「전게서」, 154면.

한편, 최근 형사정책의 동향이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고전적 형사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음을 반영하고, 세계적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할 필요도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게 하여 위증 처벌 등의 부담 없이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게 하고, 그 진술의 증거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합의부원, 소송관계인 등에게 질문권을 부여하고, 중복진술이나 질문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는 검사를 거쳐 진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양형 절차에서 피해결과 진술(victim impact statement, VIS)과 양형의견 진술(victim statement of opinion, VSO)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41] 피해결과 진술이 증명된 사실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양형 의견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형벌의 종류 및 형량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결과 진술을 통하여 범죄로 인한 의학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은 양형의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절차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적극적 지위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증인신문절차와는 관련이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판정에 출석한 자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이 증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거나,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경우 법정 외에서 증언이 가능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a). 국회에서 특별한 논의 없이 정부 제출안[42]대로 통과되었다.

따라서 개정법은 피해자 진술권의 신청주체를 피해자 외에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

41) 연방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양형 절차에서 보호관찰관이 법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피해자의 범죄 피해 결과에 관한 진술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32(c) (2), (i) (4)].

4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2005.6.20.)에서 피해자 법정진술권 보장 방식에 관하여 증인신문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자유로운 진술기회 부여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되었으나, ① 피해자가 위증 부담이나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도 없이 강력한 유죄심증을 줄 수 있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② 사법참여 재판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증인신문 방식을 유지하면서 신문과정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제출안이 성안되었다.

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하였다(동법 294조의 2). 피해자 진술권의 배제사유 중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동법 294조의 2). 또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등에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기타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동법 294조의 2).

(5)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동법 제294조의3)[43]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한편,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성관련 범죄, 공갈 범죄 등의 경우 피해자가 사생활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증언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유사한 취지의 명문 규정(법원조직법 171b)이 있다. 다만, 비공개 여부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되, 사생활이 문제된 자가 비공개에 반대할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부 주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비공개신청을 하면 반드시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공개라는 헌법적 원리에 대립하는 피해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재판을 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헌법 취지가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신청에 의하여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294조의 3). 한편, 비공개 결정은 법원이 그 이유를 붙여 고지하고, 법정에 재정할 수 있는 자를 허가할 수 있다.

(6)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동법 제294조의4)[44]

법률 규정은 없다. 다만, 대검예규[45]로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에 수사

---

43) 법무부, 「전게서」, 217면 ; 법원행정처, 「전게서」, 156면.

44) 법무부, 「전게서」, 219면; 법원행정처, 「전게서」,158면.

기록 중 본인 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법정진술권을 강화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소송계속 중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는 '범죄피해자등의보호를도모하기위한형사절차에부수하는조치에관한법률'에서 피해자의 공판 중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46]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록의 열람·등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독일은 민사소송 제기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만 열람을 허용한다.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보다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거나, 절차의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권자는 피해자(피해자가 사망, 중대한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포함), 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으로 한다. 신청시기는 기소 후 법원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신청의 상대방은 '재판장'으로 한다. 또한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취지를 신속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일본 및 독일의 입법례에 따라 ①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판절차가 지연될

45)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대검예규 기획 제381호, 2005. 6. 20.) 제4조 제3항.

46) 범죄피해자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공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① 형사피고사건이 계속하는 재판소는 제1회 공판기일 후 당해 피고사건의 종결까지 사이에 당해 피고사건의 피해자 등이나 당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로부터 당해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이 있는 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당해 피해자등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신청한 자에게 그 열람 또는 등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사를 시킨 경우에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해 지득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공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우려 등을 이유로, 열람등사 허가 여부 및 등사한 기록의 사용목적 제한 및 조건부가 처분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犯罪被害者救助法

1987년에 신설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피해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하나 정당행위, 정당방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며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구조금의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한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구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구조

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러한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005년 10월 6일, 정부가 제출된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엄격한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로부터 국민보호라는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구조혜택을 입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요건 완화하였다(안 제3조). 구조요건 중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확대 등을 하였다(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즉 가정의 유지와 유족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유족이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 나머지 유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생계의존여부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아니하는 유족에게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고, 특히 배우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 연장하여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정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여 구조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구조금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안 제12조제2항).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지급신청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 犯罪被害者保護法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대책 추진 노력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47]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 제2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즉「범죄피해자구조법」등 개별 법률에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이고 통일적인 정책방향이 없어, 그 근거법을 마련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는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이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 해석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시책을 규정하고(안 제4조·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1조),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원체제를 구축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연구·홍보 및

---

47) 2004년 9월 우리나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마련해 2005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임을 밝힌 뒤 같은 해 11월 이를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 이 입법예고안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이념과 시책을 규정하고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규정을 담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고 있었다. 즉 이 법안의 체계를 보면 총칙,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시책,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범죄피해자지원 법인 설립, 벌칙 등 총 5개 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범죄피해로부터의 조속한 회복,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당해 사건 등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 보장 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직접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간주하는 등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의 구축, 연구·홍보 및 관계자 교육, 법령 정비 등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04-63호.

교육,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시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안 제12조 및 제13조).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 수립에 통일을 기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범죄피해학자 등 민간의 전문가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안 제15조).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제17조).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형사피해자진술권)제5항에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형사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별 법률로는「범죄피해자구조법」,「형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구조법」등이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이 없는 실정이었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등 사회방위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예방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범죄로 인한 피해의 발생은 국가가 이와 같은 범죄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범죄피해자구조법」,「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형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등이 있으나, 이러한 법률들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의 법정내 진술권 보장, 특정한 범죄의 신고자나 피해자인 증인의 보호,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등을 간이한 소송절차로 배상,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비디오중계에 의한 피해자 증인 신문 및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지위보장, 후속적 피해예방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피해의 원상회복 및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보호·지원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형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범죄피해자구조법」등의 개정 방향에 지침적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범죄피해자구조법」의 내용을 이 법에 포함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의료적 보호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의 범죄피해보상에 관한 내용도 담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내용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하면 다음과 같다.

안 제1조 및 제2조[48] 제정목적 및 기본이념에서는 이 법의 목적은 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②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③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이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이념으로는 ①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②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 ③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

48) 일본의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2004년 12월 8일 공포, 동년 4월 1일 시행)' 은 "이 법률은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더불어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 등에 의해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이로써 범죄피해자 들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기본이념' 으로 "모든 범죄피해자 등은 개인의 존엄이 존중 받고 그 존엄에 걸맞은 처우가 보장될 권리를 갖는다" 고 하고 있다.

고 있다. 목적과 기본이념은 모두 선언적인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 제3조[49]에서는 범죄피해자 등 정의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직접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순수한 의미에서 범죄피해자이지만, 이 법은 그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인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자까지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그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범죄피해방지 및 구조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자까지 범죄피해자로 봄으로써 이들도 안 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에서 정한 재판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개별법[50]이나 하위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와 보다 넓은 의미로 범죄피해자를 정의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고, 범죄라고 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최소한 형사 입건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위법성이 없는 긴급피난행위도 범죄라고 할 수 있는지 등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범죄의 정의 내지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49) 제3조① 1.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함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50)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피해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한하다. 이하 범죄행위라 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의 신고자의 개념 등도 모두 엄격하게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5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형사절차의 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교육·훈련 및 홍보 및 조사연구를 위한 대책이나 조치를 강구하거나 홍보 또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안 제7조의 피해회복의 지원에 관하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범죄피해자 구조법」에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고,

안 제8조의 형사절차 참여보장 내용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안 제9조의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의 내용은「특정범죄신고자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각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 제12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및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업무는 현재 일정부분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형사사법절차를 법무부가 총괄하므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업무는 여성가족부, 범죄

---

51) 제7조(피해회복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의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법률구조 및 취업관련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검찰청등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법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무부처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유관부처에서도 협력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여성발전기본법」[52] 등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관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5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규정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의결기관이라기보다는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보다 다양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을 다양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의 법문만을 살펴볼 때 위원회의 구성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이고, 위원의 자격이나 위원회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위원 구성의 다양화가

---

52)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안에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여성가족부 등 범죄피해자 관련 부처나 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 설립과 관계가 있는 행정자치부 등에 대한 조정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안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은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책을 강구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국가기관이 직접 범죄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것은 그 반대 입장에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이해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국가 재정상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불가능한 면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민간단체의 설립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가 법인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가 형사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형사절차의 안내와 상담 등 직접 보호·지원에 관련되어 있어, 어느 정도 검증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법조브로커를 양산하여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록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였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적으로 그 법인의 성격이나 목적을 알 수 없어 이들을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내지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단체는 이 법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상담소들의 기존의 활동에 아무런 제약은 없고, 기존에 활동하던 상담소가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도 보조금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53]

---

53) 현재 여성부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 일정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법무부를 통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도 법률구조를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범죄피해자지원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법인의 시설과 인원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중복적인 구조금지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법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신, 법무부장관에게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며, 법무부장관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장부·서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법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이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에서 재정이 소요될 요인 및 관련조문을 살펴보면, ① 범죄피해자 상담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10조), ② 범죄피해자의 실태 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제11조), ③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제15조), ④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제17조)이고, 소요예산으로는 총 10억4000만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용도는 연구용역 및 교육비, 시설비(보조금), 사업비(보조금)가 될 것으로 예상 하였다.

이렇게 정부(법무부)가 입안했던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은 2005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동년 11월 30일 수정가결 된 다음 동년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됨으로써 법률 제7731호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 대책수립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법률의 기본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후속법령의 장비작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헌법 제27조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참조)[54].

이는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형사사법의 적정한 실현의 감시를 위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고소권)가 국가기관의 소추절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의 지위를 중시하는 우리 법률의 태도이다.

---

54) 2005년 9월, 정부는 배상명령에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하고 형사화해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동년 10월에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동년 11월에는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가 담긴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http://www.moj.go.kr 참조.

2. 被害者 關聯 特別法

1)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한다)은 1992년도 7월에 법제사법위원회 강선영·주양자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법률안(성폭력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동년 동월 박상천 의원 외 95인이 발의한 법률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년 8월 이우정 의원의 소개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조화순 외 13인이 제출한 성폭력대책에관한특별법 입법청원 그리고 동년 10월에 변정일 위원 외 29인이 발의한 법률안(성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이 각 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11월에 열린 제 159회 정기회 제 8차 및 제 9차 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각 정당과 여성단체에서 활발한 입법준비 및 입법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각 당이 발의한 안을 토대로 1993년 5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법조계·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러한 모든 결과를 토대로 1993년 12월 16일에 열린 제 16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차 회의에서 위의 3개의 법률안과 1개의 입법청원을 통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1개 안을 만들기로 의결 한 후, 1993년 12월 17일 제 165회 제 22차 본회의에 상정, 만장일치로 성폭력특별법 대안이 가결되어 1994년 1월 5일 법률 제 4702호로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55]

제정 당시 함석재 의원은 성폭력특별법의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에의 대처하기 위함이며 기존의 법체계로는 현재 발생 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 특례를 넓게 인정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함으로써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56]』

성폭력특별법은 1995년, 1997년(4회에 걸쳐 일부개정), 1998년, 2001년, 2003년, 2005년(2회에 걸쳐 일부개정), 2006년 등 총 11차례에 걸쳐 개정이 거듭되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27 법률 제8059호)의 개정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55) 국회사무처, 제165회 국회 본회의회의록 제22호 3-4면.

56) 국회사무처, 제165회 국회 본회의회의록 제22호 3면.

2004년 12월 22일 공성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1월25일 김석준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5년 2월 18일)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5년 3월 8일 이계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05년 3월 25일 조배숙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05년 3월 30일 박명광의원 등 57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05년 3월 30일 손봉숙의원 등19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5년 4월 19일)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5년 5월 24일 박세환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5년 6월 14일)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5년 6월 22일 이은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256회(정기회)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5년 9월 13일)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6년 2월 23일 문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259회(임시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06년 4월 21일)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6년 5월 11일 나경원의원등 17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62회(정기회) 국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06년 9월 22일)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계속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계경의원 및 박세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제외한 8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다.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2006년 9월 28일)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한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

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연령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구별기준에 따라 간음과 추행으로만 구별하고 있다.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현재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그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를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라 처벌됨으로써 일부 처벌공백이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등이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안 제14조). 현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동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안 제14조의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의 추행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친고죄의 범위 축소하였다(안 제15조).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되,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하였으며,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

다(안 제21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제3호, 제2항 신설).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안 제21조의3). 또한 현재는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경우에만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동석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안 제22조의3). 앞으로는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키도록 하였다.

2)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1998년 7월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 법률이 시행된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입법적 대응체계 갖추었다는 데 큰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이었다.

이 두 법률은 가정폭력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성단체 정치계 학계 사법실무계의 여론이 집약이 된 것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1997년 제18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안은 3가지 안이었는데 1996년 10월 30일에 발의되어 동년 12월 13일 제 181회 정기국회 제 13차 법제사법의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신한국당)', '가정폭력방지법안(국민회의)', '가정폭력방지법안(자민련)' 등이 그것이었다. 이때 1996년 11월 22일 신한국당 임진출 의원 등 149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과 분리하여 심사하기로 하여 전자는 국회의장에게 반려하고 후자에 관해서 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사하게 되었음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연희 의원은 밝히고 있다.[57]

이러한 연유로 1997년 12월 13일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먼저 제정·공포되었고 동년 동월 31일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뒤를 이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최연희 의원은 1997년 11월 17일 제 185회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법제사법위원회의

57) 국회사무처, 제185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5호, 1997. 7-8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안 설명에서 “각 당이 제출한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하여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각 당의 교섭단체안이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여성특별위원회의 안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서[58] 법안 마련이 쉽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적으로 확인한 것이었고,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인식 가정폭력범죄에 특별형사절차나 사회복지적 접근 등이 강조되었다는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59]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형사처벌을 가하기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성행 교정을 통하여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은 생계곤란 등 경제문제와 가정해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60] 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12월 법률 제 5436호로 제정되어 2007년 7월 등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법률은 현행법상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보완한다는 취지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 5건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

58) 국회사무처, 제18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1997, 10-11면.

5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연구”, 2001, 97면.

60) 김숙자, “가정폭력특별법안(시안)의 방향과 내용”, 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 자료, 신한국당 정책위원회・여성위원회, 1996, 11면.

〈표 *2-1*〉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안과정

발 의 자	의안 번호	발의일 (회부일)	상 정 일
홍미영 의원 등 87인	2028	2005. 6. 13 (2005. 6. 14)	제256회(정기회) 제2차 2005. 9. 13
우윤근 의원 등 12인	3256	2005. 11. 7 (2005. 11. 8)	제258회(임시회) 제5차 2006. 2. 16
안명옥 의원 등 10인	4430	2006. 5. 26 (2006. 5. 26)	제262회(정기회) 제24차 2006. 11. 28.
박명광 의원 등 17인	4562	2006. 6. 30 (2006. 7. 3)	제262회(정기회) 제24차 2006. 11. 28.
이계경 의원 등 10인	5533	2006. 12. 1 (2006. 12. 4)	제267회(임시회) 제2차 2007. 4. 18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2007. 4. 19),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5차(2007. 6. 22),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6차(2007. 6. 29),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7차(2007. 7. 2)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2007. 7. 2)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그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법안 제2조제3호 차목 삭제하여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를 위반한 죄를 삭제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또한 동법안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시조치 청구요건 개선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 신설하였다. 동법 제9조의2에서는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하였다. 동법안 제21조에서는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를 명문화하여 판사는 조사관 외에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권 신설하였다. 동법안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을 개정하여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하나인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을 추가하였다. 동법안 제29조제5항 및 제41조에서는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연장하고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시간을 최대 현행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연장하였으며, 동법안 제29조의2에서는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 연장을, 임시조치결정을 집행하는 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위반시 처벌 등을 고지하도록 하며 판사가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한 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변경신청권 신설하였다. 동법안 제40조제6항에서는 감호위탁기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3) 特定犯罪 申告者 等 保護法

1990년대 중반에 각종 보복범죄로 사회에 충격을 주는 사건들[61]이 발생하면서 범죄신고자등의 보호문제에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게 된 것이 이러한 특별법의 입법 계기가 되었다. 1995년 10월 법무부가 주축이 되어 가칭 '신고자등 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었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러져 1996년 11월 제15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부가 마련한 '범죄신고자보호법안'이 상정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때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법의 제안 설명을 하였다.

『최근 범죄가 흉포화, 조직화 되면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범행을 우려하여 범죄신고를

61) 서울동부지원 앞에서 범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범죄피해자가 범인의 부하조직원에게 보복 살해당한 사건(1990.6.13), 강간범 김경록에 의한 증인 가족 보복 살해 사건(1994.10) 등이 대표적이다.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으나 증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 법률의 규정들은 법률의 규정들은 범죄신고자나 증인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62]

이 제안에 대하여 15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이문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범죄신고자보호법안'에 대하여, ① 사법경찰관이 형사보좌인 지정 시 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② 신원관리카드 열람요청 등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 ③ 증인신문시 피고인을 퇴정시킬 경우 방청인 퇴정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목요상 의원은 ① 악의적인 범죄신고자가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② 범죄신고자 등의 형의 감면규정이 악질적인 신고자에게 악용될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다. 안상수 의원은 ① 조서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규정이 피의자의 합의노력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②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형사보좌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③ 이 법의 적용범위가 일반범죄 전체로 열려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 안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로 넘겨지게 되었다.

1999년 8월 6일에 열린 제 20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다시 이 범죄 신고자보호법안이 제1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연희는 소위원회의 해당 법안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하면서 최초 정부안을 수정하여 보고하였다. 즉, '①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정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 변론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라는 것, ② 수사기관 종사자는 형사보좌인으로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라는 것 사법경찰관의 형사보좌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검사에게 허가를 얻도록 하라는 것, ③ 피의자 등이 합의를 원하여 면담을 희망할 경우 범죄 신고자의 사전승낙 등을 얻어 면담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두라는 것, ④ 면담 및 신원관리카드 열람 불허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권을 두라는 것' 등이었다. 이때에도 안상수 의원 박찬주 의원 등은 적용범위를 조직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과 수사기관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구실로 삼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으며 박헌기 의

62) 제18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96. 17면.

원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이 형법총칙을 적용하면 당연한 것이기에 불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63]

1999년 8월 11일에 열린 20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상수 의원이 법률의 명칭을 최초 '범죄신고자등보호법안'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안'으로 수정할 것과 이 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특정범죄의 보복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범죄신고자 등의 자수 시 형의 감면조항이 악용이 되지 않도록 조항 문맥을 다듬은 것을 받아들여 소위원회 위원장 최연희 의원이 수정 보고한 안에 이를 반영.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는바, 1999년 8월 12일 206회 국회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00년 6월 1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 被害者 關聯 警察法規

1) 犯罪被害者保護規則

새롭게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규칙(2004.8.17. 경찰청훈령 제428호)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즉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3조 참조).[64]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서 피해자라 함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등을 말하며, 피해자보호대책이라 함은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익보호 및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2조).[65]

63) 국회사무처, 20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99. 3-28면.

64) 장규원, 전게논문, 21면.

6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이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또는 법원 재판단계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시 적용한다. ②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검사 또는 전담직원이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66]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권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사항과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동규칙 제11조 제1항).[67]

여 수사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처리시 이 지침을 준용한다.

66)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 시행) 제3조【피해자 보호의무 등】이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 2. 피해자 전용 대기실이나 조사실 등 피해자의 조사·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3. 피해자 조사시 가족 참관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조치한다. 4.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녹화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환조사 와 장시간 대기 사태를 방지한다. 5. 피해자 조사후 교통비 등 실제 소요 경비에 상응하는 참고인여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6. 피해자와의 조사·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67)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 제12조【범죄피해자구조제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여 범죄피해자의 상담에 응하고,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배상명령제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배상명령신청 대상자에게 신청요건 및 그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신청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

범죄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그 후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전제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적시에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68]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인격권의 보호와 일정한 절차의 참여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초로 정보권 보장이 요구된다. 피해자에 있어서 정보제공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범죄피해로부터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의 경감을 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자신이 자기가 당한 사건에 대한 정보의 획득은 피해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며, 아울러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내지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의 요구권은 정보제공이라는 국가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정보제공의 희망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행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정보제공 요구권은 사회권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69] 따라서 이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재피해의 방지를 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제공의 청구를 포함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소나 고발에 의하지 않은 범죄도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고 또한 그 정보제공을 기초로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원한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예컨대 스토커(Stalker) 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의 성질상 범행반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70] 이러한 경우 가해자측의 정보, 특히 그 신병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가 얻을 수 있다면 일정범위에서는 그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을 꾀할 수 있다. 범죄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회복을 요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것은 명백하며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가해자

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68)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10권 제1호, 2002, pp.198-199면.

69) 도중진, 전게논문, 200면.

70) 장규원, 전게논문, 21면.

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 형사절차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형사절차에 대한 감시 기능을 찾을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는 소송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소송의 주체인 감사나 피고인 또는 법관 등에서 인정되는 형사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당사자인 범죄사건이 적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를 법적 권리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가이다. 법적 근거가 없이 구체적 청구권으로서 피해자의 정보제공 요구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일반 정보와는 달리 사건에 관한 개별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 내지는 이익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의 꾀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요구된다. 그러한 권리 내지 이익으로서는 가해자나 사건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보호, 적절하고 원활한 수사와 공판의 유지, 가해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의 촉진 등이 거론될 수 있다.

(2)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다(동규칙 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피해자를 고려한 시설의 이용은 경찰서 등에 설치된 피해자조사실을 이용하거나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제2차 피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범죄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객관적 경과 및 상황의 파악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어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그 고통을 경감시킬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배려하여 조사장소・시기・시간・회수 등의 조사방법을 연구하거나 조사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할 것이 요청된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한 제2차 피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잦은 조사 및 소환', '수사관의 중복질문, 부적절한 질문, 필요이상의 지나친 조사' 등

의 경찰수사가 피해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71] 따라서 필요 이상의 중복을 피하는 조사, 불필요한 것을 질문하지 않는 조사가 조사담당자에게 기대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조사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법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2]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서도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형사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 및 적극적인 피해자(또는 증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인 “신뢰관계에 있는 자”나 또는 형사보좌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변호인의 출석권까지 인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하겠다. 독일이나[73] 일본의 경우[74]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과 변호사의 참석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71) 장규원, 전게논문, 22면.

7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 제18조【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공소장의 공소사실 작성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보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 2. 문서위조죄 등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제2차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 3. 기타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연한 적시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

73)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문의 목적이 저해되지 않는 한 그가 신뢰하는 1인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06조 제3항).

74) 증인 신문시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 피고인 등의 의견을 들어 긴장 완화에 적당한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고, 증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도 불문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2).

(3) 재피해방지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수사활동에의 피해자 협력의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인권 존중, 피해자에의 정보제공, 수사과정에서의 이차적 피해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 강구, 피해자의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강구, 관계기관과의 협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간과해서는 아니 될 피해자보호대책으로는 재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규정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일에 대해서 역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이른바 보복행위적인 사건으로 인한 재피해 사건의 방지는 피해자에게 있어, 스스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절실할 것이다. 이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촉구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수사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근거로 하여, 재피해 공포의 유무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재피해방지의 조치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컬어 '재피해방지대상사건'이라고 등록하고, 경찰관의 신변 경계와 주거지 주변의 경계 강화, 긴급통보장치의 설치, 방범도구 등의 대여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강구 할 수 있을 것이다.

(4) 신변안전조치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3조).[75]

---

7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 제16조【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살인사건, 조직폭력사건 등 특정강력범죄사건의 범죄피해자가 법정 증언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느끼는 등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 또는 재판장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통해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의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은 다음과 같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로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동안의 신병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규정(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동법 제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동법 제2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피해자나 증인 또는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동법 제6조) 또한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규칙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경찰청훈령 제3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는 완비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경찰의 예산확보를 통한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5) 교육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제14조).[76]

(6)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피해자보호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보호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15조).[77] 특히 검찰과 민간단체와의 협조 없

증인과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폭력·가정폭력범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76)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 제7장 홍보 및 교육 제31조【안내문구 게시】피해자전담검사 및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및 업무내용,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민원실과 휴게실에 게시·비치한다. 제32조【인터넷 활용】대검찰청 및 각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방안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게시하여 홍보한다.

77)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 제5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단체와의 협조 제29조【민간단체 등과의 관계】검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 된다. 그 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상담과 의료, 법률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2-2*〉 창원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상담실적

○ 기간 : 2004. 12. 10 ~ 2005. 1. 31.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법률상담	인권지원	의료지원	합계
2	5	14	16	5	0	42

※ 출처: http://www.spo.go.kr, 인권지원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 동행 건수.

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상담실적을 보면 상기 표와 같이 달포간에 45건의 상담 실적을 보인 것은 매우 시사성이 크다 하겠다.[78)]

(7)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범죄피해자대책관의 설치 운영

피해자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무기획국장,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공보관, 감사관, 외사관리관, 교통관리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동규칙 제4조, 제5조 제1항). 동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관련 중요시책의 심의·의결, 피해자 보호업무에 관한 관련 기능 및 지방청간 업무의 조정, 피해자 보호업무의 분석 · 평가 및 발전방향 협의,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의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78) 창원지방검찰청 주최 창원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김상진)는 2005.2.2.(수) 오후 3시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로망스 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의 의미와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검찰청 보도자료 2005.2.2. 참조.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기획과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범죄피해자대책실장, 공보담당관, 감찰담당관, 외사3담당관, 교통기획담당관,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동 규칙 제8조).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대책관을 두어 피해자 통지 등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 체계 구축, 유관기관 · 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보고, 기타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79]

2)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80]*

(1) 피해자의 심리

사람은 사전·사고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마음속에서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범죄 피해는 타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가해진 만큼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 회복하는데 장시간이 필요하다.

---

79)「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 제6조【피해자지원담당관의 임무】피해자지원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사건처리경과, 재판결과, 가해자의 수형사실 및 출소 사실 통지 등) 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 안내 및 관리 2. 형사소송 절차의 안내 3.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4.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정상관계 조사 5.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법률구조방법의 상담 및 안내 6.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7.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홍보, 조사연구, 통계의 작성, 보고 8.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및 피해자지원 관련 업무등 규정하고 있다.

80)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경찰청. 2007. 4면 이하 참고.

〈표 *2-3*〉 **피해 후의 심리적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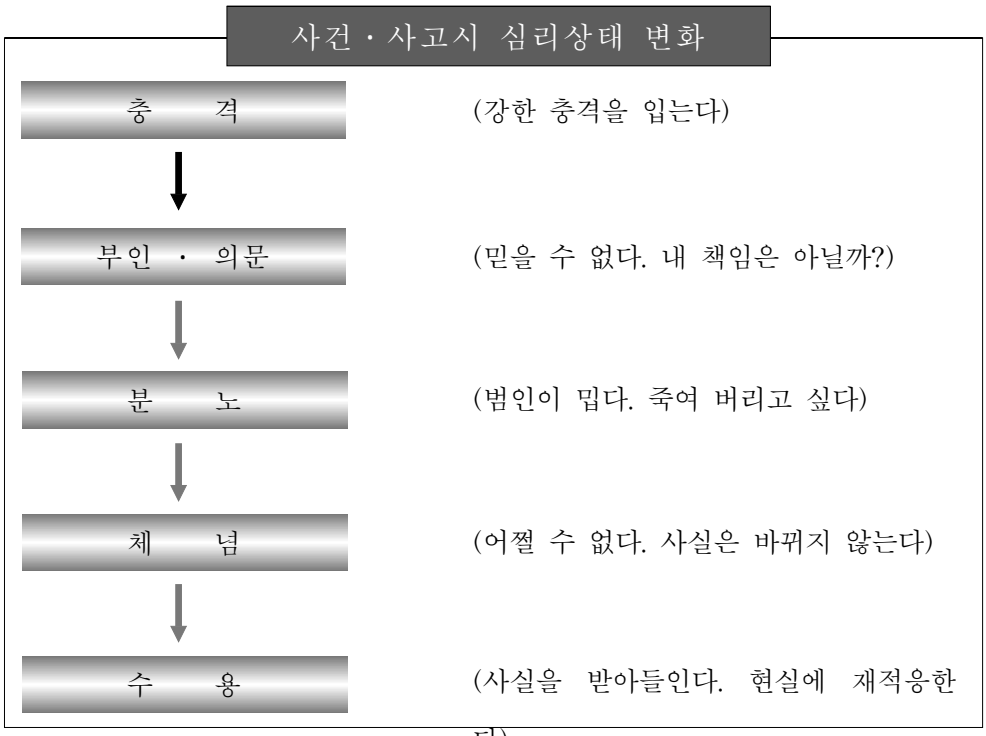

※ 출처 : 범죄피해자보호메뉴얼, 경찰청. 2007. 10면

사건·사고 직후, 조기에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은 감정의 마비, 즉 강간의 피해상황을 담담하게 진술하거나 남편의 죽음에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의연하게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감정의 마비」의 일례이다. 그 다음 피해자는 범인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 격한 분노를 지니고 있다. 분노는 때로「공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사건·사고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이미 안전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 무서움에 부르르 떠는 등 이겨내기 힘들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피해자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또한 “어두운 밤길을 걸은 내 잘못이다”, “내가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면 아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 자신을 책망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연속해서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강간 피해자 등에게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장기간 지속되는 심적 문제로는 심리학에서는 상해나 심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

격 및 상처를 트라우마(Trauma)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과 같이 범죄나 재해를 당하거나 신체에 중상을 입는 등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하면 심적으로도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심적 외상(Trauma)으로 인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인 모든 증상을「PTSD」라고 하며, 다양한 증상으로 몇 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예컨대 미국 베트남전 참전 군인,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피해자들이 공포스런 기억 재발·만성정신분열증 등이 후유증을 겪으며 범죄로 인한 '심적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발병률이 자연재해 또는 사고보다 4 ~ 6배 높았다.[81] 따라서 아래 〈표 2-4>와 같이 범죄피해자들은 경제적 지원보다 상담·대화나 정신적 지원·위로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사건 후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중복응답)*[82]

피해자의 요구	*%(퍼센트)*
상담 · 대화	59.0
정신적 위로 · 지원	53.1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지원	46.2
경찰에 대처하기 위한 도움	41.6
가족의 보살핌	35.3
신변보호	34.5
긴급경비의 지원	30.4
식사 제공	8.9
숙박 제공	8.7
언론에 대처하기 위한 도움	8.5

또한 〈표 2-5〉와 같이 범죄피해자들 중 91.8%가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그 중 정신과 의사나 카운슬러의 상담까지 받은 비율이 38%에 달한다. 또한 초동조치 수준이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정도와 외부도움에 대한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속도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

81) Dr. Foa(U of Pennsylvania), 2005. 5. 4, 한국인지행동치료 학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8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2006.12.

〈표 2-5〉 범죄피해 후 정신과 의사나 카운슬러의 상담 경험 유무

상담 경험 유무	%(퍼센트)
현재도 받고 있다	10.7
받은 적이 있다	27.3
받은 적이 없다	62.0

(2) 경찰의 피해자 보호 추진 체계

〈표 2-6〉와 같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범죄피해자대책계)는 피해자 관련 치안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피해자 관련 법령·지침 정비 및 교육·홍보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방청·경찰서 수사지원팀장으로 피해자대책관을 설치하여 각 수사부서 피해자 지원 업무 종합·조정, 피해자 보호 관련 교양 실시 및 이행상태 점검·지도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민원실·지구대·112센터에서는 평소에 각종 피해자지원제도 숙지하여 상담·안내시 활용, 피해자 안내서 비치·교부 및 피해자에게 각종 제도·지원단체 안내,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시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등을 하고 있다.

〈표 2-6〉 지방청·경찰서피해자지원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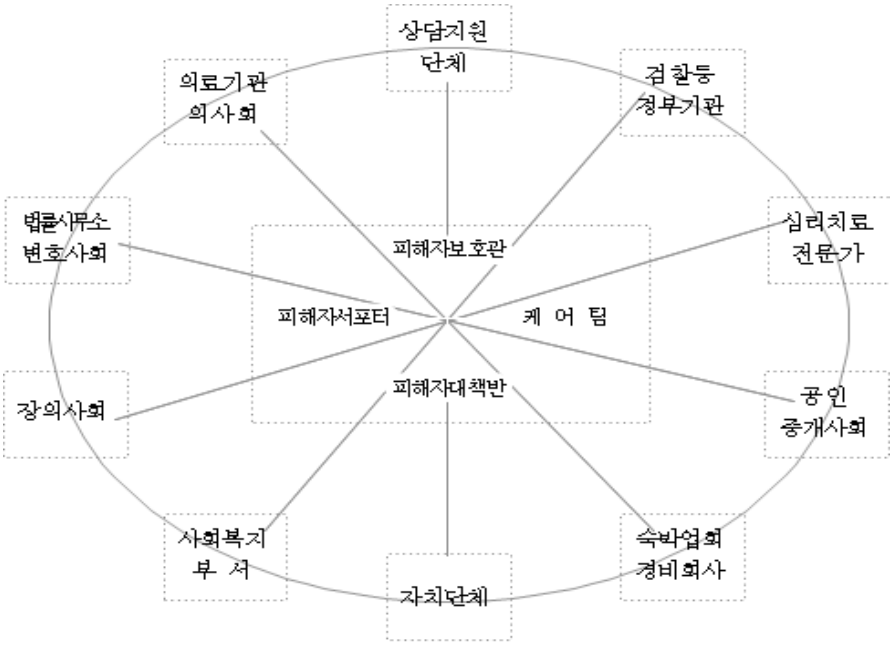

※ 출처 : 범죄피해자보호메뉴얼, 경찰청. 2007. 16면

경찰은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과장급 피해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83] 그간 형사사법의 관문인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았을 뿐 아니라, 경찰내부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추진을 위해 중간 관리층인 경찰서 과장급의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은 경찰서 형사과장(또는 수사과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함으로써 그들이 피해를 빨리 회복하여 피해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피해자보호관들의 주요 임무는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피해자와 직접 상담하여,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전문적인 지원단체에게 연계함은 물론 피해자서포터가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해자 서포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평상시 형사활동 또는 지역경찰 활동 등 기본임무 수행, 1인 수사사건은 사건담당자가, 1개팀 이상 전종사건은 지정된 서포터가 활동, 살인・강도・강간・방화・조직폭력 등 대상사건 발생시 일반인・他경찰관의 무분별한 접근 및 중복된 질문을 차단, 피해자 창구 일원화, 피해자에게 명함 및 피해자안내서 등을 교부하고 상담기관・의료기관・형사절차 등 각종 정보제공, 피의자 검거 여부 등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 등 발견시 지구대 등과 협조 신변보호 조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통합피해자 안내시스템' 활용, 피해자 지원제도・단체 검색하여 안내하고 피해유형별 안내서 출력 제공, 지구대 서포터는 피해자 집・주변 등에 대한 방범활동 강화 및 요구사항 청취, 피해자서포터 활동내용 등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상에 전산화된 피해자지원카드에 기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심리 전문요원(CARE팀)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으로 채용한 심리학 학위 및 임상경험자로, 지방청 강력계에 배치하여 강력사건 등 발생시 초기 현장 출동하여 위기개입으로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심리평가・상담 및 피해자 지원단체 연계 등의 임무 및 평상시에는 기히 상담한 피해자 사후관리, 일선 경찰관 교육・자문, 지원단체와 연락체제 유지 등의 업무 수행을 한다.

(3) 범죄신고자 보호

범죄신고자란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기타 자료제출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에 기여한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

83) 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 "경찰은 범죄피해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07.4.6.

한다. 날로 증가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범죄신고는 수사단서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84]

또한 범죄신고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의 보호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목격자 또는 제3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미신고 사유를 조사한바, 보복 또는 개인정보누설 등에 대한 우려가 56.3%를 차지[85]하고 있으며, 일반인 99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면 보상금을 많이 지급해도 신고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문에 826명(83.4%)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등 '신고자 보호의 절대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86] 다만, 아래 〈표 2- 7〉에 의하면 실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비율이 보복우려보다 높게 나왔다.

〈표 2-7〉 폭행·상해 피해자 미신고 사유

계 (%)	신고효과 기대곤란	피해 경미	증거가 없어서	자체 해결	보복 우려	비밀유출우려	범인이 아는사람	기 타
100	30.8	23.2	5.6	5.4	3.8	1.4	19.0	10.8

※ 출처 : 통계청. 2005.

(4) 관련 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 비밀누설금지 및 범인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478호)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 비밀누설금지 및 범인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506호)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 신고자 동행시 유의사항 및 비밀누설금지 등 규정하고 있다.

---

84) 경찰백서, 2006. 207면.

85) 1998년 경찰청 주관 '치안행정 리서치' 조사.

86) 1999년 범죄신고보상제도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5)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ONE-STOP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지구대·수사·형사 등 사건담당자는 신고·고소장 접수 등 관련 사건 최초 인지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에게 'ONE-STOP지원센터 이용안내문'을 교부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ONE-STOP지원센터 이용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연계 조치를 하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6) 가정폭력의 *NGO* 및 *ONE-STOP*지원센터와 연계 수사

일반 형사사건은 NGO와 관련이 적으나, 가정폭력특별법은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는 NGO에 의해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각국의 법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피해자 조사시 NGO 동석 및 상담·치료를 위한 관내 NGO 연계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신고보다 NGO상담을 우선 하는 경향이 있어 NGO연계로 범죄첩보 입수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 의료, 수사, 법률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14개소에 설치된 ONE-STOP지원센터를 연계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90%가 전과가 없는 자로 여타 형사법규위반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다. 가정폭력은 주부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 세습화 등을 초래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87] 따라서 현장출동시 가해자·피해자 격리 등 응급조치 및 수사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여성이 흥분이 가라앉으면 처벌의사를 번복하기 때문에 사건처리하는 것은 경찰력 낭비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 82.6%가 "집안일이니 잘 해결해라.", "나중에 고소해라." 등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고, 피해자 처벌의사 번복시에도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적극 설명

87) 가정폭력은 질적으로 다르다. 가정폭력시 흉기 등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10%)하거나 재물손괴(4.4%)를 수반하고, 감금(0.2%)하는 등 강력범 형태를 띠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 유도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 즉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치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부부싸움은 결혼초기 서로 적응하기 위한 '사랑싸움'이다. 즉 결혼기간은 5년 미만(17.1%), 5~10년(26.2%), 10~15년(29.6%), 15~20년(18.1%)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주로 아내(83.9%)로 일방적 폭력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다. 부부가 살다보면 안 싸우고 살 수 없다.[88] 따라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5년이상 누적돼 오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사건 처리시 과거의 폭력행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현장조치시 경찰관들에게 권한이 없다. 즉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내 문제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파생된 편견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도 여타 폭력사건과 현행범인 체포 등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하되,「가특법」상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 특별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第2節 捜査節次上 被害者保護

Ⅰ. 概念定義

1. 被　害

에너지에 의한 피해자, 산업에 의한 피해자, 천재지변에 의해 생겨진 피해자까지도 앞으로 피해자학의 연구주제라며 1975년 국제피해자학연구회의 특별강연에서는 주장하였다.[89] 이렇게 피해자학이 범죄학과는 별개의 독립한 분과학문으로서의 의미를 지니

88) 가정폭력 발생원인은 가정불화(45.4%), 성격차이(14.3%), 빈곤(8.7%) 등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 재발가능성 상존해 있다.

는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피해자학의 학문적 의의, 즉 피해자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에 관하여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물론, 범죄학과 구별되는 피해자학의 고유한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학에서 말하는 '피해' 또는 '피해자'의 개념에 관하여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피해개념에 대한 견해는 '피해'에 대하여 범죄를 포함한 위법행위의 피해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사회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피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학의 대상을 범죄피해자에 한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90]

피해자학의 대상을 범죄의 피해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개념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종래 범죄학에서는 범죄개념을 법률상의 범죄행위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의 모든 사회적 일탈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다툼이 있어 왔다.[91] 멘델존(Mendelsohn)과 같은 학자는 교통사고, 붕괴가정, 타민족 살해행위 등의 피해까지도 문제로 삼아 가장 넓은 의미의 피해개념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피해개념의 주장은 한계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닌다.[92]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피해'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의한 피해'로 한정[93]하

---

89) 諸澤英道, "犯罪被害者學から一般 被害者學へ", ジユリスト991號, 1991.12, 113-118頁.

90) 이 점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가 명확하지는 않다. 피해자학이 범죄학의 한 부분이라고 명시하였거나 그러한 전제에서 논술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민건식, "피해자학이란 무엇인가", 피해자학 연구 창간호, 1992, 15-21면; 정영식·신양균,「형사정책」, 법문사, 1996, 267면 이하 등 참조.

91) 즉 범죄개념을 법률상의 개념에 한정하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밝히고 방지대책을 강구한다는 형사정책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32면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6, 20면 이하.

92) 宮澤浩一編,「犯罪被害者-日本の被害者學」, 成文堂, 1970. 121頁.

93) 만일 범죄개념을 법률적 평가개념에 한정한다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밝히고 방지대책을 강구한다는 범죄학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 법률의 규정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얽매여서는 국민의식이나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가벌성 평가의 변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학의 관심대상인 피해도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범죄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회적 일탈행위로 인한 피해 전반을 관찰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피해'개념을 범죄를 비롯한 일체의 사회적 일탈행위 또는 사회유해적 행위(soaialsh dliche Handlung)로부터의 피해를 포괄하는 규범학과 현상학의 의미로 보아야만

는 것이 불가피하다.[94] 왜냐하면 피해자수사에 있어서의 '피해'란 원칙적으로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자 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피해자 수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95]

2. 被害者

'피해자'란 범죄로 인해 법익이 침해 또는 위협된 자를 말한다.[96] 다시 말하면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귀속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한다.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체나 범죄의 수단이 된 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에 제한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피해를 입은 범죄로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다.[97]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23조, 제225조)에서도 직접적 피해자만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5호)에서도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비로소 살아있는 범죄, 실재하는 범죄의 현상과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 지광준, 「현대사회와 피해자」, 더썬, 2006, 34면.

94) H. Schneider는 좁은 의미의 피해와 넓은 의미의 피해와의 관계는 '범죄와 사회적 일탈행위와의 관계가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H. Schneider, Hans Joachim, *Viktimologie Wissenschaft vom verbrechen sopfer*. 1975, Tubibgem, p.12.

95) 1985년 11월 29일 UN총회에서는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은 실정 형사법 체계상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조직 내부적 제재의 대상에 불과할 수도 있고, 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문제만이 제기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부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한 경우만을 가정하기로 한다;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the Abuse of Power : Resolution 40/34 of 29, Nov, 1985.

96) 안황권·김상돈,「범죄 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24면.

97) 신동운,「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93면; 이재상,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고시연구, 1988.8., 33면. 이 경우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모두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강간을 당한 부녀의 남편은 강간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 백형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고시연구, 1998.8, 21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만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98]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보호를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간접적 피해자도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즉 형사실체법상으로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은 간접적인 피해자에게도 심각할 수 있어서 그들에 대한 보호활동도 필요한 것이며, 사안에 따라 중요한 증거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력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23일 공포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서는 범죄자피해자의 개념에 직접적 피해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고 있으며(동법 동조 제2항), 2004년 8월 경찰청 훈령 제428호로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2조에서도 피해자의 범주에 피해자 가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를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피해자의 범주를 넓게 보고 있으며,[99] 또한 미국 역시 '피해자'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범죄피

---

98) 피해자 개념을 범죄피해자에 한정할 것인가, 비범죄피해자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그 개념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최협의로 이해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범죄자의 상대편으로서의 피해자, 다시 말하면 피침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로, 협의로 피해자를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범죄자의 상대편으로서의 피해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반드시 법률적인 관계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에서 Hentig는 '객관적으로 보호 법익을 침해받고, 주관적으로 이러한 침해에 대해 불쾌와 고통을 느끼는 자가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다. 셋째로, 광의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피해자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범죄자 또는 가해자와 분리하여 논하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피해자를 파악한 경우로는 오스트리아의 H.Zipf와 F.R.paasch가 있다. Zipf는 '범죄행위에 관계한 피해자 전부가 법익을 침해받은 자, 혹은 소송법상의 고소권을 부여받은 자로 간주된다고 한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paasch는 '범죄학에서 말한 피해자가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받은 자를 나타내는데 대하여, 피해자학에서는 타인의 이익에 몸이 바쳐진 자'라고 하고 있다. 넷째로, 피해자 개념을 최광의로 이해하는 견해는 1975년 국제피해자학연구학회에서 행한 Mendelsohn의 특별 강연에서 '에너지에 의한 피해자, 산업 재해에 의한 피해자, 자연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도 포괄되어야 한다'고 한 것과 더 나아가서 교통사고, 노동재해, 붕괴가정, 민족모살 등에 의한 피해자도 포괄한다고 하고, 피해는 누구에 의하여 발생했는가를 묻지 않고 스스로 자초한 피해까지도 포괄하며, 부주의한 운전에 의하여 스스로 발생시킨 자상, 그리고 자살까지도 피해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태도가 이 입장에 속한다.

99) 2002.10.31. 2002헌마453.

해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100]

따라서 외견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입은 자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면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간접적 피해자도 포함시키고자 한다.[101] 이는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민사영역이나 행정영역까지 피해수사가 확장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위와 같이 형사법적 의미에서만 해석하면,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 형사법의 영역 밖에 있다하더라도 인간 사회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유형들[102]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보호활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형사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점으로 피해자를 정하다보면 자유롭게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 피해자화의 과정을 간과할 수 있어 새로이 범죄로 규정해야 할 행위들을 제대로 포착하기가 곤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유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범죄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문제는 입법적 대응의 문제로 유보하고 피해자수사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를 형사법령에 위반한 범죄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와 그 직간접의 피해자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범죄를 피해자의 기준으로 볼 때, 피해의 개념을 위와 같이 한정한다할지라도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개념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구별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 없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도 존재하는가 하면, "가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정할 수가 없는 피해"도 존재하고 "피해자가 동의

---

100) Wallace, Harvey.「Victimology」, 2006, p.9.

101) 단,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나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에 불과한 행정질서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초동수사 종료 후 확인한 결과 외견상 피해자로 보였던 자가 먼저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로 밝혀지는 경우 등은 여기의 범죄피해자 개념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초의 외견상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먼저 불법적 공격을 가한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판명이 된 때로부터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102) 즉 기업 간 가격담합행위, 불공정 상거래행위, 신종기술로 인한 손해야기 행위, 하자있는 상품판매 행위 등.

또는 기여한 범죄"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의 존재여부 및 특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103]

그러나 피해자 없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104], 범죄나 사회적 일탈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피해는 피해자학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단속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에서의 범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를 반드시 인간만이 아니고 조직, 도덕, 법질서 등도 포함된다[105]는 것을 전제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의 만취나 노출증, 난폭운전, 제한속도위반, 동성애, 흥분제 사용 등의 법률위반에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피해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다면, 피해자의 정의가 너무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의는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이어야 한다.[10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어느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기관이 그 작위·부작위 등을 통하여 각국의 형사법령 및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을 고의·과실로 위반함으로 인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였을 때, 그 침해를 입은 상대방과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로 한정하고자 한다.

3. 被害者搜査

1) 被害者搜査의 類型

피해자수사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피해자수사의 유형을 구분할 때 범죄가 '현장성'이 있는가 여부, 다시 말하면 사건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현장조치가 필요한가 여부에 따라 초동수사(preliminary investigation)와 계속수사(follow-up investig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동수사는 사건발생 초기에 현장출

---

103) 諸澤英道,「被害者學入門」, 成文堂, 1998, 40頁 이하 참조.

104) 동의낙태, 성매매, 도박, 장물의 수수 및 취득, 13세 미만의 소녀와 동의간음, 간통, 근친상간 등도 포함하지만, 본래 의미의 피해자 없는 범죄는 총포나 도검류, 폭발물의 불법소지, 마약 등의 불법사용, 무면허운전, 행사의 목적 없는 통화·유가증권·인장 위조 등이다.

105) 이와 관련해 B. Mendelsohn는 1975년 국제피해자학연구회에서 주장한 바 있다.

106) 諸澤英道, 前揭書, 44頁.

동・현장임장・현장보존・현장관찰・현장감식・수사긴급배치 등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으로서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수사관의 신속한 현장조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사 활동이다.

하지만 현장사건 중에는 사건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사건 현장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현장조치가 큰 의미가 없는 유형도 존재한다.[107] 이때에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수사의 방향을 설정한 뒤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초동수사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 경우라도 현장조치가 종료된 후라면 이때에도 역시 수집된 증거나 수사자료 등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분석・판단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범인의 신원확인, 범인검거, 증거수집 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초동수사 이후에 전개되는 이러한 수사 활동 유형을 '계속수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사진행과정에 강제력의 사용 유무를 기준으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의수사방법에는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참고인수사, 사실조회 등이 있다. 한편, 강제수사는 크게 구속・체포 등과 같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수사와 압수수색과 같이 수사대상자의 재산이나 재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자유로운 처분 및 사용을 제한하는 대물적 강제수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피해자수사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사유형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 즉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건발생 직후 현장조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초동수사 혹은 계속수사의 형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강제력 행사 유무에 따라 강제수사 혹은 임의수사 방법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피해자수사에 어떠한 수사기법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탐문수사 등을 비롯한 각종 수사기법들을 이용하여 수사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2) 被害者搜査에 대한 槪念의 定立

(1) 수사의 개념

수사(investigation, Ermittlun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최광의, 광의, 협의의 수사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해 보고자 한다.

---

107) 예컨대 1년 전의 사기 피해사실을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동 수사 활동을 전개할 여지가 없다.

최광의의 수사개념은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행하는 한 모두 수사 활동을 파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형사입건 되기 이전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첩보 수집활동, 수사단서를 얻기 위한 활동, 내사활동 등이 모두 수사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러한 최광의 개념은 형사입건을 하기 전의 내사단계에 있는 용의자(피내사자)까지도 피의자신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형사법 체계 내에서 인권보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108] 우리의 현행 수사관련 법령을 살펴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최광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내사종결 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범죄수사규칙 제73조)은 사법경찰관이 사실상의 최종적 수사결정권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 바. 이는 최종적 수사종결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다.[109]

광의의 수사개념은 최광의 수사개념 중 입건 전의 활동을 제외한 개념이다.[110] 즉, '수사기관이 입건을 통하여 수사에 착수한 뒤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이후의 활동인 이상 기소 전 절차에서 행하는 활동이건 공판절차 중에 행하는 활동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는 물론 사실 행위적 소송행위와 그 수사과정에 부수되어 수행하는 순수한 사실행위까지를 포함한다.[111]

---

108)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후단)와 같이 피내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정은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권리보호 규정이 미비하여 피내사자 인권보호가 취약하다고 보인다.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헌법 제2조(신체의 자유),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와 같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이유로 피의자처럼 변호인선임권 고지·가족에게의 통지 등과 같은 일정한 인권보호 규정을 형사 관계법령 속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09)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입건(booking)전 용의자에 대한 직무질문(questioning)이나 일시적인 억류를 하게 된 용의자(temporary detention of suspect)에 대한 소지품검사(frisk) 등의 행위를 체포 전 수사 활동(pre-arrest investigaton)이라고 하여 수사의 개념을 매우 넓게 잡고 있다; Wayne R. LaFave, *Criminal Procedure*, Second Edition, West Publishing Co. 1992. p.19.

110) 이 때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내사나 불심검문, 변사체검시 등은 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 신동운,「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pp. 80-86면.

111) 이 때 경찰수사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형사소송법 제

일단 입건과정을 통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범인검거·증거수집활동 뿐만 아니라 범인검거 및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활동은 수사목적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비록 수사 활동에 부수된 행위라 할지라도 수사목적과 부합되지 않거나 비수사기관의 행위일 경우에는 수사 활동 개념에서 제외된다. 이 부수적 수사 활동에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인질강도 발생의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는 물론이고 인질을 구출해내는 과정도 수사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 수사라고 볼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상담시설에 인도하는 활동도 수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성폭력 현장에 출동 하였을 때 범인이 도주하고 없었을지라도 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는 것도 수사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수사활동 지원행위는 수사에 협력하는 행위일 뿐 그

196조,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등에 의하면 경무관 이하의 모든 경찰관은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무관 이하의 경찰관은 비록 비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검사나 소속 상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서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제검거령이 내려질 때에는 비수사부서인 경무·경비·정보·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들도 수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경찰수사기관 이라함은 통상 경찰수사부서에 소속되어 소속 상관이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장들의 집합체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기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경찰수사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한다. 즉, '경무관 이하의 경찰관 중에서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수사의 업무에 전종하도록 명령이나 지시를 받은 경찰관의 집합체(이를 "본래적 경찰수사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와 수사전종부서에 속하여 있지는 않더라도 수사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경찰관의 집합체'(이를 '사실상의 경찰수사기관'이라고 명명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를 모두 경찰수사기관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사실상 경찰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수사임무수행이 단발적이고 한시적이며 수사관련 임무종료와 동시에 경찰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론적·정책론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본래적 경찰수사기관에 종사할 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백히 하여 전문 수사요원화 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의 경찰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 중 일정한 인원을 경찰수사관 자격시험을 거쳐 본래적 경찰수사기관에 흡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위 자체가 수사에 속할 수 없다고 보며, 예컨대 수사경찰이 야간 방범활동에 동원되거나 행사장의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것도 수사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협의의 수사개념은 오로지 수사활동을 수사절차에만 국한시켜 정의하는 입장으로서 수사란 기소 또는 불기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를 수사의 개념에서 제외하게 되는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 피해자수사에 대한 정의

피해자수사는 여러 가지 수사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여러 유형의 수사기법을 혼용하여 활용하거나 각종 수사활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다. 즉 피해자 수사 활동에는 피해자 진술청취를 위한 대인적 수사 활동이 있는가 하면 피해품의 확인 및 장물수배와 같은 대물적수사활동도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범행 현장으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등 초동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수사가 있는가 하면 타살 혐의가 있는 변사체발견 시 피해자신원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타살 혐의가 있는 변사체 발견 시 피해자신원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같은 계속수사과정으로서의 피해자수사도 있는 것이다. 또 피해자수사는 통상 임의수사 형태로 전개되지만 예외적으로 증거보전절차에선 증인신문 청구의 경우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에 대한 참고인과 같이 강제수사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국가보안법 제18조).

피해자수사에 관한 정의를 내려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피해자수사라 함은 수사기관이 발생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해 사건의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를 탐지하고 수집하기 위한 활동임과 동시에, 어떤 범죄의 수사과정에 부수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입장에서 피해자수사의 주체는 수사전종부서에 소속되어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본래적 경찰수사기관'에 소속된 경찰관)뿐만 아니라 비수사부서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수사 활동에 참여하여 수사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찰관('사실상

경찰수사기관'에 소속된 경찰관)을 모두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사경찰의 피해자지원경찰은 일반 조장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활동과는 달리 경찰수사활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발시킬 수가 있고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경찰수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피해자지원활동을 단순한 행정적 서비스 활동이 아닌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112]

(3) 피해자보호 등

① 개념정리의 방향

오늘날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또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강화'라는 문제는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학 및 피해자학 등 모든 형사사법의 핵심 쟁점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꾸준한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그 초석은 다졌다고 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나 피해자의 권리라는 개념은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헌법 등 각종 특별법을 제정 개정[113]

112) 경찰수사는 검사나 그 이외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같은 타 수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수사활동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는 범죄신고가 접수될 경우 1차적으로 현장에 임장하게 되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현재 막 발생하여 진행 중이거나 종료 직후일 경우 위기상황에 개입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셋째 경찰인력은 약 9만 1천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고 수사 인력만도 1만 5천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기관으로서 국민들과 가장 빈번하고도 가까이서 접촉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펼 수 있다는 점이다(경찰청, 「경찰백서」, 2006. 438면), 넷째 경찰수사는 그 업무의 특성상 경찰의 타 기능들과 밀접하게 상관된다는 것이다. 즉 지구대(파출소) 직원이 방범순찰을 하다가 불심검문을 하였는데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바로 수사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범인검거를 위하여 생활안전·경비·교통부서 직원이 함께 공조를 할 수도 있고, 수사업무에 관한 협조를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지구대(파출소)에 요청할 수 있는가 하면,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초동수사를 마친 후 경찰서 수사관에게 수사상황을 인계하는 등 경찰의 각 기능별로 부서 상호간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113) 사회적 약자인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사구조의 확립이라는 면에서도 그 동안 많은 발전이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에게는 고소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권(특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고전치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 재판정진술권(헌법 제27조 5항, 형소법 제294조의2 제1항)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

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보호의 기본법으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도 200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피해자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각국의 연구 성과와 제도를 소개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피해자학 관련 용어도 제대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학과 피해자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향후 체계적인 입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관련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114]

3) 피해자보호·지원과 피해자 대책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은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헌법적 이념을 규범화 한 것이다. 또한 제10조 제1문 후단은 행복추구권에 관한 조항으로 헌법 제11조에서 제 36조에 걸쳐 규정된 기본권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보호・피해자지원 등 피해자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피해자보호’(Opferschutz)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특별법), 범죄피해구제제도(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법), 보복 등에 대한 각종 보호제도(보석 등과 관련하여 규정한 형소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 이미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입법도 다수 제정되고 있다.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를 두어 성폭력피해부녀의 인격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男女고용평등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종래 가족 내의 범죄문제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았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문제에 개입하도록 입법조치 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 (구) 윤락방지법의 대체 법률로서 제정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종래 범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성매매 여성을 이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법조치를 강구하였다.

114) 김용세・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 한국피해자학회, 2002. 44면

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활동에 포함된다. 오늘날에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을 발전하면서 피해자보호 활동도 더욱 다양해졌다. 일반적인 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지원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와 그의 권력 옹호를 위한 조치를 꾀하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victim service, victim support)이란 일반적으로 1950년대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주로 민간 자원봉사조직에 의해 시작되었던 피난처 제공, 정신적·심리적 부조, 재활지원, 기타 법률적 조언과 구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115]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민간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피해자 지원은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사적 활동에 한정하여 이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피해자지원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정신적·심리적 부조 내지 법률구조 등의 모든 피해자대책을 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의 개념을 비롯하여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대책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피해자화 방지'는 제1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제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범죄예방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대책도 형사정책의 일부를 이루며 일반 사회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범죄자, 즉 가해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대책은 범죄대책 또는 범죄자대책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

115)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의 종류는 다양한데 일본에서는 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경제적 지원 ② 카운슬링 등의 정신적 지원 ③ 위기개입, 생활지원, 법정동행 등의 간접적 지원 ④ 형사소송법, 검찰심사회법,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등에 입각한 형사사법에서의 법적지위의 향상의 4종류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지원활동은 여러 기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① 공적기관, 특히 경찰 및 검찰 등의 형사사법기관, ② 민간기관, 특히 피해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③ 피해자유족자조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도미타 노부호, "민간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일본에 있어서 경찰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경찰청발표 논문집, 2007, 5면.

Ⅱ. 搜査節次上 地位

1. 搜査開始 段階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된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참조).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원인은 가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범죄의 혐의를 두게 된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 한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수사의 단서는 현행범의 체포, 고소와 고발, 자수, 변사자의 검시이다.[116] 고소 등이 있으면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친고죄의 고소는 범죄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척·지정고소권자 등 고소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수사단서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단순한 수사단서 일뿐만 아니라 소송조건이 된다. 따라서 친고죄는 범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117] 이러한 경우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을 상당하다.

범죄수사규칙(개정 2005.10.6. 훈령 제462호)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상된 사실의 유무' 등의 사항에 주의하여 수사하여야 한다는 주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65조 제1호), 고소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은 관할구역 안의 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116) 수사의 단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자동차 검문(도로교통법 제43조)이 있다. 또한 풍문, 피해자나 제3자의 범죄 신고, 진정, 수사기관의 인지 등 다양하다.

117) 반의사불벌죄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특한 제도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강력한 권한의 부여와 친고죄와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재상, 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1권, 1992, 45면.

2. 搜査進行 段階

피해자는 범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다고 할 수 있고, 범죄사건의 처음과 끝을 직접 체험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아는 사이라면 범행의 동기·목적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며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이것은 신문 및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중요 참고인으로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객관적 경과 및 상황의 파악, 피해자·피고인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 제1항),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

또한 피해자는 중요한 증인으로서 증인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도입으로 귀결된다. 즉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참고인조사에 출석 또는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 '임의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 그 진술과 다른 진술을 공판기일에 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는 기소 전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진 조서는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동법 제311조).

3. 搜査終決 段階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현행법은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가 공소의 판단에 관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참조).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소추·처벌을 원한다 하더라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수사

가 종결될 수 있다. 검사는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불기소처분·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한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118] 역미란다원칙의 고지대상자로서의 지위라 볼 수 있다.[119] 이때 불기소처분 통고를 받은 범죄피해자는 검사에게 그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259조).

범죄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항고(검찰청법 제10조)와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120], 그리고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있다. 항고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등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인정하게 되었다(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정 형소법 제60조 이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항고・재정신청, 헌법소원은 검사의 처분에 대한 통제권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가지는 예방적·심리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부터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여지는 대폭 줄어든다. 범죄피해자가 항상 가해자, 즉 범죄자의 소추나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추가 행하여졌다 하더라고 현재의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그 소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의 의사는 기껏해야 정상으로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특히 약식절차는 일반적으로 형이 가벼워 피해자의 불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식절차에 대하여도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가

---

118)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처분의 취지는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이재상,「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302면.

119) 그동안 범죄피해자들은 사건을 접수시킨 후에 담당형사가 누구인지 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관서에 직접 전화해 보거나, 우편으로 사건진행사항을 통지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도 담당자가 없어 통화하기 어렵거나 적시에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SMS 자동통지시스템을 정비하여 사건 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범죄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SMS)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20) 재정신청제도의 개정을 위한 검찰청법의 개정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무분별한 재정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고소권자에게만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전히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 없는 고발인을 위해 재항고제도를 존치시키되,「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제10조 제3항).

관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공소제기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범죄피해자의 처벌 감정에 대한 배려가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被害者保護對策 實態

경찰의 피해자보호 실태파악을 위하여 2007년 6월4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내용으로 아래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과 소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 피해자 서포터 여부 또는 근속연수에 따라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표 *2-8*〉 설문조사 기준표

(단위 : 77명)

성 별	**남 자**			**여 자**		
수	70			7		
피해자 서포터여부	**그렇다**			**아니다.**		
수	34			43		
계 급	**순 경**	**경 장**	**경 사**	**경 위**	**경 감**	**경 정**
수	3	23	33	13	2	3

1. 犯罪被害者保護對策에 대한 弘報成果 評價

그 동안 경찰청에서는 전국 지방청·경찰서에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피해자서포터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자 또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들의 피해자보호 인식을 파악하여 앞으로 피해자

보호 대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항목은 범죄피해자보호대책에 대한 홍보성과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경찰청 수사국에 피해자 전담기구인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된 사실, 범죄피해자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경찰청 훈령으로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정보제공·신변보호·초기상담· 협력체계구축 등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대책에 대한 인식정도, 피해자서포터 제도와 지방청·경찰서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내용이다.

1) 被害者保護關聯 專擔機構

〈표 *2-9*〉 피해자보호관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 분	공문을 통해 보았다	직원들로부터 들었다	기타 방법으로 알았다	몰랐다	합 계
피해자 전담기구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된 사실	56명(72.7%)	6명(7.8%)	8명(10.4%)	7명(9.1%)	100%

피해자보호관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인식 항목은 위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77명)의 90.9%(70명)가 경찰청 수사국에 피해자 전담기구인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몰랐다는 응답의 9.1%는 모두 4년이하의 지구대 근무 경찰관(순경)들이었다. 따라서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被害者保護關聯 法規에 대한 認識

〈표 *2-10*〉 피해자보호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알고 있으며 읽어 본 적이 있다.	알고는 있으나 관심 있게 읽은 적은 없다.	법률(훈령)이 제정된 사실을 몰랐다.	합계
「범죄피해자보호법」과「범죄피해자보호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24명(31.2%)	46명(59.7%)	7명(9.1%)	100%

범죄피해자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과 경찰청 훈령으로「범죄피해자보호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알고 있으며 읽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31.2%(24명)로 나타난 반면, 알고는 있으나 관심 있게 읽은 적은 없다는 답변과 법률이 제정된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을 합하면 68.8%(53명)로 나타나고 있어 기본교육과정에 법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11*〉 피해자대책에 대한 각종 제도 인식

(단위 : %)

구 분	문서나 책자를 통해 본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교양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별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어 모르고 있다.	합계
정보제공, 신변보호, 초기상담,협력 체계구축	20명(26%)	50명(64.9%)	4명(5.2%)	3명(3.9%)	100%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19명(24.7%)	46명(59.7%)	10명(13%)	2명(2.6%)	100%
피해자 서포터제도	63명(81.8%)	1명(1.3%)	10명(13%)	3명(3.9%)	100%

정보제공・신변보호・초기상담・협력체계구축 등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찰은 금년 9월부터 일정한 강력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전담해서 상담・신변보호・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피해자서포터」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피해자서포터」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경찰은 지방청・경찰서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문서나 책자를 통해 본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와 정확히는 아니지만 교양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답변이 각각 26%, 24.7%, 81.8%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피해자서포터제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대책이나 각 지방청・경찰서 피해자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被害者對策에 대한 平素 認識

아래 항목은 위 표 〈표 2-8〉에 의한 조사내용이다. 즉 피해자대책에 대한 경찰관의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이다.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표시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서 그 개선책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1) 범죄피해자는 이론상 경찰의 협력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에게 성가신 존재일 경우가 많다라는 질문에서 범죄피해자는 이론상 경찰의 협력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에게 성가신 존재일 경우가 많다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31.2%로 나타나 이는 아직도 피해자 보호에 관해 얼마나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라기보다는 상담기관 등 민간의 업무이다라는 질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라기보다는 상담기관 등 민간의 업무이다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62.3%로 나타나 경찰이 민간단체의 피해자 보호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는 경찰만의 몫으로는 부족하며 경찰 및 검찰, 민간단체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경찰은 현재의 인력・예산・법제가 미흡하더라도 현재로서 가능한 피해자 대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경찰은 현재의 인력・예산・법제가 미흡하더라도 현재로서 가능한 피해자 대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67.5%로 나타나 경찰관에 피해자 보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4) 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피해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본다는 질문에는 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피해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렇다는 답변이 92.2%로 나타나 피해자 서포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5) 민사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가해자·피해자간의 합의중재를 양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는 민사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가해자 피해자간의 합의중재를 양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83.1%로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경찰업무의 특성상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중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 현실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 被害者對策에 대한 實態와 方向 認識

아래 각 항목은 경찰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대한 실태와 방향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다. 아래 내용은 〈표 2-8〉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1) 현재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심리적·형사절차적으로 충분히 보호 · 지원하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응답자(77명)의 49.3%(36명)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심리적·형사절차적으로 충분히 보호·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50.7%는 충분히 보호·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앞으로 더욱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적구제 제도에 대해서 적극 안내를 해 주고,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민간인 자매결연 주선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피해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렇다는 답변이 92.2%로 나타난 반면, 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8.9%로 나타나 그 갭이 23.3%로 나타나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피해자 서포터에 대한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찰과 상담기관 등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라기보다는 상담기관 등 민간의 업무이다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62.3%로 나타난 반면, 경찰과 상담기관 등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59.7%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경찰과 민간단체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협력이 아직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중간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중간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88.3%로 긍정적으로 나타나 대체로 중간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피해자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0명(26%),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9명(31.8%), 경찰관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17명(11%), 피해자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18명(11.7%), 사회전반의 피해자지원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0명(19.5%)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대책으로 시급이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 및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 앞으로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① 수사진행사항 통지 등 정보제공 확대되어야 한다가 36명(23.4%), 신변안전보호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22명(14.3%), 피해품 환수 등 조속한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28명(18.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22명(22.7%), 관련행정기관, 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33명(21.4%)으로 답변 하였다. 따라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대해 어느 한부분이 아니라 총제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第3節 各國 警察의 犯罪被害者保護 動向

Ⅰ. 英 國

영국경찰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본 전제는, “경찰은 피해자를 자상하게 보살피고, 피해자의 요구에 잘 부응하며, 피해자의 정서 상태에 민감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정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가 고립되고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 형사절차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 경찰에서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지원협의체(Victim Support Schemes)’를 각 경찰서 경정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간부를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형사간부가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고 있다. 일정한 범죄, 예컨대 주거침입절도・폭행・강도・절도・방화・재물손괴 등에 대해서 경찰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내용을 ‘피해자지원협의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나 가정폭력 및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이 단체에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121]

피해자지원협의체는 사건 신고 접수 후 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주선해 주게 되면 자원봉사자는 여러 가지 정서적 지원・보험금 청구요령 안내・형사피해보상청구 안내・특정문제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소개하게 된다. 범죄로 인하여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경우나 강간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별훈련을 받은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때 경찰은 범죄로 인한 정서적 충격 상황, 피해 및 손실여부, 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검찰・판사들의 사건관련 결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122]

수사절차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고는 있지만 최

121) 경찰대학, 「피해자학」, 157면.

122) 경찰대학, 전게서, 158면.

근 영국의 형사실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123] 또 영국의'피해자헌장'에는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강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경찰의 피해자보호대책과 관련이 깊은 것은, 정보제공의무・아동피해자수사시의 진술녹화・피해자신변보호 등을 들 수가 있다.[124]

Ⅱ. 美 國

미국은 1970년대 전반부터 경찰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폴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시 경찰과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시 경찰에 의해 경찰의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이 발족되었고, 1975년에는 뉴욕주의 로체스터시 경찰에도 피해자지원반과 아동학대대책실이 설치되는 등 피해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125]

전국보안관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 NSA), 전국경찰총수협의회(Inte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 IACP) 및 경찰간부연구포럼 등 경찰관련 주요 법집행기관들은 연방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가정폭력・아동학대・성범죄・고령자학대・위기개입 등 피해자 문제에 관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법무부 범죄피해자대책실(OVC)도 IACP・NOVA 등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경찰활동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대체로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영국과는 달리 경찰조직 내에 아동학대・노인학대・여성 성범죄관련 피해자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분야에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피해자의 필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NOVA를 비롯한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가운데 피해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126]

연방이나 각 주의 법에서는 피해자의 권리규정과 함께 경찰의 피해자보호의무 규정도 입법해놓고 있으며 해당 주 경찰청에서는 지침형식으로 피해자보호 지침을 마련해

---

123) 류병관, 전게논문, 62면.

124) 경찰대학, 전게서, 120면.

125) 로체스터 시경찰청 중앙수사국에는 현재 가족 및 피해자서비스과(Family and Victim Services Section) 산하에 피해자지원계(Victim Assistance Unit)와 가정위기개입팀(Family Crisis Intervention Team : FACIT)를 두고 있다;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246면.

126) 김용세, 전게논문, 249면.

놓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연방이나 주법 및 경찰청 훈령에서 규정한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127]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 집행과 수사절차에 관한 통지, 원조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의 접촉으로부터 24~48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면접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 범죄피해보상제도 등 피해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 피해자의 권리 고지, 위기개입 및 심리적인 초동조치, 응급의료서비스, 전문 상담자의 소개, 피해의 반복차단 및 보복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 등이 있다. 특히 1998년 미국 법무성 피해자보호대책실(the Office for Victims of Crime)에서는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공무원들에게 피해자응대지침(New Directions from the Field : Victims' Rights and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1998)을 마련하여 하달하였다. 여기에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구두와 문서로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를 잘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28]

그러나 미국 주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일부 경찰기관에 의해 이러한 피해자보호 프로그램이나 피해자지원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수 미국의 경찰기관들은 그들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잠재력이 있음에도 이에 충분하게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8,760개의 주경찰 및 지방경찰기관이 있지만,[129] Peggy M. Tobolowsky에 의하면 소수의 기관만이 범죄발생 후 적극적인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130]

또한 1988년에 미국 내 경찰기관의 총수들을 상대로 수행된 한 조사에 의하면 통상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지원을 위한 공식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찰관서가 총 51개 경찰관서 중 4개 관서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경찰력을 피해자지원활동에 투입하도록 경찰자원에 대한 조정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명의 경찰지휘관 중 45명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127) Laura J. Moriarty, *Policing and Victims*, Prentice Hall, 2002. p.18.

128) Laura J. Moriarty, *op.cit.*, p.18.

129) Samuel Walker, *the Police in America*, 2002. p.63.

130) Peggy M. Tobolowsky, *Understanding Victmology*, Anderson Publishing Co. 2001. p.258.

『 경찰기관은 사회적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추가적인 역할을 할 여력이 없다. 기존의 피해자관련 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 프로그램, 알콜이나 약물중독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버거울 뿐만 아니라 주정부로부터 인력이나 예산지원도 없는 상태이다. 사람들은 보다 적은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일을 해주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은 몽상이다. 많은 경찰지휘관들은 경찰활동이 경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하고 사회 복지적 문제는 사회복지기관이 맡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 경찰의 자원을 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

Peggy M. Tobolowsky는 미국 경찰의 경우 피해자지원업무를 경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기보다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추가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경찰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전문적 권위를 갖는 직업이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131]

Ⅲ. 獨 逸

독일에서 범죄피해자대책 일반의 수립과 집행은 연방과 각 주의 법무성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 경찰도 1970년대 중반 이래 경찰활동 과정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 왔다. 특히 독일 연방형사국(BKA)의 범죄연구소에 1976년도부터 피해자학 연구 분야를 설치한 후 지금까지 약 25년간을 다양한 피해자문제를 다루어 옴으로써 독일 피해자보호정책 개발에 기여를 해왔다.

Bauermann과 Schadler는 연방형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다룬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각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132]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된 이후에 연방형사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의회의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범죄피해자(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

131) Peggy M. Tobolowsky. *ibid*. pp.58-259.

132) Michael C. Baurmann und Wolfram Schadler, Das Opfer nach der Straftat-seine Erwartungen und Perspektiven. Eine Befragung vom Betriffenen zu Opferschutz und Opferunterstuaung sowie ein Bericht uber vergleichbare Untersuchen; Rudolf BalB, Michael C. Baurmann, *Opfer und Zeugen bei der Polizei*, Luchterhand, 2001, p.5.

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방형사국은 Hessen州의 법무부와 공동협력 하에 국립으로 '범죄충격-위기관리센터(Trauma und Krisenzentrum)'을 건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기에 이르렀다.[133]

1995년 독일 연방형사국은 그 해를 '범죄피해자보호 및 범죄와의 전쟁(Opfer und die Kriminalitasbekampfung)'의 원년으로 기치를 내걸고 범죄피해자를 수사하거나 기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한 바 있다.[134]

『① 피해자의 권리는 헌법사 인간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과연 피해자의 권리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적 예방책은 무엇보다도 피해자보호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범죄예방 수준이 각국과 비교하여 타당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찰과 사법기관은 범죄피해자, 피해자로서의 증인, 그 외의 일반 증인 등에 대한 보호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그들과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감수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잘 제공해주어야 하고, 신뢰를 심어주어 좋은 인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경찰과 사법기관은 사건진행과정에서는 물론, 사무실의 구조나 설비도 피해자나 증인의 대리인에게 편안한 기분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⑤ 경찰과 사법기관은 사후에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관하여 각 단계별로 적정 시점에 피해자가 관련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⑥ 심각한 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 피해자지원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상을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좋은 의료시설이 요망된다.

---

133) Michael C. Baurmann und Wolfram Schadler, *Ein Trauma-und Krisenzentrum. Konzept fur eine Bund-Einrichtung yur Betreuung von tramatisierten Oprerm und Verletaten*. In : Kriminalistik, 1998, 52, 3, pp.154-161.

134) Michael C. Baurmann und Wolfram Schadler, *Opferbedurfnisse und Opfererwartungen*, 1996, pp.87-89; Rudolf BelB, Michael C. Baurmann, *Opfer und Zeugen bei der Polizei*, Luchterhand, 2001, pp.6-7.

⑦ 가해자-피해자 화해절차를 밟더라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를 물어서 요구가 있으면 그 절차진행에 들어가야지 그 의사에 반해서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

1998년 독일 Hessen주의 수도인 Darmstadt 경찰본부(Polizeiprasidium)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Pro-Opfer'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보호에 전문성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범죄통제 및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집단(Arbeitgruppen)과 통제집단(Kontrollgruppe)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가 하면, 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로고(Logo) 및 표어를 제작하고 피해보상 법률에 관한 안내서를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서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추진하였고,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내부와 외부에 이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위하여 강연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도 협력을 추진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언론에서는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주민의 신뢰도 강화되었다고 잇달아 보도하였다.[135] 또 이러한 피해자보호활동의 성공적 수행은 피해자의 범죄 신고를 촉진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경찰행정의 협력자(Verwaltungsnahe)'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았다.[136]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산하 50개 지역경찰서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보호위원(Opferschutzbeauftragte)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민간자원봉사자인 피해자보호위원은 경찰이 전문적 피해자보호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한편, 쾰른대학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Victim'이라는 특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모든 경찰관이 범죄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대응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나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직 설립에도 경찰이 적극 관여하였다. 대부분의 경찰서는 동영상 및 음향송수신장치에 의

---

135) "Polizei verbessert professionelle Umgang im Prasidiumbereich mit Opfern und Zeugen", Main-Echo 25. 8. 1998; "Priject : Besserer Umgang mit Opfern und Zeugen - Vertauen der Bevolkerung in die Polizei soll gestarkt werden," Offenbach Post 26. 8. 1998, p.138.

136) Hans-Georg W. VoB, *Professioneller Umgang der Polizei mit Opfern und Zeugen*, Luchterhand, 2001. p.23.

한 신문 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으며, 어린이 피해자 또는 증인을 위해 놀이방 처럼 꾸며진 조사실도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137]

독일의 경우 경찰의 증인보호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각 주간의 '공동지침'으로 각 기관의 권한의 분담과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는 주거의 안전 확보나 이사 등과 같은 생활환경 변경에 따른 부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증인보호를 위하여 개명과 같은 인적사항 변경까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138]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독일 경찰과 검찰은 범죄발생 시나 범죄 신고 접수 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위험성을 예측하여 확정하는 활동을 중시한다. 구체적인 위험상태의 평가에 고려하고 있는 요소로는 범죄행위의 종류와 경중・행위자의 위험성・행위자의 환경・증인의 인적사항・소송절차의 진행상황 등이라고 한다.[139]

한편, 독일 경찰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자 접촉 시 수행해야 할 임무와 활동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140]

『①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우에 있어 상호공평하고 동등한 지위의 보장, ② 적정하고도 전문적인 개입, ③ 투명한 사건처리, ④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활동에 우호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그를 통한 사건의 실체 및 피의자 파악, ⑤ 방범계획 및 방범조치의 기초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여 일반인에 대한 피해예방정보로 제공, ⑥ 피해자지원을 통한 국민 경제적 손실의 감소, ⑦ 범죄를 통하여 야기된 피해와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⑧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2차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 ⑨ 이해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도움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개개인의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줄 것, ⑩ 상담을 통하여 다른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적절하게 안내 및 연계를 시켜 줄 것, ⑪ 형사소송법이나 피해자보호법 등에 의한 제반 권리나 형사절차 진행 등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안내할 것.』

---

137) Innen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Opferschutz/ Opferhilfe in Nordrhein-Westfalen*, 1999.

138) 안경옥, "독일의 형사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제11호, 1999. pp.341-342면.

139) 하태훈,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피해자학연구, 1995, 한국피해자학회, 115면.

140) 경찰대학, 전게서, pp. 168-169면.

Ⅳ. 日　本

일본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여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 적용토록 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기하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경찰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고 각종 정책의 기획·조사 외에, 피해자 대책 전반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적 시책으로, 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② 상담 및 카운슬링 체제의 정비, ③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부담 경감, ④ 피해자의 안전 확보 등을 설정하고서 피해자 특성에 부응하는 피해자보호시책을 펴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성범죄피해자, 소년범죄피해자, 악질상법 피해자, 폭력단범죄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 배우자의 폭력사안이나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으로 유형화하여 대처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활동상을 살펴본다.

1. 被害者에 대한 情報提供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법률상 구제절차·피해자연락제도·범죄피해급부제도·각종 상담창구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피해자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피해자연락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피의자를 검거한 장소·피의자의 성명·연령·기소 및 불기소 등의 처분결과·기소된 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신고접수 후 약 2개월, 뺑소니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약 3주 후에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 및 피해자상담은 '교번'이나 '주재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141]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자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용원 지정

141) 이 교번이나 주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관들도 피해의 회복이나 피해의 확대방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범상의 지도연락, 경찰에 대한 요망사항의 청취,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상담내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선우,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 사회과학연구 제11집, 2001. 151면.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수사경찰관이 아닌 다른 지정된 경찰직원이 전문적인 피해자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종 지원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一般的 被害者 相談活動

중대사건의 발생 직후에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한 대응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심리학 등 전문지식과 상담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심리상담자를 배치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정신과의사와 민간상담자를 연결하기도 한다. 특히 1989년부터는 도도부현 경찰에 경찰종합상담실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담전용전화(#9110)를 설치하고 전화에 의한 종합적 상담을 접수하고 있는 바,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성범죄피해・소년문제・악질 상법범죄에 의한 피해・폭력단에 관한 피해・교통사고 피해 등에 관한 상담 등이다.[142]

일반적으로 경찰서 상담실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사정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응접세트를 갖추거나 조명이나 내부시설을 개조하는 등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서・지구대 등의 경찰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저항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동식 피해자 진술청취실'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대책용 차량을 활용해서,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여 그들이 원하는 편한 시간대에 상담을 하거나 피해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3. 女性 捜査警察官의 配置 活用

성범죄의 피해자가 수사의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희망하는 성별의 경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유로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경찰본부의 성범죄 수사지도계나 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담당부서에는 여성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수사에 임하도록 해오고 있다. 특히 도도부현 경찰본부에 '성범죄수사 지도관' 및 '성범죄수사 지도계'를 설치해서 성범죄 수사의 지도・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수사관들의 주요 임무로는, 피해자로부터의 사정청취, 증거채취, 증거품의 수령, 병원 진료 등에의 보조, 수사상황의 연락 등이다.

142) 최선우, 전게논문, 152면.

성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성범죄 피해신고 110'의 전화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자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여성경찰관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 428개의 파출소를 여성상담 파출소로 지정하여 여성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여성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담자의 요망에 따라 가정방문도 실시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도 돌아주는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철도경찰대에 '여성피해상담소'를 두고 치한 등의 성범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여성을 상담하고 그 피해신고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경찰대의 여성피해상담소는 전국에 8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4. 少年 被害者에 대한 支援 活動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에 각 도도부현 경찰본부 및 각 경찰서에 피해 소년의 상담을 위한 전용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전화 상담이나 면접상담을 하고 있다. 이 때 면접 장소는 소년상담실 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마련하고 있으며 타인의 접촉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정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소년보도업무 담당자인 직원에게, 유관기관에 인계가 필요하면 유관기관에 각각 인계하여 보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피해 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소년 Support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범죄로 인해 정신적 타격을 입은 소년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보호자와 협조하여 소년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가정을 포함한 주위환경을 조정해주고 적절한 지도나 조언, 카운슬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년 Support Center'가 전국 도도부현 경찰에 설치되어 소년 보도직원이나 소년 상담 전문직원을 중심으로 피해 소년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143]

5. 惡質 商法犯罪 被害者의 保護 活動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상거래 사기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과

143) 일본 경찰에서는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카운슬러 등의 전문가를 vlgothtuss의 '카운슬링 어드바이져'(counseling adviser)로 위촉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피해소년 서포터(supporter)'로 지정 피해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지도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본부에 '악질 상법범죄 피해신고 110번'등의 전용 상담전화나 상담 청구를 설치해,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내용으로는 해약제도에 관한 지도, 피해회복에 관한 지도, 피해방지 대책의 지도 등이다. 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의 소비자행정 담당과나 소비생활 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제휴를 하면서 소비자 피해실태를 조기 파악하여 수사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기의 경우는 경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 상담을 행하고 있다.

6. 交通事故 被害者의 保護 活動

교통사고로 인해서 종래에는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경제적의 피해가 주로 문제가 되었으나 근래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도도부현 경찰본부 및 경찰서에서는 '교통상담계'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담내용으로는, 보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요 설명, 피해자 지원조직 및 카운슬링 기관의 소개, 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와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등이다.

또한 뺑소니 사건의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에게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수사상황, 검거상황, 처분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하고 있으나 경찰서에 따라서는 그 대상을 중상자에게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본부의 교통수사 담당과 에서는 교통과에 수사 지도관을 배치해 경찰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태 등으로 사정청취를 할 수 없는 사고나 당사자 간 상호 엇갈리는 진술이 있을 경우 진술의 정확성을 밝혀내기 위해 집중적 수사를 전개하기도 한다. 또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사정청취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향을 충분히 배려하는 형태의 수사를 하고 있다.

7. 有關機關과의 *Netw ork* 形成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 외에도 지방검찰청, 변호사회, 의사회, 임상심리사회, 일반 행정기관의 상담기구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지원연락협의회'가 1999년 2월말까지 전 도도부현에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락 협의회의 구성으로 인해 각 기관, 단체 간 상호 제휴를 강화해,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적절한

기관 등을 소개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에 답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긴밀한 제휴를 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을 돕기 위해 카운슬링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 피해자원조단체가 전국에 2002년 현재 2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체 상호간 혹은 경찰과 이 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전국피해자 Network'가 구축되었다.

또한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를 선정하여 지정하는 '공적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경찰본부장등은 이렇게 지정된 단체에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게 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범죄피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해당 단체에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第3章 警察의 被害者保護에 대한 問題點

본 논문에서는 경찰 피해자보호는 곧 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바, 경찰의 피해자수사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하여보고자 한다. 즉, 피해자수사의 문제를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의식과 행태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는 미시적 접근방법으로서 수사경찰관의 인식상의 문제, 수사경찰관의 수사방법상의 문제와 피해자 수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사환경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는 수사 환경상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은 경찰의 피해자수사활동의 개선이 어느 한 가지 면만의 변화로는 어렵고, 수사경찰의 의식·행태와 같은 미시적인 부분과, 각종 제도·법률과 같은 거시적인 부분 등이 총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第1節 認識上의 問題

인식(consciousness)이란 사물을 깨닫는 마음의 작용이자 사물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뜻함과 동시에, 일체의 정신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보호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은 종래 수사활동에 있어서 다루어왔던 것처럼 피해자를 형사절차의 변방에 있는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한 인격체이자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와 원조를 받아야 할 중요한 대상자로 볼 수 있는 理智·感性·意志를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피해자 보호적 태도를 지녔다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심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보호의 문제는 우선 수사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존중정신이 미약하다는데서 출발한다. 수사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검거에 주력하는 나머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쉽고 심지어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기까지 한다. 그를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이자 범죄충격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목적적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범죄해결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 취급하기가 쉬운 것이

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라는 존재를 범죄수사나 피고인의 유죄입증에 활용되는 보조수단으로만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은 피해자를 자주적 권리 향유의 주체 내지는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다. 범죄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 하였을 때 대부분 경우 경찰이 피해자와 최초로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 임장하는 경찰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와 접촉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최초 대응시의 충실한 피해자보호활동은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범죄수사 시 적극적인 협력을 얻는 계기가 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144] 이에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현행 경찰 피해자수사의 미래를 밝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요청된다고 보이는 부정적 측면을 차례대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Ⅰ. 被害者에 대한 一般的 認識

1. 被害者의 人權에 대한 認識未洽

국가 형벌권 실현의 목표로서 객관적 진실규명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절차는 법공동체의 기본적 법적 확신인 기본권존중과 공평성의 요청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145]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의 요청이 대립하는 경우 어느 선에서 이를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범인검거'와 '시민의 사생활보호'는 형사소송의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의 양대 이념의 표현인데, 이념이 충돌할 경우 과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사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시민의 개념 속에 범죄피해자가 포함될 것인가와 더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의 기본

144) Bree Cook, Fion David and Anna Grant(eds),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Police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ome in Austrailia, pp.46-47.

145) 신동운, 전게서, 11면.

적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는 피해자수사 시 피해자보호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기에 경찰의 피해자수사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라고 보인다.

2. 被害者에 대한 否定的 視覺

이 항목은 수사경찰이 일반적으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다. 여기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927명)의 90.1%(836명)가 '피해자의 처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고려하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일반적 수사활동 시 수사경찰관이 피해자보호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경찰관들은 수사를 진행할 때에 피의자의 처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의 처지에 신경을 쓴다고 답한 경찰관은 89.6% 이었는데 비해 피의자의 처지에 신경을 쓴다고 답한 경찰관은 67.2% 정도에 그쳤다.

〈표 *3-1*〉 경찰의 피해자입장에 대한 이해

(단위 : %)

구 분	전혀 신경안씀	신경 안쓰는편	그저 그렇다	신경 쓰는편	많이 신경씀	합 계
피해자의 처지	0.7	1.7	8.0	57.4	32.2	100.0
피의자의 처지	2.7	7.0	23.1	52.9	14.3	100.0

※ 출처: 이정수, "수사경찰관의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03.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처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곧 경찰수사에 대한 피해자만족도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의 피해자수사는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의식이나 태도, 행태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수사관행, 법률, 제도와 같은 외부적 수사환경의 영향을 아울러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위 표의 '범인검거 시 참고인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라든가, 수사행태에 관한 문제점에서 언급될 것인데, '경찰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Ⅱ. 搜査節次上 警察의 認識

1. 犯人檢擧를 優先하는 姿勢

수사경찰관의 참고인 등에 대한 인권의식을 '참고인 등이 받는 불이익'과 '범인검거'라고 하는 두개의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인의 검거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참고인 등이 다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설문에 응답한 수사경찰관(183명)이 53%(97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전통적인 범죄 통제적 형사사법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범인검거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참고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거나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함으로써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인 32.2%(59명)보다 20.8%나 높게 나타났다(아래 표 3-2 참조).[146]

그러나 2007년 6월 〈표 2-8〉 조사에 의하면 경찰은 본질적으로 피해자 보호보다는 범인의 검거를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55.8%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4.2%로 나타나 피해자보호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래 경찰관이 피해자 인권보호보다는 여전히 범인검거라는 응보적 관점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147]

〈표 *3-2*〉 수사경찰의 의식 I

(단위 : %)

구 분	전혀 동의없음	동의 않는편	그저 그렇다	동의 하는 편	전적으로 동의함	합 계
총 계	8.7	23.5	14.8	47.5	5.5	100.0

※ 출처 : 박우현,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7. 47면.

146) 경찰의 의식에 관한 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전 자료를 참고하였다; 박우현,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p. 46-47면.

147) 그러나 조사 대상, 인원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997년 연구 결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 被害者의 犯罪誘發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범죄유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는 수사경찰관들은 피해자수사에 있어서 선입견(prejudice)나 고정관념(stereotyping)을 가지기 쉽다. 이러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수사에 있어서 제2차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범행결과에 대한 유책성 여부를 안일하게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범죄 종류별로 전통적으로 답습하여 내려온 '신화적 고정관념'을 버리고서,[148] 피해당시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당시의 상황과 여건, 범행의 동기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범행 관련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설사 범행을 유발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은 삼가야 피해자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노인을 상대로 피해자조사를 하는 경우에 수사경찰관은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실시된 연구결과에서는 피해자 유책성을 부정하는 답변이 28.2%인 반면, 이를 긍정하는 답변의 아래 표〈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8%에 이르고 있다.[149]

이는 수사경찰관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범죄피해 결과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

148) 예컨대 강간죄의 피해자는 보통 행실이 나쁜 여성이라고 본다든지, 혹은 전혀 책임감이 없는 부녀자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것들로서 이와 같은 획일적 사고는 일종의 '강간신화'에 해당하므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M. Amir, Patterns in forcible Rape, 1971 : 宮澤浩一, "被害者學 硏究", 장규원(역), 수사연구, 1997년, 79면 :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34호), 1998, 여름호, 78면.

149) 박우현, 전게논문, 45면.

〈표 *3-3*〉 수사경찰의 의식Ⅱ

(단위 : %)

구 분	전적으로 부동의	동의 않는 편	그저 그렇다	동의 하는 편	전적으로 동의함	합 계
경제범죄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자이다	5.0	23.2	16.0	48.6	7.2	100

※ 출처 : 박우현,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7. 45면.

이러한 범죄피해에 대한 피해자 유책성 인식은 강간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사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이정수의 1991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책성을 긍정하는 답변이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전체응답자(934명)의 23%, 강간사건의 경우에는 57.8%에 이르렀다고 한다.[150]

이러한 수사경찰관들의 의식이 피해자에 대하여 2차적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수사경찰관이 성폭력사범수사 시에 선입견을 가지고서 피해자에 대해 유책성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수사경찰의 현장수사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추정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수사경찰이 다음과 같은 행동한 것을 그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여관에 따라간 경우에는 사정이 어떠하건 간에 피해자가 강간을 유발한 것으로 의심하며 질문하는 사례,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강간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행실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진 나머지, "혹 범인이 강간을 할 때 피해자가 좋아서 응한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사례,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므로 和姦일 가능성으로 보고 조사하는 사례 등과 같은 것이다.[151]

그러나 2007년 6월 〈표 2-8〉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나 경제범죄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자이다라는 질문에 35%는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65%를 답변하여 가해자에게 원인이 있다는 견해가 30% 더 많았다. 따라서 1997년 이후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유책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150) 이정수, "수사경찰관의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1호, 1991. 60면.

151)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2차적 피해", 한국피해자학회 제8호, 1999. pp. 180-182면.

3. 國民의 犯罪被害申告 忌避

경찰의 수사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범죄신고와 적극적 피해진술과 같은 국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수사개시의 원인 중 수사기관 외의 타인의 체험에 의한 범죄사실 신고행위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는 비중이 전체 형사사건의 절반이 넘는 까닭이다.

범죄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시민의 협력이 없으면 수사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의 개시전후를 막론하고 국민의 협력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2005년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수사의 단서로서의 고소・고발・진정・타인신고・피해자신고까지를 망라한 광의의 범죄신고[152]의 비중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발생범죄의 51.9%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절반가량은 피해자 등의 신고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그 중 현행범 체포형태로 수사단서를 포착한 것이 37.4%이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수사의 단서를 얻은 것이 10.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분석한 이러한 범죄신고율 분석은 경찰에서 접수・처리한 총 범죄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 처리된 사건 및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였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암수범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2005년 발생한 범죄 중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단서를 살펴보면, 전체 범죄의 59.5%, 형법범의 71.0%가 신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52) 여기서 피해자신고와 고소가 구분이 되고 있는 바, 전자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사실만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범인과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여기서 미신고라 함은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경찰이 수사를 통하여 이를 인지(認知)하여 입건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못한 많은 다른 범죄피해행위는 제외되고 있다.

〈표 3-4〉 발생범죄의 수사단서별 현황

구 분		총 범 죄	형 법 범	특 별 법 범
계		1,733,122(100.0)	790,847(100.0)	942,275(100.0)
현 행 범		481,338(27.8)	168,821(21.3)	312,517(33.2)
신고	소 계	1,030,460(59.5)	561,615(71.0)	468,845(49.8)
	피해자신고	511,754(29.5)	262,887(33.2)	248,867(26.4)
	고 소	276,536(16.0)	255,702(32.3)	20,834(2.2)
	고 발	142,178(8.2)	4,809(0.6)	137,369(14.6)
	자 수	5,947(0.3)	1,057(0.1)	4,890(0.5)
	진정탄원	18,197(1.0)	14,148(1.8)	4,049(0.4)
	타인신고	75,848(4.4)	23,012(2.9)	52,836(5.6)
미신고	소 계	221,324(12.8)	60,411(7.6)	160,613(17.1)
	불심검문	106,875(6.2)	5,094(0.6)	101,781(10.8)
	피해품발견	723(0.0)	708(0.1)	15(0.0)
	변사체	649(0.0)	509(0.1)	140(0.0)
	탐문정보	39,037(2.3)	20,167(2.6)	18,870(2.0)
	여 죄	27,979(1.6)	15,908(2.0)	12,071(1.3)
	기 타	46,061(2.7)	18,025(2.3)	28,036(3.0)

※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2006. 214면.

〈표 3-5〉 중요 강력범죄 피해자의 범죄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발 생 건 수	5,170	7,316	188,780	285,363
피해자신고	3,259	2,689	138,442	102,305
신 고 율	63.0%	36.8%	73.3%	35.9%

※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2006. 215면.

그러나, 강간범죄(36.8%)나 폭력범죄(35.9%)와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암수범죄화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암수범죄의 발생원인 으로는, ① 피해자의 법률상식의 결핍

② 사건의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염려 ③ 경찰의 정밀조사로 인한 자신의 범행노출의 염려 ④ 보복의 우려[153] 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154] ⑥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155]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보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266명 중 자신의 피해사실을 미신고한 181명의 미신고 사유를 조사해 보니, 59명(32.6%)이 '피해가 경미해서'라고 답하였고, 29명(16.0%)이 '신고절차가 불편해서'라고 답하였으며,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같은 수사인 24명(13.3%) 이었으며, 나머지 23명(12.7%)은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어서'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56]

또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조사해 본 결과,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한다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 줄 것이다'라는 설문에 46.6%가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 53.4%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조사결과가 있어서 시민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57]

이러한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 하는 데는 피해자를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점과 함께 수사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친절과 무관심으로부터 오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형사사법기관에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자의 심리적·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한편, 신고자들이 보복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제공해주는 조치들도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第2節 方法論上의 問題

행태(behavioral patterns)라 함은 일정하게 지속되는 특정한 행동의 성향을 말한다. 태도(Attitude)와 행태와의 차이점은 전자가 일정하게 지속되는 심적 성향임에 비하여

153) R. Quinney, *The Problem of Crime*, New York, Dodd Meadl Company, 1973, pp.121-122.

154) P.H. Ennis, *Crime Victim & the Police*, the Sociology if Crime & Delinquency, 1970. p.78.

155) G. M. Sykes, *Criminolog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d. 1978. p.76.

156)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신고보상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99-18, 1999. 135면.

157) 최인섭 외2, 전게논문, 112면.

후자는 일상생활에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나타나는 개인의 구체적 행동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사경찰의 피해자수사 행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피해자보호적 관점과 증거수집 활동의 관점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피해자 보호적 관점에서의 수사행태는 범죄신고의 대응, 정보제공, 현장보존, 현장에서의 위기개입, 신변안전조치, 압수수색 행위 등을 들 수 있겠는 바, 각 단계별로 그 문제점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증거수집 차원의 피해자수사 행태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상호교감 문제, 피해자진술의 진실성판단, 피해자진술의 정확성판단, 피해자 기억의 망각에 대한 대처, 비협조적인 피해자에 대한 대처 등이 문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捜査節次上의 一般的 問題

1. 情報提供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형사소송법(제258조, 제259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5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5조 4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등에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범죄수사규칙(제66조)·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18조)·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과 동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나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수사관서에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범죄수사규칙 제66조에 따라 처리지연 및 사건이송에 따른 중간통지, 최종 처리결과에 관한 통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경찰관서에서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민원인은 해당 경찰관서 및 그 감독관청인 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처리지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동 시행령 제35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의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 시행령 제50조). 이러한 민원인의 시정요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동 시행령 제58조)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익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러한 구제적인 수단

을 활용하는 것을 보기 어려운데 그것은 민원인들이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통보해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잘 모를뿐더러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호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신청권이 있음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어 결국 수사경찰관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있기에,[158] 결국 경찰관들이 이러한 통보의무를 잘 숙지하지 못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명백한 이유로 인해 피해자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권(형사소송법 제133 내지 134조, 제333조)이 있다는 것도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정보 중의 하나라고 보이지만 형사소송법이나 범죄수사규칙 등의 규정에는 압수증명서 등을 교부해주어야 한다는 것 외에 피해자가 압수물에 대해서 갖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압수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피해자의 신원·사생활의 비밀보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수사 및 재판 시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이 가능하다는 내용(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아동복지법 제28조), 재판 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각 수사경찰관들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제대로 권리고지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상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제도와 같은 범죄피해보상을 위한 제반 제도의 운영도 수사절차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때 피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사에 임하는 경찰관들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의 보상의 요건, 내용, 한계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충분히 안내를 해

158) 안영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법무부,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2001. 153면.

주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159]

이처럼 경찰의 빈약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게 되는 피해자들은 사후에 경찰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인 노력과 함께 수사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에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① 가해자의 수사결과, ② 공판기일, ③ 형집행, ④ 보호관찰집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2. 現場 危機對策 未洽

최근 절도나 단순강도 범죄의 경우 인질강도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검거 과정에서 인질범을 효과적으로 분리시켜 검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도 있어 피해자보호에 있어 취약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근래의 인질강도 사건의 발생추세를 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율이 연평균 74.4%라고 한다.[160] 근래에는 히로뽕 등 마약 중독자나 정신병자, 경제파탄이나 인간관계파탄에 의한 우발적 인질사건의 발생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인다.[161] 미국 CIA에서는 인질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질협상팀을 구성하고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전문협상팀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처음 현장에 임하는 수사관이 현장상황분석을 정확히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교육훈련이 우선 요청된다고 보인다.

---

159)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쉼터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5회 이상 실시한 결과 피해자들이 중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① 취업·진로·경제문제, ② 정서문제, ③ 법률문제(이혼, 호적), ④ 보호, 신변안전문제, ⑤ 의료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법률문제나 신변안전문제 기타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적절한 법률정보와 지원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됨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2001. 184면.

160) 2000년 한 해 동안 인질강도 사건은 총 73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74명이 검거되었고, 약취유인사범은 352건이 발생해서 368명이 검거되었다; 경찰청, 인질범죄 대응요령, 2001. 5면.

161) 경찰청, 전게서, pp. 3-6면.

〈표 3-6〉 5대 강력범죄 사건추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발생	330,304	383,976	520,763	532,243	475,369	497,066	455,640	487,690
	검거	290,160	349,653	385,087	396,885	400,359	399,119	363,369	354,121
살인	발생	963	976	941	1,051	957	998	1,083	1,061
	검거	975	993	955	1,076	994	1,038	1,041	1,023
강도	발생	5,516	4,972	5,461	5,692	5,906	7,292	5,832	5,170
	검거	5,316	4,885	4,524	4,670	5,957	7,165	4,937	4,022
강간	발생	5,978	6,359	6,855	6,751	6,119	6,531	6,950	7,316
	검거	5,745	6,164	6,139	6,021	5,522	5,899	6,321	6,441
절도	발생	91,438	89,395	173,876	180,704	175,457	187,352	155,311	188,780
	검거	57,393	60,315	68,564	78,777	125,593	114,920	80,555	80,725
폭력	발생	226,409	282,274	333,630	338,045	283,930	294,893	286,464	285,363
	검거	220,731	277,296	304,905	306,341	262,293	270,097	270,515	261,910

※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2006. 211면.

한편,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격리·체포함으로써 지속적·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가정폭력범죄(domestic violence)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 폭행이나 아동학대의 경우인데 이 중에서 경찰에 대한 보호요청과 관련하여 미묘한 입장에 있는 것이 배우자 폭행에 의한 가정폭력사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년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487호)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5436호)을 제정함으로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폭력행위의 제지·격리 조치, 관련보호시설에 인도, 임시조치신청 권고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찰권발동의 한계이론과 관련된 전통적인 입장에 따르면 시민들의 사적인 영역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회분위기는 어느 정도의 가정폭력은 순수한 가정문제로서 국가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라는 사회분위기가 있었다. 심지어 미국의 결혼과 가정문제에 관한 전문적 간행물에서조차 1971년까지 배우자 폭행문제를 다루지 않았었다.[162]

162) 미국의 가정문제에 관한 간행물인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등에서는 1971년까지 공식적으로 이러한 배우자 폭행을 다루지 않아왔으나 1970년대 중반에 페미니스트 그룹을

이후 미국에서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 보호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많은 경찰기관은 가정폭력에 따른 신고를 받게 되면 출동 및 개입에 신중을 기하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방 배우자의 체포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적 가정폭력을 경미한 범죄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하거나 수사를 중단해주기를 바라는 사례도 있었다.[163]

가정폭력에 관한 경찰권행사와 관련된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폭행을 행한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해자격리나 배우자간 상호화해·권고 등도 아니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164] 가정폭력사건에의 경찰 개입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자의 체포가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많은 주들이 배우자를 폭행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없는 체포 및 영장에 의한 체포 등을 허용하는 입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곧 가정폭력사건에 경찰의 즉각적 대응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도 가정폭력사건에 비교적 안일하게 대처하는 성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도 경찰관이 신속히 개입하여야 할 일종의 위기상황의 한 유형이라고 보고, 평소의 위기개입훈련을 통하여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3. 被害者의 身邊

1999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그 분석결과에 따르면 범죄신고의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피해자보호대책을 주창하고 입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Harvey Wallace, *Victimolgy*, Califonia State University, 1998. p.157: John E. O'Brien. *Wemen Abuse : Facts Replacing Myths*, 33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362-398.

163) 2000년도에,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 형사계에서 피해자인 부인에 의해 가정폭력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한 남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대해 거칠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

164) The Police Foundation and the Minneapolice Police Department의 조사에 의하면 체포되었던 가정폭력 피의자의 재범율은 10%였던 반면,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피의자의 재범율은 24%, 그리고 화해가 권고된 피의자의 재범율은 19%였다고 한다.

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범죄신고자에게는 범죄피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피해자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연구조사의 설문에 응했던 시민의 83.4%가 '범죄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면 보상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해도 범죄신고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문에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165] 범죄신고자가 보호를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면 그 중에 무엇보다도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명예나 사생활 보호(18.0%), 생계 보장(5.7%), 직장 문제(5.5%) 보다도 보복피해를 당할 가능성으로부터의 보호(66.5%)가 압도적인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수사기관에서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20.7%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응답자의 51.8%는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범죄신고자가 보복의 위협을 느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관심을 갖고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가?'라는 설문에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는 38%인데 비하여, 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는 58.9%에 달하였다.[166]

이를 토대로 볼 때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렵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성폭력범죄사건의 증인(피해자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정범죄에 대하여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에 제공하거나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을 한 범죄신고자 및 그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시고자 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신변보호조치를 현재의 경찰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보다 중요한 사건이 빈발할 때 경찰력 투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협박사건의 경우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소홀히 생각하기 쉽고 우선 당면한 일에 집착하기 쉽고 결국 늑장

---

165)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신고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1999. 170면.

166) 위 설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답변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적당히 보호해 주는 시늉만 할 것이다(38.3%) ② 업무가 바쁘다면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13.7%) ③ 도리어 짜증을 내며 신고자를 원망할 것이다(6.9%).

대응으로 이어져 적정한 보호의시기를 놓치므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4. 押收 · 搜索의 濫用

피해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이라도 범죄의 증거물로 될 경우에는 압수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강도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집에서 범인이 유류한 증거물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할 수가 있고, 절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유한 물건이 증거물로 압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수사경찰은 수사상 목적만을 의식한 채 압수수색이 끝난 후 현장 정리도 하지 않고 철수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수사경찰관의 행동요령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압수물의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고, 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가환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34조),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미리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통지는 압수가 행해진 다음 상당시간이 흐른 후의 일어어서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전에 이러한 가환부 신청권 등을 고지해주는 제도의 마련이 요망된다.

Ⅱ. 初動搜查過程의 問題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수행된 한 연구결과의 수사경찰의 대응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만족도(victim satisfaction) 결정 변수로는 경찰대응의 신속성 여부(expectation of response time), 수사경찰의 의지와 노력정도(investigative effort), 경찰의 전문성(professionalism)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67] 즉 범죄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자세와 전문성이 피해자인

---

167) Steven G. Bran이 and Frank Horvath, "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Perform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19. pp.109-115;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교육수준·성별·피해자의 소득수준 등은 범죄피해자의 만족도와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수사서비스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Steven G. Bran이 과 Frank Horvath는 경찰관의 출동이 피해자 예상시간과 같거나 느렸을 경우에는 각각 만족도가 63%, 22%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것은 경찰이 무엇보다도 범죄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며 또한 경찰에 대한 신뢰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표는 우리나라 경찰이 범죄신고에 대응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표 3-7〉 112접수 도착시간현황

(단위 : 건수,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건수	2,937,212	3,143,484	3,332,025	3,755,008	4,389,349	4,617,985
5분 이내 (비율%)	2,704,498 (92.0)	2,915,805 (92.8)	3,053,468 (94.1)	3,192,814 (85.0)	3,527,632 (80.1)	3,780,591 (81.9)
10분 이내 (비율%)	2,904,864 (98.9)	3,101,470 (98.7)	3,219,551 (99.3)	3,648,488 (97.2)	4,171,444 (96.6)	4,503,099 (97.5)

※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06. 142면.

우리나라 경찰의 2002년 범죄현장 출동시간을 보면, 출동건수 중 3분 이내에 도착한 경우가 67.4%, 5분 이내에 도착한 건수가 94.2%에 해당하였다. 현장출동의 신속성 측면에서 보면 가히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168] 이러한 경찰의 높은 대응력은 '차량컴퓨터단말기(MDT : Mobil Data Terminal)'나 '차량위치자동표시시스템(AVL : Automatic Vehicle Location)'과 같은 첨단 장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69]

최인섭 등이 실시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태도조사에서도'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한다면 경찰은 즉시 출동할 것이다'라는 설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그런 편이

168) 미국은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친 조사결과 구조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6분 안에 현장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약 90%에 달했다고 한다; 장규원,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한국공안행정학회회보 제8호, 248면.

169) MDT는 이동 중에 현장에서 사람, 차량, 운전면허 등에 대한 신속한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출동현장약도와 같은 자료도 확인이 가능한 장비로서 차량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AVL은 NDT와 연계하여 112신고센터에 설치된 전자상황판에 112순찰차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이 표시되어 사건발생시 신고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112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보다 효과적인 지휘통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경찰청,「경찰백서」2006, 154면.

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7.3%에 이르러, 부정적인 답변 28.7%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범죄신고 시 신속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0]

그러나 일정한 준비 없이 현장에 신속한 접근을 하는 것만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기에 현장분석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현장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고정관념에 따른 각종 오판에도 유념하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 분석과 전략이 없으면 신속한 현장임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초동수사를 전개할 경우에 피해자를 배려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야만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하여 얻은 국민의 신뢰를 지속시키고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12신고범죄 이용이 늘어나면서 허위·장난신고 등이 접수되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진실한 피해자에 대한 적시의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는데 따른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 경찰에서는 112신고자의 전화번호나 위치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신고자전화번호 판독장치(ANI : 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및 '위치자동판독장치(ALI : 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를 전국 주요도시 총 11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171]

〈표 3-8〉 허위(장난)·오인 신고현황

(단위 : 건수, %)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신고	3,396,749	3,522,583	4,078,925	4,763,996	5,012,017
허위·오인	220,749	193,933	223,536	230,587	223,975
비율(%)	6.5	5.5	5.5	4.8	4.5

※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06. 143면.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허위·장난신고의 비중이 2001년 6.5% 이었던 데에 비해서 2005년에는 4.5%로서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경찰이

170) 최인섭외 2, 전게논문, 112면.

171) 경찰청, 경찰백서, 2006, 142면.

ANO나 ALI와 같이 첨단장비를 활용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인다. 이렇게 허위·장난신고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력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겠다.

Ⅲ. 證據蒐集過程의 問題

범죄현장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피해자의 범행 목격진술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진술증거의 수집은 면담 후 진술조서작성을 위한 조사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두 단계 모두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면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 파악의 어려움, 피해자의 방어적 자세, 기억의 상실, 부정확한 진술, 허위 진술 등과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는 수사관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불친절한 태도 등으로 피해자가 다시금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진술증거 확보를 위한 피해자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으려면 면담 및 조사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수사기법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 경찰 수사교육에서는 이러한 점이 미흡하다.[172] 이하 진술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해 본다.

1. 第二次 被害者化

2차 피해자화라 함은 범죄행위 자체로 인한 일차적 피해에 뒤이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나 사법기관, 병원, 언론기관,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일차적 피해에 대하여 잘못 반응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173]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기관을 접촉하면서 범죄로 인한 충격에 뒤이어

---

172) 경찰 수사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는 피해자면접방법 등을 다루는 피해자수사기법이 단일 교과목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찰수사보안연구소의 형사전문화과정에 탐문수사(4시간)와 폭력피해자 및 불량청소년 상담기법(3시간), 조사기법 및 수사서류작성(10시간) 등의 교과목만이 편성되어 있어 동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통해 피해자수사에 대한 간접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교육훈련계획, 2003, 98면.

173)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172면.

형사절차 진행을 통하여 새로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절차뿐만이 아니고 공판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수사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제2차 피해자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 첫째 피해자에 대한 잦은 소환, 둘째 조사과정에서 중복질문이나 부적절한 질문 혹은 필요이상의 지나친 조사방법의 사용이나 범죄사실 증면과 무관한 조사방식의 활용, 셋째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구체적 질문, 넷째 피해자의 범죄유발행위 등에 대한 질문, 다섯째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의자 지목행위, 여섯째 지나친 비속어의 사용 등이 그 것이다.

앞서 수사경찰관의 의식·태도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되었지만 이러한 그릇된 수사경찰관의 의식·태도는 부정적 수사행태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행 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경찰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례가 있었던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경찰관이 진정인에게 모멸감, 불안감, 자괴감,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 피진정인인 수사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음은 위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정사실 판단 요지이다.[174]

『성폭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보호 내지 배려가 없을 때에는 수치심 등 제2의 고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자는 진지하고 정중하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수사에 임함으로써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해야 함은 물론이고, 당사자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성폭행 피해자인 진정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횡설수설할 경우 그 원인을 살펴, 의료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고, 진정인이 논리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옷을 벗고 덤볐다.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서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갖게 하고 나아가 향후 공정하지 않은 수사로 인하여 피해를 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 주었으며, 진정인에게 '동공이 열렸네, 약 먹었냐,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위 경찰서의 공개된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동석시켜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74)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3호, 2003.6.16. pp.111-117면.

이렇듯 피해자의 감정과 구체적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행되는 진술증거 수집의 수사행태는 피해자에게 제2차적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대하여 반감과 불신을 갖게 만든다. 그 결과 수사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회피하여 그러한 사건들이 암수범죄로 되는 것이다.[175]

2. 陳述의 判斷

우리 형법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형법 제152조 제1항, 단순위증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하는 경우(형법 제154조, 허위 감정·통역·번역죄)를 처벌하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조작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3의 증인을 매수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목적은 ① 가해자가 중한 죄로 기소되게 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진실을 얘기할 경우 피의자의 범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도 드러날 수 있는 경우 ③ 폭력조직 등의 보복위협 때문에 허위의 진술의 하는 경우 ④ 교통사고 피해자와 같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수사상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이를 규제할 만한 충분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176]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은 법정의 허위증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177] 실제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

---

175) Jean Reynolds & Jajor Mary Mariani, *Police Talk*, Prentice Hall, 2002. p.47.

176)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은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그 허위의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그릇되더라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어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이 형사소송법 제184조 혹은 제221조의 2에 의해 증거보전 청구나 증인심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증인의 신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의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은 위증죄를 구성하게 된다.

177) 1970년대 전반에 전국 검찰에서 처리한 위증관련 사건이 800~1,100건이었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연간 5,00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최상진·강지원 편저, 「법심리학의 문제」, 2003. 443면.

피해자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은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상호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자기 기억이 진실하다고 믿고 진술을 하지만 기억에 오류가 있어서 부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이러한 기억의 왜곡현상 내지는 부정확한 진술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를 든다면, ① 오보효과 ② 무기효과 ③ 고정관념 ④ 사건의 복잡성 ⑤ 각성수준과 인지의 효율성 ⑥ 정보저장 기간 등의 개념이 제시될 수 있다.

오보효과(misinformation effect)라는 것은 목격된 정보의 저장기간 동안에 그 기억의 왜곡을 초래할 만한 다른 정보가 개입하여 최초의 정보가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오보효과는 암시성(suggestibility)이 있거나 유도성이 있는 질문(leading question)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무기효과(weapon effect)라는 것은 목격자의 주의를 특별히 혼란하게 하는 특정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그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올바르게 관찰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기효과는 Maass와 Kohnken등이 행한 모의실험에서 입증이 되었는데 예컨대 범인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총기에 너무 집착하느라 범인의 얼굴을 기억 못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178]

고정관념(stereotype)에 의해서도 진술의 정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나이・인종・성별・직업・개인의 특수한 경험의 영향을 받아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목격자의 그릇된 기대(expectation)에 의해서도 진술이 왜곡될 수 있다. 또래의 청년들이 이상한 복장으로 늘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본 목격자는 그와 유사한 복장의 사람들이 범행을 하였을 때 이전에 자신이 목격한 그 자들일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복잡성(complexity)을 가질 때에도 기억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가옥에 침입한 범인이 3명일 때보다도 5명일 때의 기억이 더 부정확하며, 상황이 폭력적일수록 더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각성수준과 인지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핵심단서(central cue)와 주변단서(peripheral cue) 개념으로 설명된다. 전자는 위험상황에서 각성수준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하며 후자는 핵심단서 이외의 주변적 요소가 되는 단서를 말한다. 핵심단서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고 효율적인데 반해 주변단서에 관하여는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하다고 한다. 한편, 긴장수준이 높은 상황에서의 핵심단서 기억은 긴장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179]

---

178) Maass. A. & Kohnken, G., *Eyewitness Identification : Simulating the "Weapon Effect"*, Law and Human Behavior, 13. 1989. pp. 397-408.

이 핵심단서와 주변단서이론은 '무기효과'와 '복잡성'에 따른 진술의 부정확성 문제와도 관련된다. 다수의 범인에 의한 은행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행 내에 많은 직원이 있었으면서도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핵심단서에만 집중하는 '무기효과'와 다수의 범인의 활동으로 인한 사건의 '복잡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직원들로 하여금 사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자기 구역 범위 내에 있는 범인들만의 인상착의에 주목하라는 형태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무기효과나 복잡성을 감쇄시킴으로써 기억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180]

이러한 모든 이론들이 진술의 정확성을 방해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정작 경찰관들이 피해자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진술왜곡 내지는 부정확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피해자의 진술을 맹신한 채, 그 진술을 검증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게 될 경우 새로운 법익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제반 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

각국의 경우 아동진술의 정확성을 측정할 수 있는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는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저장기간에 따른 진술의 부정확성 이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초 기억의 자취가 소멸되고 새로운 다른 정보와 혼동되기 때문에 초래된다는 오보효과(misinformation effect)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목격진술을 통한 몽타주(Montage)의 작성은 가급적 신속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나 목격자의 구체적 정황을 무시한 채 목격진술을 받는 것에만 집착하다보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못 벗어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그 기억능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찰수사에 반감마저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179) Christianson S. & Loftus, E.F. *Memory for traumatic even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2. pp. 284-309.

180) Charles R. Swanson, Neil C. Chamelin and Leonard Rerrito. *Criminal Investigation*, McGraw Hill. 2000. p.388.

第3節 環境上의 問題

Ⅰ. 被害者保護 環境造成 未洽

피해자에 따라서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경찰서 출두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피해자를 조사하게 되는 경찰서 조사실의 구조는 다른 일반 조사실과는 달리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즉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2004년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출범하여 각 경찰서에 영상녹화시설을 구비하고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현재 이러한 환경을 모든 경찰서에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선 수사과 사무실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명예감정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피해자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드문 시정이다. 경찰서 사정에 따라 민원인 대기실을 따로 갖추어 놓은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대기실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의료적 조치도 가능한 의무실이 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여건을 갖춘 시설이 미비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Ⅱ. 被害者 人權保護機構의 未洽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1982년에 '피해자및증인보호법'이, 1984년에 '범죄피해자법'이 각각 제정되는 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격적인 지원활동이 개시됨과 동시에 연방정부에 '범죄피해자보호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 : OVC)'이 창설되어 지금까지도 연방정부의 중요한 피해자지원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181]

특히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1996년 2월 경시청에서 "피해자대책사강"이 제정되어 각

181) Peggy M. Tobolowsky, *Crime Victim Rights and Remedies*, Carolina Academic Press, 2001. p.253.

도도부현에 시달되었고, 그 해 5월 경찰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각 도도부현 경찰에도 피해자지원담당계 혹은 범죄피해자대책실 등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 수사・형사부서의 서무담당자들을 피해자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사건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피해자 연락제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다.[182]

Ⅲ. 警察과 關係機關의 協力不足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와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물론 어느 한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피해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상담소・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등과 연대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경찰, 검찰, 가정폭력상담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찰은 종래 가정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이제는 피해자보호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로서 폭력피해여성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경찰로부터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183]

182) 김용세, 「피해자학」, 2003, 111면.

183) 보건복지부, “가정폭력감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모델 개발”, 2000. 144면.

〈표 *3-9*〉 폭력피해여성의 경찰에 대한 서비스평가

(단위 : 명, %)

경찰 서비스 내용	인 원	비 율
소 득 지 원	13	6.8
법률지원 서비스	31	16.2
직업훈련 및 알선	20	10.5
주거제공 서비스	24	12.6
신변안전보장 서비스	31	16.2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지정 병원 소개	11	5.8
정신질환치료 관리 서비스	9	4.7
약물치료 서비스	3	1.6
폭력피해여성 전문의료 재활 서비스	14	7.3
진단 및 치료에 의료보호 적용 여부 문의	11	5.8
가해자 상담 교육	19	9.9
합 계	***191***	***100***

※ 출처 : 보건복지부, “가정폭력감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모델 개발”, 2000. 144면.

가장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① 폭력피해여성 의료 서비스(25.2%)[184] ② 법률지원 서비스(16.2%)와 신변안전보장 서비스(16.2%) ③ 주거제공 서비스(12.6%) ④ 직업훈련 서비스(10.5%) ⑤ 가해자 상담, 교육서비스(9.9%) 순이다.

이 중에서 신변안전보장 서비스는 경찰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법률구조공단이나 쉼터, 시·군·구청, 의료기관, 여성의 전화 1366등과 같은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업무에 속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범죄발생 당시 피해자가 최초에 경찰의 고유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발생 당시 피해자가 최초에 경찰의 고유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평상시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놓고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84) 이것은 ①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지정병원 ② 정신질환치료 관리 서비스 ③ 약물치료 서비스 ④ 폭력피해여성 전문의료 재활 서비스 ⑤ 진단 및 치료에 의료보호 적용 등과 같이 제반 의료서비스들을 모두 합친 수치이다.

가정폭력피해자를 면접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가동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 특히 경찰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가정폭력의 사회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피해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미흡, 경찰들의 소극적·방관적·비협조적 자세, 경찰들의 권위주의적·가부장적 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185]

법률구조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무료번호의 혜택이 너무 적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 법조계 실무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법조계 실무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법조계 실무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학교 측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비밀전학 절차에 있어서의 학교 측의 비협조적 태도, 학교장 및 교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비밀전학이 이루어진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철저한 비밀보장 미흡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가정폭력업무 처리 시 타 기관과의 연계성 구축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다른 기관 실무자와 정보교환을 하는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이 54.8%로서 병원·변호사·사회복지관(51.6%), 여성전화1366(45.2%), 보건소(35.5%), 검찰(19.4%), 보호관찰소(22.6%), 사회복지전문요원(16.1%), 법원(3.2%) 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담소나 쉼터(80.6%), 그리고 구청 여성복지 담당자(64.5%)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186]

그러나 다른 기관과 문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느냐는 조사에서는 검찰(35.5%)보다 경찰(9.7%)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화로 타 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찰이 51.6%로서 쉼터(80.6%)나 병원(61.3%)보다는 낮았지만 법원(25.8%)이나 검찰(22.6%)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실무자와의 의견교환 여부에는 경찰이 17.2%로 나타났으나 실무자간 정기적인 모임여부, 타 기관과의 공동운영프로그램 보유 여부 등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에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다.[187]

위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왜 기관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하여도 분석을 시도한 부분이 있다. 경찰의 경우 그러한 협력곤란의 사유로서, 공

185) 경기개발연구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2-13. 143면.
186) 보건복지부, 전게서, pp. 109-110면.
187) 보건복지부, 전게서, 같은 면.

식적인 협력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38.8%), 기존 업무처리가 너무 벅차서(19.0%), 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19.0%), 경찰기관의 입장을 타 기관이 잘 이해를 못해서(9.5%) 등이 제시되고 있다.[188] 이를 보더라도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Ⅳ. 被害者對面技法의 未洽

현재 경찰청은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를 두고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수사국장 아래에 인권보호센터(범죄피해자대책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인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방청별로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범죄피해자를 피해자대책관이 전담하여 심리치료전문가, 검찰 등 정부기관, 상담지원 단체, 의료기관, 법률사무소, 사회복지사회 등과 연계하여 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범죄피해자대책계)에서 피해자관련 치안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을 하고 피해자관련 법령·지침 정비 및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피해자대책관(지방청·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은 각 수사부서 피해자 지원업무를 종합·조정하고 피해자보호 관련 교양실시 및 이행상태 점검·지도와 피해자안내서 제작·비치·배부상태를 점검하고 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민원실·지구대·112센터 등에서 피해자대책관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지시를 받게 되는데 조사자(면담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① 피해자 내방 시, 먼저 조사관의 소속·계급·성명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내방한 것에 대해 격려 ② 음료수와 편안한 의자 준비 및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 ③ 피해자가 우는 경우를 대비해 휴지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진술사항 기재를 위해 필기도구 비치 ④ 피해자에게 공감적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태도 ⑤ 피해자에게 실제적 조언, 법적 충고, 피해자의 권리, 도움의 가능성, 범인으로 부터의 안전과 정부로부터의 보상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⑥ 상담 중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⑦ 상담의 결과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의사소통기법에 대해서는 ① 적절한 언어선택 ② 먼저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 중요

188) 보건복지부, 전게서, pp. 144-145면.

③피해원인 추궁은 비난으로 인식한다 ④ 훈계식 표현은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⑤ 안일한 격려는 효과 없다.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항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매뉴얼은 “성폭행 사건을 재연해봐야 한다”며 성폭행 피해자를 성추행한 수사경찰과의 자질문제[189]와 상충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인 수사경찰의 교육과 교양을 반복해 업무실적위주의 수사방식에 젖어 있는 경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189) “성폭행 사건을 재연해봐야 한다”며 성폭행 피해자를 성추행한 ‘인면수심’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경찰관 임모(3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2006년 4월 A씨가 고소한 성폭행 사건을 배당 받은 뒤 범행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며 A씨 자택을 찾아갔다. 임씨는 A씨의 옷을 벗긴 뒤 자신도 옷을 벗고 성폭행 상황을 재연하는 척 하면서 2 ~3시간 동안 A씨를 추행했다. 임씨는 수치심 탓에 상황 재연을 꺼리던 A씨에게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불리하다”고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범행현장 검증 내용을 수사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가 A씨의 고소로 구속됐다; 한국일보 2007.3.7.

第4章 警察의 被害者保護에 대한 改善方案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경찰실무와 학계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수많은 학문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마련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0]

첫째, 경찰서 민원실에 경험이 풍부한 퇴직 수사관들로 민원상담관을 구성하여 고소·고발하려는 범죄 피해자들과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피해자보호는 물론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원실이나 청문관, 경찰감찰을 통해 담당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수사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도 이미 일선 경찰서에는 오래 전에 구축하였다. 그밖에도 여성·청소년범죄와 가정범죄의 전담반 및 여성수사관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나 의료기관을 비롯한 각종 사회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둘째, 피해자서포터 제도를 들 수 있다. 피해자서포터는 살인, 강도, 강간 및 경찰서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범죄현장에서부터 피해자의 구호나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경찰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단일청구 역할을 하는 경찰관을 뜻한다.[191]

셋째, 형사기동대 차량을 아담하게 개조,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을 운영하여 신분이 노출되기를 두려워하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나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는 14개 지방청별로 1개 경찰서에만 해당 차량이 보급되어 있다.

넷째, 전자식 영상장비를 갖춘 비대면 대질 및 범인식별이 가능한 화상대질조사실을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장물범죄나 재산범죄의 피해품 회수 실적을 형사활동의 평가에 적극 반영한다. 더불어 아무리 피해액이 적은 절도사건이라도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7년 5월 1일부터는 절도 특별수사팀(TSI ; Thief Special Investigation)을 전국 일

190) 피해자서포터, 경찰수사연수원, 2006. pp. 144-146면 ; 경찰수사혁신 비전과 로드맵, 경찰청, 2006. 22면.

191) 범죄서포터제도는 2004년 9.1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2004년 8.17일 시행된 경찰청훈령인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9조는 서포터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피해자대책관'을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 두도록 되어 있다.

선 경찰서와 광역수사대 등 139곳에서 8백여명 규모로 운영하면서 고액 절도나 외국인 절도 그리고 신종 절도사건 등을 전담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형사절차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실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 그러나 국가의 범죄진압이 시민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목적으로 한다면, 국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권익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마련하였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와 같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은 피해자론 중에서 가장 능동적인 것이지만, 그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긍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와 형사사법 실무가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더욱이 피해자의 절차관여에 관해서는 경찰, 검찰 등과 같은 사법기관 내에서도 커다란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대책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의 입장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통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시급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의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축적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히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 제도들의 운영현실을 개선하는 행정적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다음으로 현재 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가해자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192]

---

192) 김성돈, “범죄신고율 향상과 신고자 보호방안 연구”, 치안논총 제20집, 2004. pp. 175-176 면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화해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한다. 이 제도는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전제로 하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주선하여 화해가 성립되면 더 이상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정식 사법절차 이외의 비영리 단체가 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설사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고 보겠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타협을 가장한 거래를 공식화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일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처럼 인권보장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두 이념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두 이념의 충돌로 인해 생기게 되는 '수사의 딜레마'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작은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종래 경찰의 수사활동은 범죄사실의 규명과 범인검거를 최종적 목적으로 삼고 진행되어 왔음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에 '피해자수사라는 것이 단지 범인검거를 위해 전개되는 여러 수사활동 중의 한 가지 방법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에 대하여 본 논문은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피해자수사야말로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사방법 중의 하나이며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서도 수사경찰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의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전통적인 수사활동이 범죄피해자의 처지나 피해회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해왔고, 피해자를 형사절차에서 소외시키고 냉대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형편과 처지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등의 수사행태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기억해내지 못할 때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에 필요한 진술증거 수집에 곤란을 겪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관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위한 감수성훈련과 피해자 기억인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활용 등과 같이 피해자수사의 개선을 위해 심리학이론의 응용이 필요함을 본 논문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피해자수사에 있어서 경찰이 겪는 어려움은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무관심한 경찰 개개인의 의식·태도·행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보호정책과 이에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피해자수사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Jean Reynold 등은 경찰관의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이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경찰의 수사환경 속에서 불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됨과 동시에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93]

독일의 학자 Hans-Georg도 수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보호를 잘 수행하기 위

해서는 전문적 의사소통기술의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인적 의사표현 능력의 구비를 넘어서서 그 밖의 환경적 조건의 구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전문적 의사소통기술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① 순수한 의사소통기술 영역(Kommunikation) ② 개인의 태도와 신념, 성격특성, 지식 등과 같은 개인적 역량과 관련된 영역(Person) ③ 개인을 둘러싼 조직문화, 조직구조, 조직의 이념, 조직의 개방성 영역(Organisation) ④ 사회문화, 정치적 환경, 가치관, 법률 등과 같은 복합적 사회환경 영역(Kontext) 등 다방면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194] Hans-Georg는 이러한 피해자보호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개인의 역량 외에도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이 피해자보호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피해자수사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서 경찰관 개인의 의식이나 태도, 그리고 수사행태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만의 개선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 그러한 개인적인 요소의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경찰의 피해자수사의 환경적요소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수사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환경의 개선점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第1節 被害者의 認識에 대한 改善

수사경찰이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얻으려면 제반 수사여건(환경)의 개선과 함께 수사경찰의 의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여 고객만족(CS : Customer Satisfaction)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수사활동을 전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수사경찰이 '수동적 법집행자'나 '범죄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오늘날 수사경찰에서는 '문제해결자'혹은 '사회봉사자'로서의 태도가 요청되고 있다.[195]

---

193) Jean Reynolds & Mary Mariani, *Police Talk*, Prentice Hall. 2002. pp.1-3.

194) Hans-Georg W. VoB, *Professioneller Umgang der Polizei mit Opfern and Zeugen*, Luchterhand, 2001. p.19.

이것은 시민과의 활발한 사회적 관계형성 즉 交感을 전제로 한다. 수사경찰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하면서도 사건해결을 위해 시민과 활발히 교감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196] 이를 위해서 수사경찰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위압적인 수사관행·불친절·피해자에 대한 무관심 등과 같은 수사행태를 개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태개선의 출발점이 바로 수사경찰관으로서 바른 의식과 태도를 갖는 일일 것이다.

Ⅰ. 先入見·固定觀念의 排除

수사경찰관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prejudice)이나 고정관념(stereotyping)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강력사건 발생현장에 출동하는 수사관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197]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고정관념은 수사경찰관으로 하여금 행태적 오류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Charles R. Swanson 등은 출동하는 경찰관의 전형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거나 범인 검거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상황을 바로 단절 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데, 신체적(physical), 행위적(actional), 상황적(situational) 고정관념 등이 그것이다.

행위적 고정관념(actional stereotyping)에 관한 예에 따르면 출동하는 경찰관은 범죄현장에서 급히 뛰어나오거나 도망하는 자는 모두 범인이라고 보기 쉬워서 이때는 피해

---

195) 경찰대학,「지역사회경찰론」, 2003. 2면.

196) 수사경찰이 익혀야 할 이러한 '상호교감'의 기술은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여주며, 각종 우발적인 위해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교감을 통한 수사권 행사는 communicating authority로 표현할 수 있다. Jean Reynolds는 효과적인 교감형성을 위해서는 ① 말의 위력에 대한 철저한 이해 ② 공포, 분노, 열등감을 자극하는 언행의 자제가 필요하고 ③ body language 와 같은 비언어적 행동으로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하며 ④ 긴장상황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에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먼저 구해야 하고 ⑤ 문제해결 수단으로 적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훈련과 ⑥ 수사진행절차에 관해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의가 필요하며 ⑦ 경찰관으로서 성급한 행동이나 과잉반응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Jean Reynolds & Mary Mariani, Police Talk, Prentice Hall, 2002. pp.4-7.

197) Charles R. Swanson, Neil C. Chamelin and Leonard Rerritp, *Criminal Investigation*, NcGraw Hill, 2000. p.377.

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어느 경찰서에서, 편의점 강도가 검거된 후 자백하였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범행을 하였을 때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서두르지 않고 평범한 태도로 유유히 걸어 나가자 전혀 자신을 검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에서는 강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소에서 뛰어나오고 있는 이들에게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도망하자 범인으로 알고 발포하였는데 이들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나 범죄피해자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러한 전형적 고정관념 때문에 범인을 검거 못하거나 잘못 대응함으로써 피해가 악화되거나 경찰관에 의한 2차 피해자화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지방경찰청 소속 파출소 직원이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각목을 들고 있었던 한 시민을 범인으로 잘못알고 총격을 가하여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198]

이러한 제2차 피해자화 현상은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조사경찰관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그릇된 '피해자 신화'(myths about victims)를 가지고서 피해자를 대하는 경우이다. 즉, "폭행당한 부녀자는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하기를 원한다. 남자라면 매력적인 여성에게 이끌리기 마련이어서 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이 순순히 응했다면 이것은 강간이 아니다. 여성은 은근히 얻어맞는 것을 즐긴다. 가정 내에서의 폭행은 사랑싸움이다. 오직 저소득층에서만 가정폭력이 존재한다."등과 같은 것들이다.[199] 이를 토대로 살피건대 제2차적 피해자화에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사건 교육훈련을 통하여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의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사례 등을 많이 발굴하여 그 해악성을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Ⅱ. 被害者 人權保障을 위한 敎育 强化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은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조). 인간(Mensch)은 시민적 사회에서 이러한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자신의 권리를 영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격(Person)으로 불리어질

198)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총격", 경향신문, 2002.11.4.

199) Jean Reynolds & Jajor Mary Mariani, *Police Talk*, Prentice Hall, 2002. pp.48-50.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법질서는 어느 인간이건 타인에 의해 조정되며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닌 각자의 자주성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하는 고유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를 행하는 경찰관들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200]

한편,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 항목으로 분류된 것이 총 2,833건이었는데 그 중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총 839건 92.6%로 구금시설에 의한 인권침해(1,113건, 39.3%)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 아래의 표는 항목별 경찰의 인권침해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 **항목별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유형	진정건수(건)	비율(%)
편파수사, 사건조작	203	28.2
신체의 자유침해	148	20.6
욕설 등 인격권 침해	56	7.8
도청 등 사생활 자유침해	52	7.2
범죄사실 미수사	44	6.2
진술강요 등 적법절차위반	34	4.8
수사권 남용	28	3.9
피해자가 가해자로 됨	27	3.8
범인으로 잘못 지목됨	20	2.8
개인정보 유축	10	1.4
알권리 침해	8	1.1
불 심 검 문	8	1.1
기 타	80	11.1
계	*718*	*100*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2. 99면.

인권침해의 내용 중 피해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① 편파수사·사건조작 ② 폭

200) 김철수, "인권과 기본권의 근본으로서의 인간존엄성(상)", 사법행정(98년 4월호), 32면.
20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2. 93면.

행・협박 등 신체의 자유침해 ③ 욕설・모욕 등 인격권 침해 ④ 사생활의 자유침해 ⑤ 범죄사실 미수사 등 직무유기 ⑥ 진술강요 ⑦ 위압적 수사 ⑧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처리됨 ⑨ 범인으로 잘못 지목됨 ⑩ 개인정보 유출 ⑪ 사건처리과정 불고지 등 알 권리 침해 등이었다.

또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정부기관으로는 경찰(51.0%)이었으며 검찰(16.7%), 구금시설(8.1%)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202]

이러한 것을 볼 때 민주주의 사회의 경찰행정이 지향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피해자의 인권존중이라는 것을 명확히 주지시키기 위해서도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수사경찰관의 의식 및 행태변화를 위한 철저한 교육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203]

第2節 搜查方法의 改善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현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출동 경찰관이 취하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사경찰관이 던지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후 충격 속에 있는 피해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204] 따라서 수사경찰관이 바람직한 수사행태를 갖추도록 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수사경찰이 형사사건 취급과 관련하여 피의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적절한 대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술한 바와 같다. 특히 피해자수

202) 국가인권위원회, 전게서, 98면.

203)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행정분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29일,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강사단 45명을 위촉하여 각 경찰기관에 나가서 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강사 워크숍자료, 2003. pp. 3-4면.

204)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어떤 자세로 긴급조치를 취했느냐하는 것, 곧 초동조치의 질(quality)의 정도가 사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속도에 영향을 주고, 외부 도움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를 결정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정도를 결정짓는다고 한다; Bree Cook,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 19. 1999. p.46.

사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감수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수사현장에 필요한 바람직한 수사경찰의 행태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한 다음 수사경찰관들에게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고 이러한 바람직한 행태를 습득하도록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피해자수사 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경찰이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수사행태에 대한 기본지침(guideline)의 개발 작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런 연후에 체계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를 철저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훈련과 적용에 있어서 심리학적 이론이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Ⅰ. 一般的인 搜査方法 改善

1. 犯罪被害者를 相對로 한 實態調査의 必要性

경찰의 피해자수사 행태를 개선하려면 바람직한 경찰의 수사행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우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경찰관의 피해자 관련 수사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영국에서는 1972년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시민의 피해조사를 시발로 피해자 대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 이후에는 '영국범죄조사기구(British Crime Survey : BSC)'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조사를 통하여 경찰수사 행태에 대한 불만사항을 파악, 이를 토대로 경찰서비스 제고방안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1980년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통령 특별위원회(the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가 구성되어 피해자나 피해자보호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 청취를 통해 피해자보호를 위한 상세한 행동지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역시 '범죄피해자실태조사연구회'가 결성되어 1992년부터 3년여에 걸쳐 행한 피해자 조사활동의 영향을 받아, 1995년 경찰청이 '범죄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조사가 추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205]

---

205) 최인섭외 2,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박순진외1, "한

그러나 한국의 범죄피해조사는 열악한 연구 환경, 낮은 사회적 관심, 적은 연구예산, 짧은 연구기간, 연구의 연속성과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결과를 한국 사회의 범죄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단계이며 탐색적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06]

또 현재의 범죄피해조사는 범죄과정 및 피해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범죄이론을 검증한다든가 범죄정책에 기여하는 측면으로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으나, 수사경찰관의 피해자관련 수사 행태의 분석과 방향제시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사경찰관의 행동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경찰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의 피해자조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의 공동협력 속에 대대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행동모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捜査警察에 대한 教育訓練强化

경찰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성, 재량성, 긴급성,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빈번히 맞이하기에 그런 상황에 준비 없이 맞닥치면 당황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개인의 습성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행위를 하기 쉽다.[207] Kimberly Ann Lonsway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훈련과정에서 강간 피해자의 역할연기를 해본 신임경찰관은 그렇지 않은 경찰관보다 강간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태도가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208] 이와 같이 피해자보호적 차원의 수사활동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훈련과 교육은 수사경찰의 행태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사경찰의 교육제도의 예를 들어보면, 주법(code

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45면

206) 최인섭외 2, 전게논문, pp.145-146면.

207) 강도사건이 발생한 범죄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각목을 들고 있는 시민을 강도로 오인하여 발포함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사건은 초동수사에 있어서 수사경찰관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말해준다.

208) Kimberly Ann Lonsway, "Police Training in Sexual Assault Response : Comparison of Approaches", Urbana, Illinois, 1996. p.57

of regulation)에 의해 설립된 '경찰관 직무표준 훈련위원회'(POST)가 수사경찰관으로서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소 교육기준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전문조사관 기본교육'(specializes investigators' basic course)와 '수사전문화 교육'(specialty training)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문조사관 기본교육에서는 약 6시간에 걸쳐서 피해자학이론과 위기대응교육을 받게 하고, 진행 중인 범죄에 개입하는 요령에 관하여 16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교육결과를 평가할 때 10시간에 걸쳐 현장상황 재연을 통한 시험을 거치게 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수사전문화 교육과정 중 핵심코스(core course)에서는 대역에 의한 역할연기 학습, 가상범죄 설정을 통한 현장수색 요령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건 현장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209)]

요컨대, 경찰의 피해자수사에 대한 행태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으려면 제반 수사환경의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사행태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이나 행동모형을 개발하여 수사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학습 및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3. 搜査節次上 犯罪被害者保護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는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재차 해악을 가하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은 직접적인 형사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를 신고한 신고자나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 기타 친족 및 동거인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의 확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통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그 다른 하나는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직접 구속하거나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석방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신체구속의 본질 내지 목적에 비추어 그 적극적인 활용에 제한이 있다.

---

209) 경찰대학, "미국·일본 경찰의 수사교육제도", 연구보고서, 2003. pp. 8-9면.

1) 被害者에 대한 身邊保護措置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차단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범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라며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접촉할 기회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범죄자나 그 동료들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범죄자가 이미 피해자를 잘 아는 혹은 알게 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까지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특정범죄[210]의 범죄신고자 등[211]을 보호하고 있다. 조직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은 일정한 범죄유형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모든 범죄피해자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1) 피해자와 대면차단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피해자의 대면차단은 신변안전조치로서의 의미와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대기장소의 분리가 요구된다. 수사관서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대기 장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장소설치에만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조사시간의 별도 배정 등과 같은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

둘째, 대질신문의 제한이 필요하다.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참고인과의 대질을 통하여 그 진술내용의 모순을 규명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거나 자백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대질은 적어도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범인인지절차가 선행된 이후의 보충적 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사·공판

---

210)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1호).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21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신고자등"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하며(제2조 제3호), "범죄신고등"이라 함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심리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질신문을 실시하여도 보복범죄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신고자 등이 대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요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참고인진술조서와 같은 수사기록은 검사에 의하여 증거서류로 제출되고 피고인(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항)이나 피고인의 변호인(형사소송법 제35조)은 증거서류로 제출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수사기록에는 피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본적·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범죄자가 손쉽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은 피고인의 무기평등과 증거조사단계에서 증거동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은 허용하되, 일정한 경우 수사기록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관리카드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이하 "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212]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213]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7조 제1항), 조서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는 것으로 허용하며(제7조 제4항),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도록(제7조 제3항)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이 신원관리카드를 검사가 관리하되(제7조 제7항),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

21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기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213)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5호).

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3)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수사기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그 기억 속에서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은 피해자의 신변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명예보호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제21조),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를 두어 성폭력피해부녀의 인격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제23조, 제25조).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공개금지의무를 일반에게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제8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제17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였다.

(4) 신변안전조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특정범죄의 경우에 한정하여(제3조) 범죄 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제13조 제1항), 재판장 또는 판사의 요청(제13조 제2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요청(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에는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다(제7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신변안전조치가 검사의 요청

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되도록 하여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5) 신변변경*(*대체신분*)*

우리나라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신변안전조치로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분 또는 성명의 변경조치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조직범죄의 증인에 대해서 성명 등의 인적사항에 대한 변경을 통하여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명, 주민등록의 변경을 통하여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명, 주민등록의 변경, 호적의 변경 등은 국토의 협소함,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미흡으로 말미암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 間接的인 被疑者 身體拘束을 통한 接近遮斷

피해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보복우려가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석방의 제한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1995년의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제95조 제6호)[214],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제102조 제1항 제4호), 구속된 피

214) 1995년의 형사소송법 제8차 개정에서는 피해자보호규정을 신설하여 피고인이 범죄피해자나 증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상 보석(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 및 공판 절차상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그리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로 각각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도록 하였다(제95조 제6항, 제102조 제1항 제4호 및 제214조의 2 제4항 제2호). 이는 조직범죄 특히 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어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증인을 위해하여 증언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예외사유(제214조의2 제3항 제2호)로 하고 있다. 이는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설된 내용들이다.

한편 보복의 우려를 피고인에 대한 구속사유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보석제도의 부당함에 따른 개선책으로 예방적 구금이 논의되었다. 즉, 보석제도에 대한 비판자들은 피고인이 공판대기 중에도 다른 불법행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보석에 의한 석방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지적한다. 적법절차의 반영과 관련된 범죄통계 논쟁으로서 예방적 구금이 제안되었고, 판사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보석 없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자유론자들은 예방적 구금은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법은 1970년 컬럼비아주 법원개혁 및 형사절차법과 1984년 광범위한 범죄통제법에서 인정되었다. 1984년 입법에서 연방법관은 피고인을 공판 전에 석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회에 대한 위험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이 도주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거나 범죄가 중대범죄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을 방해하고 목격자나 배심원을 위협하고 해할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구속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구속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유도라는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므로 배상명령제도의 적극활용 및 민사소송, 강제집행의 정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구속사유로서의 보복우려는 대부분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고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및 인신구속의 제한원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

Ⅱ. 初動搜査 過程의 具體的 改善

1. 犯罪申告 接受

범죄신고자는 신고 당시 당황하거나 놀란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허위신고나 그릇된 신고여부를 분별해야 한다. 진정한 신고를 허위신고로 오판하거나 중대한 사건 사고를 경미한 신고로 오판하여 늑장대처 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 바, 신고의 묵살(unfounding)과 신고의 중

대성 판단의 하자(defounding)로 인해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찰의 경우 일부 형사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압박 대문에 철저히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진실한 신고임에도 허위신고로 판단하거나 중요한 사건 신고임에도 경미한 사건으로 해석하여 적시에 요청되는 도움을 무시하는 수가 있다고 Karmen은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시카고 경찰의 경우 약 21%를 사실무근인 것으로 누락시켰고, 실제 발생한 절도사건의 40%가 신고 되었음에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범죄발생에 관한 경찰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215]

신고접수자는 범죄행위의 급박성 판단, 가족상황・피해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신고접수 중이라도 1차 출동지령을 내리도록 하여 피해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도록 할 수 있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사건현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서 현장상황과 가해자에 관한 부수적 정보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16]

2. 現場初動措置

1) 現場出動 過程

현장에 출동하는 요원은 사전에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유형별로 현장 대응훈련을 중심으로 충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상황에 따라서 경찰차량이 경광등과 경적을 울리면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복경찰관보다는 사복경찰관이 자가용으로 은밀하게 출동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 자신과 현장에 있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중한 접근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217]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출동방식은 범죄피해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시민들에게 제2차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

215) Karmen, A. *Crime C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Belmont We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5; 장규원,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1999. 254면.

216) 가해자의 흉기소지여부, 음주 및 약물복용여부, 공범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217) 현장분석을 하지 않고 주의 깊게 접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찰관과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예가 종종 있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때는 그 지역 지리에 밝은 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현장으로 가는 중에 불심검문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범죄신고자나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직 범죄발생이 이루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2) 危機介入 訓練의 實施

범죄현장에 도착하였지만 범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문이 잠겨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위기상황으로 보아 사전 위기관리 및 위기개입 훈련(crisis intervention training)을 통하여 치밀하게 상황을 전개시켜나가야 한다. 먼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수사경찰관은 범인과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을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범인을 자극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인질극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만일 안에 있는 범인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일부 수사관들은 방안 내부의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적합한 실력행사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 만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강제진입을 시도하되[218] 이때는 수사관의 안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사경찰의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는 방화사건 현장, 폭발사고 현장, 가정폭력 현장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유형별로 각각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시나리오를 미리 구성해 놓고 이를 토대로 수사경찰을 비롯한 전 외근경찰관들에게 '위기관리기법'(the techniques of crisis management)내지는 '위기개입훈련'(crisis intervention training)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장대응형 교육에는 역할연기와 같은 감정이입 훈련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19] 또 이러

---

218) 강제력을 행사하여 가택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내지 7조 등이 제시된다.

219) Kimberly Ann Lonsway, *Police Rraining in Sexual Assault Responese Comparison of Approaches*, Thesis submitted in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psychology in the Graduate College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6. p.62.

한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건현장과 동일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220]

3) 被害者에 대한 身邊安全措置 强化

이미 발생된 범죄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피해자나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기타 범죄신고에 관여했던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신변위협이 있음을 호소해 올 때 수사경찰은 제반 정보를 통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지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피해를 입었던 범죄의 종류와 경중, 가해자의 전과관계, 가해자의 위험성 정도, 행위가해자의 환경, 수사 및 공판의 진행상황 등을 토대로 신변위협에 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21] 신변보호요청을 과소평가하여 피해자가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과대평가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단 사태의 심각성이 파악되면 통신수사·수법수사·미행 및 잠복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협박을 하거나 신변위협을 하는 자의 소재를 탐지하여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피해자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Ⅲ. 證據蒐集過程의 改善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을 때 우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Interview)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증거수집 차원에서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과정이 전개되는데 이렇게 조서작성과 관련된 면담을 그 이전의 면담행위와 구별하여 '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에서 각 항목별로 그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1. 被害者 面談技法開發

경찰이 현장수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가 빈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220) 홍콩 경찰대학(Tactical Training Centre)에서는 모의 현장실습장을 대규모로 축조하여 두고서 현장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21) 하태훈,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피해자학연구, 1995. 115면; 안경옥, "독일 형사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제11호, 1999. 342면.

할 경우가 많다. 수사경찰관이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감정과 정서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 하며, 그 정서적 상황에 맞는 면담기술을 발휘해야만 한다.[222] 비협조적인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필요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적 역량인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피해자 면담을 통해 수사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사방법 중의 하나이다.[223] 특히 초동수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적정한 면담을 행하는 것은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면담이 중요하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정확한 것이 아니고, 범죄현장의 유일한 목격자가 목격상황을 잘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도 중요한 수사활동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인지심리학적 이론을 응용한 면담기법과 대화관리기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토대로 우리나라 수사교육기관에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과 대화관리기법에 관한 정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집중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바, 여기서 그 대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現場臨場時 被害者 面談方法의 改善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범인검거를 위해서는 피해자, 범행목격자, 사건관계자 기타의 참고인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건직후에 그들의 진술을 청취해두는 것 또한 요청된다. 범죄통제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종래의 수사활동은 피해자를 범인검거에 협조하는 객체로만 인식하였기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소위 '2차 피해자화' 사례를 많이 발생시켰다. 그러나 오늘날은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면담방법의 선택·면담시간과 장소의 결정 등에 있어

222) 피해자에 대한 탐문수사 중 직접 진술을 청취하는 활동을 이른 바 면담(interview)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탐문수사라 함은 대부분 면담을 통한 진술청취를 의미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탐문수사'와 '피해자 면담'을 같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 수사경찰관은 다양한 피해자를 접촉하면서 그 대상자의 성격·심리적 상황·지능·연령·성별 등을 고려하면서 그 구체적 상황에 타당한 면담기법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그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수사방법으로는 피해자의 협조를 얻기도 어려울뿐더러 정확하고 진실한 진술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경찰 피해자수사에 있어서 심리학을 접목시켜야할 이유가 있다.

223) Evans는 "오늘날 경찰활동의 핵심이 수사라면 수사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수사관의 면담능력이다"라고 하였다, Evans G. & Webb, *Aspects of Police Interviewing*, Leicester : Britich Psychological Society, 1993. p.37.

피해자의 연령·현재의 심리적·신체적 상황 등을 고려해주어야 하고,[224]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제반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담당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어떤 유형의 사건현장에 임장을 하건,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범인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을 획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한다.[225] 따라서 신임 경찰관이나 재직하고 있는 경찰관의 보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건현장 임장시에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법 구사 훈련'이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훈련'을 충분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는 사건 초기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수사관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배려와 친절한 행동이, 범인을 신속히 추적해 들어가는 것보다 심리적 충격의 상쇄라는 측면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더 중요한 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認知心理學的 面談技法의 活用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cognitive interview : CI)은 보다 정확한 기억을 인출해내기 위해 인지심리학적 이론을 응용한 면담방법이다. 범행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와 범행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수사에 차질이 올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인간의 인지과정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기억을 인출해내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 바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인 것이다.[226] 진술증거수집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우리 경찰도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은 미국의 두 심리학자인 Fisher와 Geiselman에 의해 1980년에 개발되었다. 그들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이 다른 면담방법보다 회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종래 경찰의 면담이 사회심리학에서 중시하고 있는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

224) 경찰은 현재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생업에 차질이 있는 자에 대하여 E-mail이나 Fax, 우편조사 등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25)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eds),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i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 19. 1999. pp.46-47.

226) Rebecca Milne & Ray Bull, *Investigative Interviewing*, Wiley, 2001. p.33.

하고서 새로운 면담기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종래 경찰의 목격자 면담에서 발견된 결점인 '질문 순서의 무질서함'을 수정하여 '향상된 인지면담기법(enhanced cognitive interview)'을 마련하였다고 한다.[227]

영국의 Ray Bull은 수사상 면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영국 정부의 '형사절차상 최상의 증거확보방법 : 어린이를 포함하여 취약한 목격자 혹은 위협받고 있는 목격자를 위한 지침'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효율적 활용이었다. 1999년에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Ray Bull 등은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을 적용한 결과 기억회상의 정확도가 85%에 이르렀음을 밝힘으로써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기법에는 ① 상황재구성 원칙 ② 완전성 원칙 ③ 역순상기의 원칙 ④ 입장전환의 원칙 ⑤ 집중검색의 원칙 ⑥ 확장검색의 원칙 ⑦ 개별질문의 원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황재구성의 원칙'(mental context reinstatment)은 조사 당시의 상황이 실제로 피해자나 목격자가 당한 상황에 유사할수록 기억이 더 잘 난다는 점에 착안된 것이다. 이는 기억이론 중 '정교화 이론', '인출실패론'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범죄현장, 날씨, 냄새와 같이 그날 그 시간의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라는 형태로 유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완전성의 원칙'(report everything)은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완전히 이야기 해보라고 요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세부정보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도 모두 이야기 해 보세요."라는 형태로 수사관은 유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순상기의 원칙'(change order)은 사건을 발생시간의 역순으로 상기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상기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지식의 영향을 받아 재구성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편집하기가 쉽다. 이러한 재구성은 부정확한 진술을 초래한다. 따라서 도식적 사고를 깨고 자유롭게 역순으로 기억을 되살리다 보면 의외로 범행 당시의 기억을 인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입장전환의 원칙'(change perspective)은 자신의 시각으로는 기억해 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억해낼 수도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것 또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기억을 간섭하는 현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후 기억을

227) 한국법심리학회 · 한림대학교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움 발제자료, "목격자 진술-법과 심리학의 만남", 2003. 104면.

재생시키려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집중검색의 원칙'은 수사관이 피해자가 기억을 위해 집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확장검색의 원칙'은 피해자가 특별한 장면을 검색하려고 시도하려면 할수록 많은 정보가 상기되므로 최대한 많은 검색이 시도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개별질문의 원칙'은 수사관이 형식적이고 경직된 질문을 하기보다는 각각의 피해자 입장과 처지에 맞는 질문방법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진술을 이끌어 낸다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 면담을 하는 것이 좋다.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구사를 위한 면담절차는 ① 상호인사와 신뢰관계의 형성(establish rapport) ② 면담의 목적 설명(explain the aims of the interview) ③ 자유로운 진술의 개시(initiate a free report) ④ 질문(questioning) ⑤ 다양하고도 확장된 인출기법의 구사(varied and extensive retrival) 등의 순서로 전개된다.[228]

여기서 '라포'(rapport)기법이란 수사요원과 상대자와의 신뢰관계를 쌓음으로써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고 상호교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 착안한 기법이다. 이러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을 많이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무조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라포'(rapport)가 형성되거나 정확한 진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친절한 자세로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의 속도나 방법을 면담대상자의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229]

이러한 절차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한 바,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창시자인 Fisher는 2일에 걸친 6단계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실무에 반드시 적용하는 경험을 해 볼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230]

---

228) Rebecca Milne & Ray Bull, *op. cit.*, p.40.

229) Clare Wilson & Martine Powell, *A Guide to Interviewing Children*, Routldge, 2001. pp.47-48.

230) 6단계 훈련절차로서, 제1단계 ① 신뢰관계의 형성(establish rapport) ② 경청(active listening)을, 2단계 ③ 통제권한의 이전(transfer control) ④ 개방형 질문(ask open-ended questions) ⑤ 응답 후 휴식(pause after responses) ⑥ 간섭의 배제(do not interrupt)를, 3단계에서 ⑦ 모든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report everything), 4단계 ⑧ 정신집중을 독려하며(encourage concentration) ⑨ 상상력을 활용하고(use of imagery) ⑩ 내용을 다시 진술해보게끔 하고(context reinstatement), 제5단계에서 ⑪ 감정이입을 하게하며(empathy) ⑫ 질문에 상응하는 목격자(목격진술)인지를 알아보고(witness compatible questioning), 6단계 ⑬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활용(sequence of the CI)을 추천한다; Rebecca Milne & Ray Bull, *op. cit.*, pp.175-176.

우리나라 경찰도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수사관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3) 對話管理技法의 活用

대화관리기법(Conversation Management : CM)이란 수사관과 피해자간에 이뤄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관리를 말한다.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과 '대화관리기법'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면담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있다.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에서는 피해자가 주도권을 쥔다면, '대화관리기법'에서는 수사경찰간이 주도권을 쥐고 면담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적정한 대화기술이나 의사소통기술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수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화관리 기법을 터득하는 것 또한 수사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인 것이다.

대화관리의 중요 요소로는 수사관과 피해자간 상호접촉, 얻고자 하는 정보의 취득, 대화의 수행, 신뢰성, 적절한 통제 등을 들 수 있다.[231] 수사경찰은 탐문수사나 조사를 위한 면담을 함에 있어서 기억회상을 위한'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활용과 함께 수사관이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와 같은'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을 터득하여 양자를 실무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Rebecca Milne와 Ray Bull은 면담 중 대화관리를 위한 기법으로 3단계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면담 전 준비행동(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기초조사를 하는 작업) ② 면담 중 행동으로 G(인사, Greeting), E(설명, Explanation), MA(상호간의 대화, Mutual activity), C(종결, Close) ③ 면담 후 행동(인터뷰를 요약하고 분석) 등의 순서로 대화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담 중 행동요령으로서의 대화기법을 예를 다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안정된 분위기의 앉을 장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든가 제공받아 앉는다. ② 주변 이야기로 긴장을 풀게 하고 친근감을 갖게 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면담취지를 설명한다. ④ 비밀의 약속・정보・친절 제공 등을 통해 다시 마음을 열게 한다. ⑤ 자연스럽게 상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⑥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면 필요한 내용을 언어에 조심하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⑦ 상대에게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231) Rebecca Milne & Ray Bull, *Investigative Interviewing*, Wiley, 2001. p.56.

전부 이야기하게 한다. ⑧ 이야기의 요점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복창해서 확인하고 의문이 생기면 확인한다. ⑨ 약속한 것과 비밀은 꼭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감사의 뜻을 반드시 표한다. ⑩ 상대의 애로사항을 들은 후 상담 등에 응하는 인간적인 친절함을 보이며 종결한다.』

한편, 독일의 Hans-Geong는 경찰이 피해자수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습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232] 이 모델은 경찰과 피해자간의 사회적 인지작용(Soziale Kognitinen) 및 상호작용(Interaktion)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즉, ① 상황의 인지단계(Wharnehmung der Situation) ② 행동단계(Handlung) ③ 비교과정을 통한 평가단계(Ergebnis) ④ 결과 산출단계(Folgen) 등이 그 것이다. 수사경찰은 ③의 행동단계에서 피해자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이입(Einfuru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충격 때문에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동 또한 위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사경찰관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술을 구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성공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경찰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추가적인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정서적 안정을 회복함과 동시에 심리적 상처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피해회복이 순조로워 질 수 있다고 한다.

2. 被害者陳述調書 作成方法改善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수사관의 질문 방법이나 수사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 성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것, 피해자 유책성 발언을 하는 것, 수사의 효율성만을 의식한 채 단 시간 내에 조사를 끝내고자 면접을 강행하는 수사관의 태도 등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제2 피해자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수사관은 수사상 불가피한 조사내용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만한 질문이나

232) Hans-Geong W. VoB, *Professioneller Umgang der Polizei mit Opfern und Zeugen*, Luchterhand, 2001. p.20.

언행은 절대 금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사업무에 오래 종사하다보면 자신의 수사행태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한 역할연기나 워크샵 등 수사경찰을 상대로 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진술을 꺼려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피해자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관할 파출소(지구대)와 협조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한 다음 그 내용을 설명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

피해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피해자의 명예감정 때문인지, 성적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인지를 잘 분석한 후에 꾸준한 설득, 여경수사관의 투입, 범인과의 관계 청산 유도 등을 통하여 조사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범인과 이해가 상반된 처지에 있는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사사안임에도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고소를 하는 수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항상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233]

第3節 搜査環境의 改善方案

Ⅰ. 調査環境改善

우리나라 경찰서도 성폭력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과 같이 특별히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서 조사실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2004년 범죄피해자대책

233) “피해자는 71세 노인으로 피고인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당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해 상반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며 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해줄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대판 1983.2.8. 82도297.

실을 출범시켜 진행중에 있다. 그러한 수사과 조사실의 물리적 구조는 일본 사이타마현 소가(草加) 경찰서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234]

일본 소가(草加) 경찰서의 조사실은 약 10평(30㎡) 정도의 원룸 주택형 구조라고 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의무실은 학교 양호실과 같은 분위기로 간단한 진료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조사실 벽에는 일반 주택처럼 그림이 걸려있고 채광과 조명은 물론 냉난방 및 환기시설도 완벽하게 설치하여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피해자로부터 충실한 수사상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도 심리적·신체적 충격 속에 있는 피해자를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조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조사실에는 CCTV를 설치하여 조사 전 과정을 녹취·녹화하여 피해자의 법정증언 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예산의 미집행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3. 11. 21. 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에 의하여 그 진술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안 제21조의 2), 영상물에 의한 녹화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신청권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개정안 제21조의 2 후단) 영상물에 의한 녹화장치 시설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판단계의 문제이긴 하지만 증인의 사생활이나 명예감정 기타 피고인과의 대면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 사이 또는 증인과 방청석사이에 차폐조치를 취하는 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성폭행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 '비디오 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본다(이 또한 2008년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2조의 4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법정에 이러한 장비의 설치 역시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

234)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 254면.

Ⅱ. 被害者保護 對策室 設置

일본의 경우 1996년 5월에 경찰청장관 관방급여후생과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되고, 뒤이어 각 도도부현 경찰에도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됨으로써 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장하게 되었으며, 각급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대책반을 각각 두고 피해자보호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범죄피해자 대책을 경찰이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무부 사법제도실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National Organization Victims of Crime : NOVC)이 설치되어 전국피해자지원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 of Assistance : NOVA)와 같은 피해자 지원 목적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많은 주 경찰이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경찰내부에서의 피해자 처우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4년 민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 : VS)를 창설하였는데 이 단체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상담이나 법적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조언을 행하고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내무성(Home Office) 형사국 산하에 사법제도 및 피해자반(Justice and Victims Unit)을 두고 피해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경찰이 피해자보호 대책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수사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피해자보호대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수사·정보 등의 보안을 유지하려는 우리 수사경찰의 전통적인 체질에 비추어 보아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무기획국에서 범죄피해자를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235] 피해자대책의 전담부서를 현재와 같이 경찰청 수사국 산하의 인권보호센타 피해자대책계에서 전담하는 것보다는 인사, 재정, 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경무기획국 산하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36]

즉 경찰이 모든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경찰청 경무기획국(지방경찰청 경무부, 경무과)산하에 피해자보호대책실을 두되, 총괄조정관에는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지방경찰청은 경무부장·경무과장)을 임명하여 수사·생활안전·교통 등

235) 황정익, “범죄피해자 중시(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pp. 7-9면.
236) 김용세·김재민,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제18권 1호, 2006. 442면.

으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 관련업무를 조정·지도·총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각 급 경찰서 단위에도 경무과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하는 피해자종합대책반을 두되 이 또한 단기능간 중복되는 사항만을 조정해주거나 각 기능에서 다루기에 부적합한 사항만을 다루도록 하고, 그 외에는 수사·형사·교통·생활안전 등 각 기능별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수사담당자들은 인력, 예산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Ⅲ. 有關團體와의 協力體制 構築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 현장에는 수사경찰관만이 항상 먼저 출동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피해자 가족이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는가 하면 소방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가 현장에서 조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구호조치를 할 때는 현장을 훼손하기가 쉽다. 따라서 최소한 의료관계자나 긴급구호관서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보존조치 요령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시에 상호간에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라인을 개설하는 등 평상시에 긴밀한 협력체재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 경찰서·소방관서·의료기관 등 각 기관별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 구호 시 현장보존 요령·응급복구 시 수사상 유의사항 등에 관해 충분한 사전교육 및 공동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이에 관한 특별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가정폭력의 위기에 개입하여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요인을 제거한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잘 들어서 가정보호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여 검사에게 의견제시를 함과 동시에(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9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 인도하거나,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형태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동법 제5조).[237]

---

237) 일본의 경우에는 2002년 공안위원회 고시 제5호를 통하여 '경찰본부장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에 대한 원조실시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도도부현 경찰본부장 등에게 하달함으로써 피해자원조의 실질을 도모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일본 내 경

다행히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도 2002년도에 성폭력・아동폭력범죄・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및 '아동학대긴급전화 1391'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한 바 있고, 각 시・도별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현황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시설 현황을 파악, 동 자료를 메뉴얼화 하여 전국경찰에 배포함으로써 피해발생시 효과적인 연계가 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238]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이 다른 기관 실무자와 상호정보를 교환한 실적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었고, 실무자간 정기적인 모임여부와 타 기관과의 공동운영프로그램 보유 여부 등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찰실무 현장에서는 타 기관과의 연계성이 매우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국 경찰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피해자업무처리지침'이나 '피해자보호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각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피해자보호시책을 논의할 수 있는'피해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간에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들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 지정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된 피해자지원단체를 심사를 통하여 공식인증을 해준 뒤,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피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고 있는 것은 경찰과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로 보여 진다.

앞으로 우리 경찰도 각 피해자지원단체의 건실성을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혹은 경찰청장이 공식기관으로 인증을 해주어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찰관들이 피해자원조에의 경찰역할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아울러 피해자원조의 의미, 피해자등의 심리, 피해자원조에 관한 시책의 내용과 그 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철저한 지도 교양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구조를 행하는 공적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경찰공론」, 2002.5, pp. 10-19면.

238)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는 7개소, 전담의료기관은 235개소이고, 각 시도별 여성긴급전화(1366)는 16개소인 바,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 대응하면서 적극 안내해 주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메뉴얼", 2006. pp. 108-120면.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 영역도 과거보다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 하에서는 범죄와의 투쟁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제도는 그러한 범죄와의 투쟁이라는 단순한 목표만을 지향하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목표달성도 형사사법기관이 지향해야 할 부분의 하나이나 오히려 오늘날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안전하고도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형사사법기관이 다른 사회구성원과 활발한 협력을 해나가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239]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 되어 감에 따라 범죄문제 및 범죄피해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 단독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범죄문제 해결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과 타 조직이나 기구와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240] 이제 형사사법기관은 범죄를 통제함에 있어서 더 이상 최고권력적 지위를 향유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다른 사회조직이나 단체들과 적극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안전 확보의 공동창출자'(co-producer)라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이라는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파급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피해자보호 문제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역사회단체가 적극적인 피해자보호활동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질의 향상은 경찰, 검찰, 법원 어느 한 기관의 단독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각 기관 간 그리고 기관과 시민간의 활발한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1. 地域社會警察活動과 犯罪被害者 保護

1) 地域社會警察活動의 槪念과 發展

지난 30년간에 걸쳐서 미국에서는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 시스템만의 작용으로는 범죄투쟁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형사사법

239) Peter Neyground & Alan Beckley, *Policing, Ethics and Human Rights*, William Publishing, 2001. p.26.

240) Peter Neyground & Alan Beckley, *ibid*, pp.23-24.

기관 종사자들과 형사사법문제 연구가들은 종국적인 범죄통제의 책임을 지역공동체와 그 공동체 내의 문제해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과정(social process)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다. 2000년에 시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 자치도시 경찰기관의 50% 이상이 다양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계획을 입안하고 발전시켜 왔는바, 이 활동이 일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짐작케 한다.[241]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경찰과 지역주민이 공동 파트너가 되어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더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가는 경찰행정의 새로운 모형으로서, 인격적 봉사와 민경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등이 강조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은 1960년도 영국에서 시작하여 지난 20년간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242]

2) 地域社會協力을 통한 犯罪被害者 保護

지역사회활동은 기본적으로 3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고객중심체제로의 전환, 지역주민과의 협력의식(partnership)의 형성, 문제해결을 위한 일치된 노력 등이 그것이다.[243] 이 중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경찰과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의식의 개발이 매우 중요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문제를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경찰이 질서유지 작용, 문제해결 작용, 시민

---

241) Sampson, R, & Scott, M. S. *Tacking Crime and other Public-Safety Problems,* Case Studies in Problem-Solving. Washington, DC, 1999.

242) 경남 창원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김상진)는 2005. 2. 2.(수) 오후 3시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로망스 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의 의미와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상담과 의료, 법률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한 방안마련을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지역 내 일반 시민들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알림으로써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http://www.spo.go.kr

243) Merry Morash & Ford, "Directing the Future of Community Policing", The Move to Community Policing, Sage, 2002. pp. 279-280.

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시민과 경찰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244] 이로 인하여 지역공동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든 관련기관들이 총체적으로 가동되어지는 형식의 경찰활동이 종래 형사사법기관 중심의 범인체포 지향적 경찰작용을 대체하기 시작하였고,[245] 경찰기관이 타 사회복지기관, 피해자보호단체, 인권운동가 기타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단체와 협력의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경찰이 '법집행작용의 선도자'라는 전통적 역할모델은 수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공통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력의식을 갖는 '공공안전의 공동창출자(co-producer of public safety)'의 역할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246]

즉,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하에 피해자 보호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으려면 경찰관 개개인이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단체나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있는 파트너(partner)라는 낮아짐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들과 긴밀한 협력의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이 만일 "선도자(leader)의식"을 갖게 되면 피해자보호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권단체나 상담전문가로부터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으로 인하여 원활한 협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247]

3) 被害者保護를 위한 共同體的 協力의 事例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범죄문제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지역공동체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동체의 협력대응'(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개념이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 미시간 주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와 관련된 피해자 보호활동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해보고자 한다.

(1) MCADSV의 활동

---

244) Goldsten, H. *Problem-oriented Policing*. New York; McGraw-Hill. 1990.

245) Buzawa, E., & Buzawa, C.G. *Domestic Violence :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Thousand Oaks, CA:Sage. 2003. p.158.

246) Morash & Ford, *ibid*. p.184.

247) Morash & Ford, *op. cit.*, p.184.

미시간 주에서는 가정폭력 문제를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 하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1978년 미시간 가정폭력 및 성폭력 대응협의체(Michigan Coalition Against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MCADSV)를 창설하였다. 여기서는 70여개 이상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피해자 재활,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이상의 협력단체 나 개인을 회원으로 두고서 가정폭력 문제나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이곳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 기관 종사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곤 하는데 이 회의에서는 경찰도 참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지원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성폭력의 현황과 피해자보호방안에 대한 훈련도 수행하고 있고, 가정폭력·성폭력의 현황과 피해자보호대책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센터(Michigan Resource Center on Domestic and Sexual Violence)'를 두고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248]

*(2) MCOLES*의 활동

미시간 주의 가정폭력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공동체적 협력대응의 또 다른 한 예로 미시간 법집행표준화위원회(Michigan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Standards, 이하 MCOLES)의 정책조율을 위한 최근 모임 중의 하나가 2004년 7월 28일 랜싱 오케모스(Lansing Okemos)에서 미시간 주 정부의 '가정폭력대응 5개년 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2005년도 가정폭력대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관련 회의였다. 이 회의는 배정된 175,000달러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였는데 MCOLES 소속의 경찰관 2명, 주 정부 산하 가정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DVPTB) 간부 1명, 미시간 가정폭력자료센터(Michigan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대표자 1명, 미시간 검사협회(Prosecutor's Association) 관계자 1명, 미시간 주 경찰청 범죄예방과(Michigan State Police Prevention Service Section) 소속 경찰관 1명 도합 6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조율하며 토론을 진행한 바 있었다.

*(3) C.A.R.E. Team*의 활동

미시간 랜싱지역에서 경찰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중요한 조직 중의 하나가 C.A.R.E(Capital Area Response Effort)라는 기구이다. 이 C.A.R.E팀은 가정폭력문제를 다루기 위해 결성된

248) http://www.mcadsv.org 및 http://www.mcadsv.org/mrcdsv/index.html 참조.

기관들의 연합체인 Capital Area Family Violence Coordinating Council(CAFVCC)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Ingham County에 소재한 랜싱경찰서 건물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피해자를 접촉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 주거나 지역공동체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과 연결을 지어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끌어내어 피해자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 이래 이들이 지원해 온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약 1,6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C.A.R.E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상근직 혹은 임시직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시직 자원봉사자들은 가정폭력처벌법과 피해자의 권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약 40시간 정도 받은 후 근무를 할 수 있고 매달 C.A.R.E 활동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대체로 자원봉사자 개개인은 약 6주에 한번 꼴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데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249]

C.A.R.E 팀이 준수하고 있는 대 원칙은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라야 비로소 C.A.R.E 팀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C.A.R.E 팀은 가해자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은 받은 후 30분 이내에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그들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가해자에 의한 추가적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른바 '치명적 위험성에 대해 판단'(the assessment of the lethality)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C.A.R.E 팀은 위험성 판단표지를 항목화한 '위험수준평가서'(C.A.R.E assessment form)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주요 판단표지로는 가해자의 과거 폭행 전력・피해자의 치료경력・마약이나 알콜의 사용・무기사용・애완동물의 폭행・과거 체포된 경력이나 기소된 횟수・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고 있다.

C.A.R.E 팀은 이러한 위험성 판단과 병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계획(safety plan)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돕게 된다. 이들은 '피해자 신변안전계획서'(personalized safety plan) 양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들로서는 ① 위기를 위한 대비사항들(being ready for a crisis) ② 떠나기 위한 계획(planning to leave) ③ 떠날 때 가져가야 할 것들(items to take when leaving) ④ 떠난 후 해야 할 것들(after I leave) ⑤ 직장에서와 공공장소에서의 문제들(at work and in public) ⑥ 신변안전보호조치(PPO)와 관련된 안전계획(safety with a personal protection order) ⑦ 알콜 또는

249) http://www.lansingpolice.com 참조.

다른 약물 사용과 안전계획(safety and alcohol / order drug use) 등이다.

이러한 신변안전계획서의 서식은 미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신변안전계획서를 비롯해서 C.A.R.E 팀의 활동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경찰을 비롯한 타기관에 넘겨줄 수 없게 하고 있기에 경찰기관이 필요한 피해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C.A.R.E 팀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개인정보기관통보동의서'(authorization for release / exchange of information)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놓도록 해야만 한다.

이 C.A.R.E 팀의 운용을 위한 재정은 '미시간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Michigan Victim Service Commission)에서 랜싱시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범죄피해자지원 연구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 법무성(U.S. Department of Justice)의 사법임무지원국(the Bureau of Justice Assistance)에서 하달한 연구기금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

*(4) D.A.R.T Team*의 활동

미시간 잉햄(Ingham) 카운티에서는 2002년 2월,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D.A.R.T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CAFVCC(Capital Area Family Violence Coordinating Council)의 멤버들과 C.A.R.E 팀의 팀장이 만나 D.A.R.T 팀에 관한 기본 윤곽을 설정한 뒤 보다 구체적 논의를 위해 경찰서 수사부서, 검찰 관계자, 인권보호단체, 보호관찰소 관계자, 법원 관계자 등으로 부속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미 연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2001년 11월 D.A.R.T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D.A.R.T. 프로그램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분야의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공동대응 프로그램인 것이다.

뒤이어 2002년 3월 25일 미시간의 잉햄 카운티의 검사 Stuart Dunnings III와 랜싱 경찰서장 Mark Alley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기소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D.A.R.T.(Domestic Assault Response Team)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 연방 법무성으로부터 180,000 달러의 기금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연간 1,800건에 달하는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경찰관, PPO 관련 인권보호 종사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종사자, 검사 등에게 제공되도록 한 것이었다.[250]

D.A.R.T. 팀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목표중의 하나는 '추가적 피해를 창출하지 않는

250) State News, March 26, 2002.

기소(victimless prosecution)였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노출이 됨으로써 다시 심적 고통을 당하는 등 제2차적 피해를 입기 쉽고 가해자로부터 보복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에,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이나 협조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 D.A.R.T.의 출범에 관여하였던 미 연방 상원의원 Debbie Stabenow는 이러한 D.A.R.T.팀이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고, 이에 덧붙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는 것인 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면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51] 랜싱경찰서에서 가정폭력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Brian Bakos 형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재범을 하게 되는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D.A.R.T.팀의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D.A.R.T. 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 경찰, 인권보호단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PPO 사무소,[252] 보호관찰소, 법원 등 지역사회 내의 민관조직(民官組織)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각 구성단체나 조직별로 가해자 기소의 충실과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각기 기본 임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예컨대 잉햄 카운티의 D.A.R.T. 구성멤버 중 하나인 랜싱경찰서의 역할과 책임은 가정폭력 사건을 취급하는 형사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D.A.R.T.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

251) State News, March 26, 2002.

252) PPO(personal protection order)는 미시간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가족구성원간 폭력, 교제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폭력(dating violence), 스토킹(stalking)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상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PPO는 이 명령의 수명자에게 ① 피해자의 구저기에 진입하는 것을 금하고 ②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공격하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③ 피해자에게 법적 감독권이 있음에도 아이를 데려가는 행위를 금하고 ④ 피해자의 직장에서의 방해 행위를 금하며 ⑤ 피해자의 아이나 사적 물건을 옮겨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⑥ 전화로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위를 금하며 ⑦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하고 ⑧ 무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하는 등의 명령을 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PPO에 위반하면 93일 이하의 구금형과 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PPO의 종류에는 제한명령으로서의 PPO(restrain PPO), 스토킹 PPO(stalking PPO), 외국인신변보호조치로서의 PPO 등이 있다(Revised Judicature Act of 1961, 600.2950a., 6002950.h). 피해자가 PPO 신청을 위한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PPO 조정관을 우선 접촉하여야 하고, 그 후 피해자진술서와 PPO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 사건일시・장소・사건개요・상해부위・목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갖추게 되면 법원 사무실(순회재판소 사무실, circuit court clerk's office)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판사가 검토하여 서명하고 송달함으로써 발효가 된다; http://www.meridian.mi.us/POLICE/p_ppo.htm 참조.

육훈련을 철저히 하며, 그들에게 컴퓨터 기술지원을 하고 관련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처리반과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Service Provider Meeting*의 정기적 개최

미시간 주는 가정폭력 문제에 지역공동체가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매월 1회 가정폭력관련 관계자 모임(domestic violence service provider meeting)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랜싱지역의 경우 피해자 상담요원, 여성인권 보호단체 종사요원(advocates), 수사경찰관, 보호관찰 담당관, 검사(혹은 검사협의회 소속 직원), 판사(혹은 법원소속 직원) 등이 시내에 위치한 '심신건강교육센터(total health education center)에서 함께 모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곤 하는데 심리학자를 초빙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평가문제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실무진들이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한다.

*(6) Workshop*의 개최

미시간 주에서는 가정폭력문제를 지역공동체가 공동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각 기관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는데, 1999년 미시간 지역사회경찰활동연구소(Michigan Regional Community Policing Institute)에서 지원을 받아 개최한 워크샵이 그 한 예이다.

여기에는 피해자보호단체 대표, 경찰관, 법원관계자, 범죄에 관심을 갖는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각 기관 간 상호협력(partnership)의 증진이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를 감소 시켜 주는가 하는 것과 그러한 협력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즉, 가정폭력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 매우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인권옹호적 대응(the advocacy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가정폭력 역학관계와 가정폭력관련 법률 및 이에 대한 경찰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워크샵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방식의 수동적인 경찰활동형태에서 탈피하여 사회속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행하고(Scanning), 이 문제의 성격과 한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분석하고(Analysis),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력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고(Response), 이러한 대응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Assessment) 방식의 '문제해결형 경찰활동모

델’(problem solving model), 이른바 SARA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253]

2. 社會的 資本의 形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 함은 신뢰(trustworthiness)와 의무(obligations)를 기초로 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곧 경찰업무에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형사사법 활동에 있어서 중시되어야 할 영역으로 파악되고 있다.[254]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형사사법기관이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형성이 양호하면 형사사법기관은 그 만큼 해당 지역사회와 더 잘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자본(local social capital)과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자본(public social capital)이 그 것이다. 전자는 가족이나 친족구성원 사이와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발견되며 신뢰와 상호이익(reciprocity)과 비공식적 책임감이 핵심요소이다. 후자는 보다 큰 규모의 공동체, 즉 다양한 정부조직이나 교회, 학교, 자원봉사조직과 개인 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한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영향력과 접근성을 인식하고 그 구성원과 교류를 함에 있어서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다.[255]

이러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자본과 공공영역에서의 사회 자본은 시민과 경찰사이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 소규모 공동체 구성원 혹은 관련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하고자 한다면 위 2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평소에 형성시켜 놓아야 한다. 미국의 Putnam이라는 학자는 사회적 자본이 하락하게 되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초래된다고 말하였다.[256] 특히 그는 1980년도부터 1995년도 까지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진 주(州)들은 낮은 살인 율을 보였다는

---

253) Morash & Ford, *op. cit*, pp.185-195.

254) Wesley Skogan &Kathleen Frydl(ed.),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The National Academies, 2003. p.229.

255) Wesley Skogan &Kathleen Frydl(ed.), *ibid*, p.230.

256) Wesley Skogan &Kathleen Frydl(ed.), *op. cit*, p.230.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찰이 위와 같은 사회적 자본형성에 성공하게 되면 경찰은 시민, 민간단체, 타 정부조직 등과의 원활한 협력 속에 피해자보호라는 중대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Ⅳ. 搜査硏修過程에 心理學科目 開設

이와 같이 경찰의 수사 활동에 심리학을 응용할 수 있는 여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수사에서는 심리학적 기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탄탄한 심리학적 이론의 토대를 갖고 있지 못하고 체계화도 되어 있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찰도 수사교육과정에 수사실무와 심리학을 접목시킨 '경찰수사심리학'(police investigative psychology) 교육과정을 만들어 심리학이론 응용을 통해 개발된 각종 수사기법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비단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이나 최면수사와 같은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수사 영역뿐만 아니라, 행동관찰 면담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피의자 수사영역에서도 심리학이론의 응용기능성과 유익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 리버풀 대학이 '수사심리학센터'를 설치하여 경찰을 비롯한 수사관에게 '수사기법'(investigative technique), '수사에 있어서의 의사결정'(detective decision making), '면담조사'(investigative interviewing) 등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나[257] 중국 인민공안대학이 대학원 과정에 응용심리학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세부전공으로 '경찰심리학'과 '범죄심리측정기술학'을 두고서 수사심리학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각종 수사심리학 교재를 출간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 경찰수사의 발전방향을 가늠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258]

---

257) 김종률, 수사심리학, 2003. 17면.

258) 중국인민공안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하고 있는 수사심리학 교재들로서는, '실용 수사심리학', '수사심리', '수사신문실무', '수사신문학', '수사심리공격', '신문심리언어연구' 등이 있다; 경찰대학, 중국 경찰학 교재 목록집, 중국인민공안대학 연수결과보고서 부록, 2003. pp. 1-2면.

第5章 結　　論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주요 피해자가 국가라고 이해하였기에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기능만이 강조된 나머지 정작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개인의 입장은 간과되어 왔다.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범죄피해를 당한 개인의 처지와 입장에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법환경 하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순한 조력자이자 '수단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학'의 발전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해지면서 형사사법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형사사법'을 통해 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절차의 변방에 있는 객체가 아니라 형사절차 속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주체이자 중요 당사자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패러다임이 우리사회에 적합성이 있느냐 하는 논의는 뒤로 미루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존중과 보호 그리고 적절한 지원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점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형사사법제도가 지향하는 주요 흐름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요한 법집행기관 중의 하나인 경찰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보호적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영역은 매우 중요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해주고 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한편,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피해자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다 정확한 진술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인권보장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두 이념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두 이념의 충돌로 인해 생기게 되는 '수사의 딜레마'를 극복해나가는 하나의 작은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긍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와 형사사법 실무가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더욱이 피해자의 절차관여에 관해서는 경찰, 검찰 등과 같은 수사기관 내에서도 커다란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통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범죄

발생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시급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의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축적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히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 제도들의 운영현실을 개선하는 행정적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자의 권익보호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및 피해자와 방지를 위한 국가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종합적이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권리가 중요함에도 무시함으로서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경찰청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수사국장 산하에 피해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피해자대책실은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평가 그리고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각종 피해자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주요 업무 대상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은 그동안 꾸준히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 2는 경찰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수사를 할 때는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라’, ‘피해자 조사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적 규정에 입각하여 각종 경찰교육기관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정식과목으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말 그대로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하여 ‘수사심리학’이 필수과목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우수한 교수확보의 노력도 병행하여 심리학이 수사에 적극 반영되어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도 응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성폭력 아동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상담실설치, 가정폭력상담관 및 관련단체와의 Co-Worker 운영, 성폭력피해아동 전담조사관(여청계1, 형사2) 및 진술녹화실(현재 23개) 운영 등을 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중간처리상황 및 이송상황의 통지, 가정폭력 출동시 명함 크기의 “가정폭력피해자 안내카드”의 교부, 도난사건 3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편의제공 및 홍보의 차원에서는 고소인 당일조사제 및 방문조사제, Fax·E-mail 조사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SMS 자동통지시스템을 정비하여 사건 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범죄피해자의 휴

대폰에 문자메세지(SMS)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 '여성 아동대책 자문위원회' 등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성폭력(한국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개별범죄의 피해자 상담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민간 피해자 지원센터도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피해자 보호활동이 다소 소극적이고 단발적인 행사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보호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최근 통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제도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1년에 약 7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부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의 인권에 충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Public Defendent제도 도입시 경찰의 피해자 수사 단계에서 모든 피해자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국선 변호인을 배정하여 실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 피해자대책계나 일선 수사담당부서에서는 "찾아가는 피해자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유족 등 자녀들을 발굴하여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후견인 맺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수사진행사항 통지 등 정보제공 확대, 신변 안전보호, 피해품 환수 등 조속한 피해 회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체계 정비, 관련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피해자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확충, 충분한 예산의 확보,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 변화, 피해자 관련법령의 정비, 사회전반의 피해자지원체제 정비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공감력을 향상시키게 되면 경찰수사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 협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수사의 고질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또한 열어줄 것이라고 본다. 경찰이 이처럼 피해자보호 영역에서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양대 이념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 태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參 考 文 獻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김용세,「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김용우・최재천,「형사정책」. 박영사, 2006.

김재민,「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배종대,「형사정책」, 홍문사, 2006.

배종대・이상돈,「형사소송법」, 홍문사, 2003.

손동권・박상기・이순래,「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1999.

신동운,「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신양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신현주,「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안황권・김상돈,「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이성호・ 김상균・ 신석환,「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이재상,「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안황권・김상돈.「범죄피해학」, 백산서당, 2003.

정영석 ・ 이형국,「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정현미외,「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조병인,「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1998.

지광준,「현대사회와 피해자」, 더썬, 2006.

최영인・염건령.「범죄피해자의 책임성과 범죄피해자화이론」, 벽산출판사, 2005.

차용석・백형구 외,「(주석) 형사소송법」1-4,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최상진・강지원 편저,「법심리학의 문제」, 2003.

허 영,「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宮澤浩一・장규원(역),「피해자학 연구」, 수사연구사, 1997.

宮澤浩一・장규원(역),「피해자학 입문」, 길안사, 1999.

경기개발연구원,「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2.

경찰청,「인질범죄 대응요령」, 2001
_____,「경찰교육훈련계획」, 2003.
_____,「범죄수법 수사」, 2003.
_____,「경찰통계연보」, 2005.
_____,「과학수사」, 2006.
_____,「경찰백서」, 2006.
_____,「경찰수사혁신 vision과 로드맵」, 2006.
_____,「인권수사 매뉴얼」, 2007.
_____,「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2007.
_____,「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2006.
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 「경찰은 범죄피해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07.
경찰대학, 「피해자학」, 2002.
_____,「지역사회경찰론」, 2003.
_____,「경찰수사론」, 2005.
_____,「미국·일본 경찰의 수사교육제도」,연구보고서, 2003.
_____,「중국 경찰학 교재 목록집」,중국인민공안대학 연수결과보고서 부록, 2003.
경찰수사연수원,「피해자서포터」, 2006.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02.
_____,「인권강사 워크숍 교육자료」, 2003.
대법원,「사법연감」, 2005.
법무부,「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제도」, 2002.
_____,「개정 형사소송법」, 2007.
보건복지부,「가정폭력감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모델 개발」, 2000.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검찰」, 보도자료 2005.
치안정책연구소,「수사절차상 진술녹화제 도입방안」, 2005.
한국법심리학회·한림대학교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움 발제자료,「목격자 진술-법과 심리학의 만남」,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2001
_____,「범죄신고보상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1999.

2. 논 문

김성돈,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 1999.

_____, “형사절차상 피해자 - 가해자 조정제도”,「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2000.

_____,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피해자학연구」 제10권 2호, 2002.

_____, “범죄신고율 향상과 신고자 보호방안 연구”,「치안논총 」제20집, 2004.

김숙자, “가정폭력특별법안(시안)의 방향과 내용”, 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 자료, 「신한국당 정책위원회・여성위원회」, 1996.

김재민, “경찰의 초동수사활동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4호, 2003.

_____, “경찰피해자 수사에 있어서의 제도적 수사환경 개선방안에 과한 연구”,「경찰학연구」 제6호, 2003.

_____,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_____,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경찰의 행태변화를 위한 연구”,「피해자학연구」,제11권 제1호, 2005.

김영문,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 캐나다의 victim service 제도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1) 」제17집, 법무부연수원.

김용세, “일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피해자보호시책”,「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2000.

_____,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

_____,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와 회복적 사법”,「형사법연구」 제 20호 (겨울호), 2003.

김용세・김재민,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형사정책」 제18권 1호, 2006

김용세・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한국피해자학회」, 2002.

김석중,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성돈,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연구동향”.「피해자학연구」 제7호, 1999.

_____,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피해자학연구」 제10권 2호,2002.

_____, “범죄신고율 향상과 신고자 보호방안 연구”,「치안논총」 제20집, 2004.

김영철, “미국의 피해자 및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제9집, 1993.

김일수, “범죄피해자의 손해전보를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고시연구」, 1990.

_____, “형사상 원상회복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효용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21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90.

김철수, “인권과 기본권의 근본으로서의 인간존엄성(상)”,「사법행정」1998. 4월호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10권 제1호,「한국피해자학회」, 2002.
류병관,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한국피해자학회」, 1999.
민건식, “피해자학이란 무엇인가”,「피해자학연구」 창간호, 1992.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피해자학연구」 제6호, 1998.
_____,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형사법연구」 제10호, 1998.
박광섭, “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피해자의 권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0.
박미숙. “형사사법모델간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비교분석 - 미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박상기 · 박강우,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8.
박상식,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박우현,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박병식,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일본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중심으로-”,「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호, 2004.
백형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고시연구」, 1998. 8.
봉 욱,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의 내용과 해설”, 수사연구」 제177호, 수사연구사, 1998.7.
손동권, “국제성 범죄의 피해상황과 대책”,「피해자학연구」제5호, 1997.
_____,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수사절차 개선방안”,「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6.
송광섭,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제의 현황과 범죄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과제”,「피해자학연구」제5호, 1997.
송희진, “특정범죄신고등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13호, 2000.
송기오 · 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안경옥, “독일 형사 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 「형사정책」제11호, 1999.
안동준,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와 그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3 · 4합병호, 1990.
유병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안영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법무부」, 1999.

이기헌,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논문 제11집, 1996.
_____, “범죄신고자 보호방안”, 범죄신고자등 보호방안에 관한 공청회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기호,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피해자학연구」 제4호, 1995-1996.
이동주, “경찰수사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방안”,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동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타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호, 2007.
이만종,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4.
이서원, “한국 민간 피해자지원조직의 활동현황”,「경찰청논문발표집」, 2007.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제7호, 1999.
이재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형사정책연구」 제2권, 1991.
_____,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피해자학연구」 창간호, 1992.
오재환, “피해자학의 위치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2권, 1991.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형사정책연구」 제11권, 1992. 9.
이정수, “수사경찰관의 의식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제2권 제1호, 1991.
이준연,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찬진,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수사연구 제177호,「수사연구사」, 1998. 7.
이호중, “형법상의 원상회복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이 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34호)」, 1998. 여름호.
_____,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0권, 1999.
_____,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1999.
_____, “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호, 2005.
전대양, “강간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1995.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피해자학연구」 제8호, 2000.
조현빈,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호, 2005.
조병선, “피해자보상제도의 형사절차로의 도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피해자학연구제」 5호, 1997.
조병인,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형사정책연구」 제9권, 1998.
차용석,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시행방안”,「청소년범죄연구」, 1989.
_____,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일반론”,「한국법학회」, 2007.6

최병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4.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3호, 1998.
최선우,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사회과학연구」제11집, 2001.
최응렬, “서구제국이 피해자보상”,「피해자학연구」 제4호, 1995-1996.
하태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안암법학」 창간호, 1993.
_____,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피해자학연구」 제4호, 1995.
한인섭, “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수사연구 제177호,「수사연구사」, 1998.
_____,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피해자학연구」 제3호, 1994.
황규욱, “피해자학 연구를 위한 소고”,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황정익, “범죄피해자 중시(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한국공안행정학회」, 2007.6.

Ⅱ. 외국문헌

大谷實 「犯罪被害者對策の理念」.ジュリスト, 1995.
山田齊. 「犯罪被害者支援の理論と實務」. 民事法研究會, 2006.
高井康行・番敦子. 「犯罪被害者保護法制解說」. 三省堂, 2005.
塩谷毅. 「被害者の承諾と自己答責性」. 法律文化社, 2004.
日本辯護士聯合會.・犯罪被害者支援委員會.「犯罪被害者の權利の確立と總合的支援めて」. 明石書店, 2005.
藤井誠二.「少年犯罪被害者遺族」. 中公新書, 2006.
大和田攝子. 「犯罪被害者遺族の心理と支援に關する研究」, 2006.
平野裕之.「間接被害者の判例總合解說」. 新山社, 2005.
高井康行・番敦子.「犯罪被害者保護法制解說」. 三省當, 2005.
山田齊.「犯罪被害者支援の理論と實務」. 民事法研究會, 2006.
宮澤浩一,「被害者學の現況」, 被害者學研究 創刊號, 日本被害者學會, 1992. 3.
小宮山要外,「恐喝事件の加害・被害關係の分析」, 科警研報告防犯少年編 10卷 2號, 1996.
柳本正春,「刑事政策讀本」, 成文堂, 1983.
諸澤英道,「被害者學入門」, 成文堂, 1998.
_____,「犯罪被害者學から一般被害者學へ」, ジユりスト991號, 1991. 12.
도미타 노부호,「민간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일본에 있어서 경찰과의 연계를 중

심으로-」,경찰청발표 논문집, 2007.

高橋則夫.「ドイツの被害者政策」,「現代のエスプリ-犯罪被害者その權利と對策-」第336號, 諸澤英道 編, 至文堂, 1995.

大谷實. 「イギリスにおける被害者學の生成と發展」. 被害者學研究, 제6호, 日本被害者學會, 1996.

安田貴彦, 「アメリカの被害者政策」. 現代のェスプリ 犯罪被害者 その權利と對策 第336號. 諸澤英道 編, 至文堂, 1995.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Thomson Wadsworth, 2006.

Abbey, A. Lessons learned and unanswered questions about sexual assault perpetr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05.

Abbey, A. Zawacki, T., Buck, P, Clinton, M.m, & McAuslan, P. Sexual assault and alcohol consump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004.

Ai, A., & Park, C. Possibilities of the positive following violence and traum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05.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Victims' ailies and national security whistle blowers demand an end to government silencing of employees who expose security risks, Press release, 2005.

Archambault, J. How many rape reports are false? *The Crime Victims Report*, 2005.

Arriaga, X. & Capezza, N. Targets of partner violence: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coping trajector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05.

Baird, S. & Jenkins, S. Vicarious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in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agency staff. *Violence and Victims*, 2003.

Baum, K. & Klaus, P. *Violent victimization of college students*, 1995-2002. BJS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Justice, 2005.

Bellamy, P. The murder of JonBenet Ramsey. *Court TV's Crime Library*, 2005.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eds),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i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 19. 1999.

Bree Cook,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 19. 1999.

Buckler, K. & Travis, L. Assessing the news worthiness of homicide eve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2005.

Bureau of Justice Statistics(BJS).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Annual Report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74-2003.

_____. Themes for : Deaths in police custody reporting.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2005.

Bureau of Labor Statistics.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2004.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2005.

Buzawa, E. & Buzawa, C.G. *Domestic Violence :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Thousand Oaks, CA:Sage. 2003.

Campbell, R. & Wasco, S. Understanding rape and sexual assault: Twenty years of progres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05.

Catalano, S. Criminal victimization 2003. BJS NCV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Catania, S. Breaking the silence. *Mother Jones*, 2005.

CCC Information Systems. 2004 most stolen vehicle list points to thieves' needs for speed, 2005.

Chancer, L. High-profile crimes: *When legal cases become social caus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Charles R. Swanson, Neil C. Chamelin and Leonard Rerritp, *Criminal Investigation*, NcGraw Hill, 2000.

Chen, D. Striking details in final report on 9/11 fund. New York Times, 2004.

Christianson S. & Loftus, E.F. *Memory for traumatic even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2.

Chu, L, & Kraus, J. Predicting fatal assault among the elderly using the National

Incident Based Reporting System crime data. *Homicide studies*, 2004.

Clancy, S. *Abducted: How people come to believe they were kidnapped by alie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Clare Wilson & Martine Powell, *A Guide to Interviewing Children*, Routldge, 2001.

Code Amber. *Amber alert statistics*, 200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ER), *Terrorism: questions and answers: the anthrax letters*, 2004.

DeVoe, J. Peter, K, Kaufman, P, Miller, A, Noonan, M, Snyder, T, & Baum, K.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04.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4.

Dowdy, Z. U.S. aleader in child abuse deaths. Long Island Newsday, p. A16. 2003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Ecstasy and predatory drug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3.

Dubber, M. Victims in the war on crime : The use and abuse of victims' rights. New York : NYU Press. 2002.

Dunn, J. Courting disaster : Intimate stalking, culture, and criminal justice. New York : Aldine de Gruyter. 2002.

Durose, M. BJS Bulletin : Felony sentencing in state courts, 2002,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Justice.2004.

Ennis, P.H. *Crime Victim & the Police*, the Sociology if Crime & Delinquency, 1970.

Evans G. & Webb, *Aspects of Police Interviewing*, Leicester : Britich Psychological Society, 1993.

Finkelhor, D. Hammer, H, & Sedlak, A. NISMART 2 : Non-family abducted children : National estimates and characteristics. Washington, DC: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2.

Finn, R. Pushing past the trauma of forgiveness. New York Times, p.B2. 2005.

Fitzgerald, N. & Riley, K. Club drugs facilitate rape. In K. Balkin(Ed.), Club Drugs

: At Issues Series (pp.100-105). Westport, CT: Greenhaven Press. 2005.

Gaudiosi, J. Child maltreatment 2003.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4.

Gilbson, R. Most stolen cars? It's debatable. Retrieved September 7, 2005, from www.bankrate.com. 2004.

Givens, A. 70 years and a rebuke. Long Island Newsday, p. A8. 2005.

Goldsten, H. *Problem-oriented Policing*. New York; McGraw-Hill. 1990.

Greenberger, S. Eyes on Romney as morning-after pill KO'd. Boston Globe, p.9. 2005.

Hans-Geong W. VoB, *Professioneller Umgang der Polizei mit Opfern und Zeugen*, Luchterhand, 2001.

Harlow, C. Hate crimes reported by victims and police. BJS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Justice. 2005.

Harvey Wallace, *Victimolgy*, Califonia State University, 1998.

Heisler, C. Court orders protect victims o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The Crime Victims Report, 67-69. 2004.

Higgins, J. Don't let identity thieves steal your future! Retrieved September 23, 2005, from www.ed.gov/misued. 2005.

Hines, D. & Malley-Morrison, K. Family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Thousand CA:Sage. 2005.

Houppert, K. Base crimes: The military has a domestic violence problem. Mother Jones, 8-11. 2005.

Jean Reynolds & Jajor Mary Mariani, *Police Talk*, Prentice Hall, 2002.

John E. O'Brien. *Wemen Abuse : Facts Replacing Myths*, 33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John Jay College Research Team. The nature and scope of sexual abuse of minors by Catholic priests and deacons in the United States, 1950-2002. Retrieved January 12, 2005, from www.jjay.cuny.edu. 2004.

Johnson, K. Settlement is reached in Bryantcase. New York Times, p. A14. 2005.

Johnston, J. Profile : Jennifer Wilbanks : Runaway bride. Retrieved October 1, 2005, from about.com/Georgia/Atlanta. 2005.

Jones, R. Two plead guilty in child's death in New Jersey. New York Times, pp.

B1, B5. 2005

Jordan, J. Beyond belief Police, rape, and women's credibility. Criminal Justice, 4(1), 29-59. 2004.

Joyce, E. Teen dating violence : Facing the epidemic. Networks, 1-8. Washington, DC :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4.

Karmen, A.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4th, Edition, Wadsworth. 2001.

Karmen, A.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Belmont We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5

Katel, P. Identity theft: Can Congress give Americans better protection? Congressional Quartely Researcher, 15(22), 517-540. 2005.

Kelleher, J. An identity crisis. Newsday, p. A8. 2006.

Kennedy, D. Rethinking law enforcement strategie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Networks (magazine of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9-15. 2004.

Kimberly Ann Lonsway, "Police Training in Sexual Assault Response : Comparison of Approaches", Urbana, Illinois, 1996.

Kohn, A. Straight shooting on gun control. Reason, 37(1), 20-25. 2005.

Landesman, P. The girls next door. New York Times magazine, pp. 28-39. 2004.

Langhinrichsen-Rohling, J. Important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earc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 20, 108-118. 2005.

Laura J. Moriarty, *Policing and Victims*, Prentice Hall, 2002.

Lengel, A. & Dvorak, P. Deepening mystery, enduring pain: Faded from news, Levy case still difficult for investigators, family. Washington Post, 2004.

Maass. A. & Kohnken, G. *Eyewitness Identification : Simulating the "Weapon Effect"*, Law and Human Behavior, 13. 1989.

Marquis, J. Prosecutors and victims' rights. *The Crime Victims Report*, 2005.

Merry Morash & Ford, "Directing the Future of Community Policing", The Move to Community Policing, Sage, 2002.

Michael C. Baurmann und Wolfram Schadler, *Ein Trauma-und Krisenzentrum. Konzept*

fur eine Bund-Einrichtung yur Betreuung von tramatisierten Oprerm und Verletaten. In : Kriminalistik, 1998.

Moriarty, Laura J. *Policing and Victims*. Prentice Hall, 2002.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Don't let identity thieves steal your future!*, 2005.

Pacepa, I. Bolton's bravery. *National Review Online*, 2005.

Patton, C. Anti-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violence in 2004. A report of the National Coalition of Anti-Violence Programs, 2005.

Peggy M. Tobolowsky, *Crime Victim Rights and Remedies*, Carolina Academic Press, 2001.

Peter Neyground & Alan Beckley, *Policing, Ethics and Human Rights*, William Publishing, 2001.

Platell, A. The Date Rape 'Myth.' *London Daily Mail*, 2005.

Privacy rights clearinghouse. *A chronology of data breaches reported since the Choicepoint incident*, 2005.

Quinney, R. *The Problem of Crime*, New York, Dodd Meadl Company, 1973, pp.121-122.

Rebecca Milne & Ray Bull, *Investigative Interviewing*, Wiley, 2001.

Sampson, R, & Scott, M. S. *Tacking Crime and other Public-Safety Problems,* Case Studies in Problem-Solving. Washington, DC, 1999

Samuel Walker, *the Police in America*, 2002.

Steven G. Bran and Frank Horvath, "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Perform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19.

Sykes, G. M. *Criminolog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d. 1978.

Schneider, H. Hans Joachim, *Viktimologie Wissenschaft vom verbrechen sopfer*. 1975.

Wallace, Harvey. *Victimology,* 2006.

Wallace, Harvey. *Victimology - Leg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5th ed.. Pearson. 2007.

Wayne, R, LaFave. *Criminal Procedure,* Second Edition, West Publishing Co. 1992.

Wesley Skogan &Kathleen Frydl(ed.),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The National Academies, 2003.

Ⅲ. 참고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청렴위원회 : http://www.kicac.go.kr

국가청소년위원회 : http://youth.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 http:// spo.go.kr

법무부 홈페이지 : http:// www.moj.go.kr

법제처 홈페이지 : http:// www.moleg.go.kr

사이버경찰청 : http:// www.police.go.kr

한국언론재단 : http:// www.kinds.or.kr

미시간가정폭력및성폭력대응협의체 : http://www.mcadsv.org 및 http://www.mcadsv.org/mrcdsv/index.html

CAFVCC : http://www.lansingpolice.com/

미시간 잉햄(Ingham) : http://www.meridian.mi.us/POLICE/p_ppo.htm

http://www.meridian.mi.us/POLICE/p_ppo.htm .

http://www.lansingpolice.com.

http://www.mcadsv.org

http://www.mcadsv.org/mrcdsv/index.html

<조사용 설문지>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대책 관련 설문조사

(일련번호 :)

안녕하십니까?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부디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6.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임병락

다음 질문은 범죄피해자보호대책에 대한 홍보성과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 )안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솔직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에 피해자 전담기구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된 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 ( )

① 공문을 통해 보았다.
② 직원들로부터 들었다.
③ 기타 방법으로 알았다.
④ 몰랐다.

(2) 귀하는 범죄피해자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으며 읽어 본 적이 있다.

② 알고는 있으나 관심 있게 읽은 적은 없다.

③ 법률이 제정된 사실을 몰랐다.

(3) 귀하는 경찰청 훈령으로「범죄피해자보호규칙」이 제정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 )

① 알고 있으며 읽어본 적도 있다.

② 알고는 있으나 관심있게 읽은 적은 없다.

③ 규칙이 제정된 사실을 몰랐다.

(4) 귀하는 정보제공 · 신변보호 · 초기상담 · 협력체계구축 등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 )

① 문서나 책자를 통해 본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② 정확히는 아니지만 교양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③ 본인 스스로의 생각으로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④ 범죄피해자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5) 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일정한 강력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전담해서 상담 · 신변보호 ·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피해자서포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피해자서포터」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 ( )

① 공문을 통해 보았다.　　② 직원들로부터 들었다.

③ 기타 방법으로 알았다.　　④ 몰랐다.

(6) 귀하는 경찰이 금년에 범죄피해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후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거보다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7) 경찰은 지방청 · 경찰서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문서나 책자를 통해 본 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② 정확히는 아니지만 교양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③ 피해자지원 네트워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④ 별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어 모르고 있다.

다음 질문은 피해자대책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요령>

제시된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에 따라 해당 숫자 위에 '∨'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가까울수록 ①에 가깝게, '매우 그렇다'에 동의할수록 ⑦에 가깝게 표시하기 바랍니다.

예시> '전혀 그렇지 않다'에 표시할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경찰은 본질적으로 피해자 보호보다는 범인의 검거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범죄피해자는 이론상 경찰의 협력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에게 성가신 존재일 경우가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라기보다는 상담기관 등 민간의 업무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경찰은 현재의 인력 · 예산 · 법제가 미흡하더라도 현재로서 가능한 피해자 대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피해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본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민사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가해자 · 피해자간의 합의중재를 양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 질문은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대한 실태와 방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를 직관적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 · 심리적 · 형사절차적으로 충분히 보호 · 지원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피해자 서포터」 제도는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경찰과 상담기관 등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중간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성폭력범죄나 경제범죄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위 질문에서 피해자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① 충분한 예산의 확보 ② 전담 인력의 확충 ③ 경찰관 개개인의 인식변화
④ 피해자 관련법령의 정비 ⑤ 사회전반의 피해자지원체제 정비

(7) 앞으로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세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① 관련행정기관, 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 ②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체제 정비
③ 신변안전보호 ④ 피해품 환수 등 조속한 피해회복
⑤ 수사진행사항 통지 등 정보제공 확대

다음 문항은 설문내용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계급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⑦ 총경이상

(3) 경찰 근무경력 (년 근무)

(4) 근무지 · 근무분야 (,)

(5) 피해자 서포터여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법 학 과	학 번	20057345	과 정	박 사
성 명	한글 : 임 병 락 한문 : 林 丙 洛 영문 : Lim Byoung Rak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106동 1702호				
연락처	E-MAIL : lbr3758@hanmail.net				
논 문 제 목	한글 : 犯罪被害者에 대한 警察의 保護方案 硏究 영문 : A Study on the Police Assistance for the Criminal Victim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을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조건부 동의( ) 반대 ( )

2007년 7월

저작자 : 임 병 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